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787-01

Ⓒ 2017-9 | 2017. 5. |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마상진 연 구 위 원
김경인 연 구 원

KREI

농림축산식품부

연구 담당

마상진 | 연구위원 | 연구총괄

김경인 | 연구원 | 사례조사

C2017-9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5.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프리비

ISBN | 979-11-6149-017-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7595)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5월

연 구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마 상 진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경 인 (연 구 원)

요 약

이 연구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을 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① 청년 농업인력 현황과 문제점, ② 국내외 청년 농업인 지원 사례 연구, ③ 청년 농업인력 육성사업 현황과 문제점, ④ 청년 영농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개발, ⑤ 청년 직불제 도입방안 검토 등임.

□ 청년 농업인력 현황과 문제점

○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인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1970년대에 전체 농업 인력의 57.6%가 30대 이하였는데, 1990년에 22.1%로 떨어졌고, 2010년 6.4%, 2015년 5.7%에 그치고 있음.

- 연간 3만 농가 은퇴, 1만 농가가 신규 유입됨. 그 중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1천 가구 이하임.

○ 농업 뿐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청년 농가수가 적음. 현재(2015년 기준) 40세 이하 경영주는 14,366 농가로, 3개 농촌 마을당 1 농가가 있는 수준임. 청년 농가 비율이 낮은 것은 다른 외국의 상황과 비교해 봐도 심각함. 가장 고령화된 일본보다도 농업 부문 청년층이 엷게 형성되어 있음.

□ 청년 농업인력 육성 관련 정책

○ 후계농업인육성체계 외에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사업 규모도 매우 협소함.

○ 지역 단위 신규 유입인력 지원체계가 부재함. 대다수 지자체에서 신규 취농 지원 대상자 선정과 후속 지원 조직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음.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신규 취농자 지원의 지침이나 평가기준, 지원기준 등이 최

근에 많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농협 및 기타 후계농 지원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관련 기관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취농자 지원 사업을 다른 여러 업무의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문임.

○ 밀착지원 및 창업생태계가 부재함. 농촌 현장에서 신규 취농과정에서 경험하는 기술, 자금, 판매 그리고 주거 등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부재함.

□ 청년 영농창업 관련 외국 사례

○ 유럽연합은 소농 직불제(Small Farmers Direct Payment),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는 청년농업직불제(YFS), 청년 취농자 보조(DJA: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청년 취농 저리 융자(MTS-JA), 기타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도움.

○ 일본은 단계별 신규 농업 인재 육성 시스템(교토부 사례)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취농급부금, 신규취농계획인증, 농업법인취업지원(농의 고용사업), 농업자육성지원, 경영단체육성지원 사업, 농업경영승계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함.

○ 농업계 학교 교육에서부터 현장과 밀접히 연결된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의 결과를 국가 및 지역이 인정하는 자격제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자격이 인정된 청년 농업인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함. 창업 단계에 따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청년 영농창업 관련 국내 우수사례

○ 국내 우수사례(제주 친환경 농업학교, 괴산 흙사랑 영농조합, 하서 미래영농조합, 농협 축사은행 시범사업, 고흥 청년 창업농장, 강원도 귀농인 월급

제, 경기 팜쉐어, 홍동 젊은협업농장 등)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핵심 성공요인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밀착형 지원이었음. 청년 농업인이 영농정착에 힘들어 하는 부분(자금, 기반, 기술, 인적 네트워크)을 선배 영농인 또는 영농 조직을 통해서 일정기간 연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체제로 운영함.

○ 또한, 상당수의 사례는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기본 생활비 80만원 지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음. 준비·정착 기간에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소득 지원 대책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유입 인력 창출 가능성이 높음.

□ 청년 영농창업 지원 방안

○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영농 현장 교육 강화, 창업 초기(3~5년) 정착 시기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별 밀착지원 및 영농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 청년 농업경영실습 농장은 청년들이 영농 창업 초기에 영농기반, 농업기술 습득, 판로개척 등을 실습할 수 있는 농장임. 기존 농업법인, 농업학교, 선도농가(WPL)의 영농기반에서 작은 규모로 경영을 준비할 수 있는 실습농장, 영농기반을 공식적으로 임차하여 자신의 영농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임차농장 등 2가지 유형이 있음.

○ 청년 신규취농보조금 제도는 4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준비 또는 창업기간 동안 기초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임. 1안은 영농경력별 차등배분을 하는 것, 2안은 농가소득에 따라 배분 금액을 달리하는 것, 3안은 농업소득에 따라 배분 금액을 달리하는 것임.

○ 기타 지원방안으로 지역단위 청년 창농지원조직 운영, 농지은행사업 개편, 신규 취농인과 경영이양자의 연계 모델 개발, 경양이양직불 개편 등을 제시하였음.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동향 ····· 2
3. 연구내용 ····· 10
4. 연구방법 ····· 11

제2장 청년 농업인력 현황과 문제점

1. 청년 농업인력 현황 ····· 13
2. 신규 취농 현황 ····· 16
3. 문제점 ····· 19

제3장 청년 농업인력 육성 관련 정책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21
2. 농업경영체 전문 인력 채용지원 사업 ····· 22
3. 귀농·귀촌 지원 사업 ····· 25
4. 영농정착기술교육 ····· 31
5.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 33
6.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 36
7.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 ····· 38
8. 신규 취농 지원 농지매입지원 사업 ····· 39
9. 농업계 학교 육성 ····· 42
10. 문제점 ····· 49

제4장 청년 영농창업 관련 외국 사례

1. 유럽연합 ····· 51
2. 일본 ····· 67
3. 시사점 ····· 84

제5장 청년 영농창업 관련 국내 우수사례

1. 제주 친환경 농업학교 ····· 85
2. 괴산 흙사랑 영농조합 ····· 86
3. 하서 미래영농조합 ····· 86
4. 농협 축사은행 시범사업 ····· 88
5. 고흥 청년 창업농장 ····· 90
6. 강원도 귀농인 월급제 ····· 92
7. 경기 팜쉐어 ····· 93
8. 홍동 젊은협업농장 ····· 94
9. 시사점 ····· 97

제6장 청년 영농창업 지원 방안

1.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의 기본방향 ····· 99
2. 청년 농업경영실습 농장 추진 ····· 100
3. 청년 신규취농보조금 제도 도입 ····· 104
4. 청년창업지원체계 및 기타 지원방안 ····· 112

참고문헌 ····· 119

부록 1: EU 직불제와 청년농업인 직불제 ····· 121
부록 2: 일본 청년취농급부금 사업 요강(2016) ····· 148

표 차례

제2장

표 2-1. 연령대별 농가경영주 ····· 13
표 2-2. 품목별 농가경영주 연령 ····· 14
표 2-3. 귀농인의 전업·겸업 현황 ····· 17
표 2-4. 작물재배 면적규모별 귀농 가구 현황 ····· 17
표 2-5. 재배작물별 귀농 가구 현황 ····· 18
표 2-6. 연령대별 귀농 정착 애로사항 ····· 19

제3장

표 3-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 ····· 22
표 3-2. 연도별 지원계획 및 사업비 집행 현황 ····· 24
표 3-3. 2012년 귀농·귀촌 지원 대책 ····· 26
표 3-4.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출 금액 ····· 28
표 3-5. 영농정착기술교육 사업규모(2016) ····· 31
표 3-6.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규모(2016) ····· 33
표 3-7. 선도농가 실습 지원 사업 실적 ····· 35
표 3-8.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규모(2016) ····· 37
표 3-9. 2016년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 시행 개요 ····· 39
표 3-10. 한국농수산대학 영농종사 현황 ····· 46

제4장

표 4-1. 프랑스 청년취농자 보조 지급 기준 ····· 64
표 4-2. 탄고 농업 실천형 학사의 연수 내용 특징 ····· 71
표 4-3. 농업 종합 지원 센터의 사업 개요 ····· 75

표 4-4. 일본의 신규 취농에 대한 종합적 서포트(일본 농림수산성) ····· 83

제5장

표 5-1. 고흥 청년창업농장 사례 ····· 92

제6장

표 6-1. 청년 농업경영실습농장(안) ····· 102
표 6-2. 귀농 가구의 평균 소득 변화 ····· 104
표 6-3. 청년 신규취농보조금 제도 실시에 따른 40세 미만 농가수 및 전체 농가 대비 비중 전망 ····· 111

부표 1. EU 직불제 프로그램(사업)별 예산(2014-2017) ····· 121
부표 2. EU 직불제 예산 현황(2014-2016) ····· 124
부표 3. 현 공동농업정책(2014~2020)의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내용 ···· 125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농가경영주 연령대별 분포 국제 비교 ····· 15
그림 2-2. 청년농(35세 미만) 대비 고령농(65세 이상)의 비 ····· 15
그림 2-3. 연평균 은퇴, 유입 농가 수 ····· 16
그림 2-4. 영농경력별 영농진입 연령 ····· 16

제3장

그림 3-1. 농업경영체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의 변천 ····· 23
그림 3-2. 전문 인력 유형별 지원 현황 ····· 25
그림 3-3. 2009년 귀농·귀촌 지원 대책 ····· 26
그림 3-4. 영농정착기술교육 추진체계 ····· 31
그림 3-5.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단계 ····· 36

제4장

그림 4-1. 농업 마이스터 자격 취득 경로 ····· 52
그림 4-2. 농업 마이스터 교육 내용(시간) 및 시험 분야 ····· 53
그림 4-3. 덴마크 녹색자격 관련 교육 ····· 54
그림 4-4. 농업 자격 취득을 위한 덴마크 Bygholm Agricultural College의 교육과정 ····· 55
그림 4-5. 프랑스의 농업교육 체계 ····· 57
그림 4-6. 일본 교토부립 농업대학교의 설립 목적, 조직과 특징 ····· 69
그림 4-7. 오이타현 인큐베이션 팜 ····· 72
그림 4-8. 교토부 농업 종합 지원 센터의 조직 구성 ····· 73
그림 4-9. 교토부의 농업 비즈니스 지원 조직 및 사업의 특징 ····· 76

그림 4-10. 청년 등 취농 계획 인정의 과정 ····· 80
그림 4-11. 청년 등 취농 계획 인정 신청서(양식) ····· 81
그림 4-12. 일본의 농업경영체 단계별 지원 ····· 84

제5장

그림 5-1. 축사은행 자금지원 체계 ····· 89

제6장

그림 6-1. 청년 신규취농보조금 연간 지급인원 규모별
40세 미만 농가수 전망 ····· 111
그림 6-2. 창업생태계 ····· 112
그림 6-3. 일본 교토부 신규취농 지원 생태계 ····· 114

제 1 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65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53.5%에 달하는 한편, 40세 미만 경영주는 1.3%(14,367명)에 불과하며 신규진입자도 지속적으로 고령화 추세임(통계청 2015 농업총조사)

- 30대 이하 경영주 수/비중 : ('00) 92천명/6.6%→('05) 42천명/3.3%→('10)33천명/2.8%→('15)14천명/1.3%

○ 농업계 학교(농고 63개, 농대 30개)를 통한 영농인력 육성의 한계

- '15년도 졸업생 중 자영 인원/비중 : (농고)104명/1.4%, (농대)376명/6.1%

○ 영농창업 초기 고액의 투자 비용, 자연재해 위험,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실패 위험으로 영농창업 기피

- 청년 귀농인의 정착 애로사항(마상진 등 2014) : 여유자금 부족(51%), 농지 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등

○ 젊은 인력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장을 위험 부담 없이 직접 경영해

보고 실제 창업 시 시행착오를 줄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 이 연구는 효과적인 청년 영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 청년 농업인력 현황과 문제점 도출
- 국내외 청년 농업인 지원 사례 연구
- 청년 농업인력 육성사업 현황과 문제점 도출
- 청년 영농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개발

2. 선행연구 동향

○ 강대구 외(2002)는 '창업농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우수한 농업인력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창업농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면서 다음을 주장함.
- 창업농은 전체 인구의 증가나 농업생산물에 대한 연간소비량 변동, 농업인구의 변동 및 농업인의 생산성 변동을 고려할 때, 매년 10만-20만 명을 확보하여야 함. 농업인력, 국민식품소비량 등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의 학과 개편에서 생산학과의 관련 학과로의 개편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의 취업생 6,500여명은 농업분야로 최대한 유치하되, 고교이상의 각급 학교에서 10% 이상의 졸업생에 대한 취농으로의 유인이 필요함.
- 후계인력 육성은 '예비단계 → 취농단계 → 정착단계 → 발전단계 → 안정단계→ 후계수련단계 → 경영이양단계'의 7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적절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선정 이후 사업계획서 평가는 경영능력, 재배 작목에 대한 미래 소비 확대 가능성, 영농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능력 등이 재고되어 창업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창업농 육성단계인

① 예비후보자단계, ② 창업예비단계, ③ 창업단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사업계획서 내용 및 수준이 구분되어야 함.

- 창업농 각 육성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이와 함께 건전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관리 진단, 농업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 상태와 수익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발・교육 등이 요구됨.
- 컨설팅 방안 : 컨설팅 관련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컨설팅 종류별 주체 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하여 농업 경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함. 컨설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컨설팅 대상 경영체의 선정과 컨설팅 공급업체의 선정 등이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컨설팅 업체와 경영체가 상호 정보와 경영에 대한 각종 자료 공유를 통한 경영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김정호·마상진(2004)의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에서는 농업 후계인력의 동향과 전망, 신규 취농자의 영농 태도, 신규 취농의 실태 관련 요인, 일본의 신규 취농 실태와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고, 신규 취농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특히 신규 취농의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①신규 취농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확충해야 하며, ②학교 교육에서부터 농업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반영하거나 교과 과정이 개발되어야 하고, ③신규 취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시적으로 취농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취농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으며, ④농가의 경영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농후계자가 가족경영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주와 후계자 사이에 경영 분담, 수익 분배. 근로 조건, 장래 경영이양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가족경영협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마상진·정기환(2008)의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방안' 연구에서 신규 취

농 관련 제도, 신규 취농 현황과 진입장애 실태 등을 분석하고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음.

-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영농 인구 감소는 고령농의 자연 감소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다수의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신규로 영농 분야에 취업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러나 신규 취농자 대다수가 영농기반이 취약하고, 조직화가 되어있지 않고, 농업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음.
-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요인은 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 네트워크 등이 있었음. 이와 관련이 깊은 변인은 취농 준비기간, 농업조직 참여여부 등이었는데, 준비기간이 길고 농업인 조직에 많이 참여한 사람일수록 진입장애를 덜 겪고 있었음.
- 신규 취농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진입장애 해소를 위한 방안들의 기본 방향을 '영농관련 조직과의 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지원' 그리고 '단계적 취농 준비 지원'으로 제시하였음. 세부 방안으로 사회 네트워크 관련 진입장애 해소를 위한 과제로 ① 영농 도제 프로그램 지원, ② 농장(법인체) 취업 활성화, ③ 신규 취농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고, 자본 관련 진입장애 해소를 위해 ④ 신규 취농자의 경제적 자본 형성 지원을, 전문성 관련 진입장애 해소를 위해 ⑤ 신규 취농자를 위한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⑥ 능력 중심의 패키지형 정책자금 지원, ⑦ 농업계 학교의 영농관련 교육 지원, 시장 관련 진입장애 해소를 위해 ⑧ 생산자 조직 인센티브 부여 및 교육 등의 과제를 제시,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및 취농 촉진을 위한 인프라 형성 차원에서 ⑨ 신규 취농자 관련 통계 개선, ⑩ 대국민 농업교양교육 강화, ⑪ 신규 취농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 마상진·박대식·김강호(2010)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연구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활용하여 그동안의 사업을 진단하고 그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농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

영방안을 마련하였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에게 영농규모화, 농업 조수입 증가, 농업소득 증가, 영농역량 개발, 사회적 관계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농가부채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음. 또한 지역의 농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국가의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업인 연령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한편 제도적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 후계농 선정의 유인력이 점차 떨어지는 문제, 후계농 선정 시 융자 의무화의 불합리성, 지역별 지원금액 배정의 경직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및 선발 시기의 문제, 사업 대상자 선정・금융대출・관리의 주체의 삼원화로 인한 문제, 후계농들의 사업 계획 및 자금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더불어 후계농의 전문성 개발 기회 제한 문제 등의 있었음.
- 농업부문의 어떤 사업보다도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온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기조를 자금 지원 정책이 아닌 인력육성의 관점에 바라봐야 함.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자신의 농장 발전뿐 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의 발전도 선도하고, 나아가 농촌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업발전의 방향 하에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① 후계농 선정 행사의 지역 이벤트화, ② 영농 기반이 취약한 신규 후계농의 (경제적)자본 형성 지원, ③ 후계농업경영인 전담 지원 조직 육성, ④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상시 평가체제 운영, ⑤ 민간 주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기반 지원 등을 제시하였음.

○ 박동열 외(2012)는 ‘농업계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창업률 제고를 위한 직종 및 직무 연구’에서 농산업분야 기업체와 영농법인 및 자영농에서 농업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활용 및 관리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음. 또한 농업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실태를 파악하

였음. 농업계 특성화고의 취업률과 창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농업 분야에 관한 직무분류체계를 구안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농업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현재 취업・창업 가능한 직무와 직종'을 발굴하면서 다음을 제안함.

- 농업계고 취·창업률 제고 방안으로 농업계 특성화고, 농업전문대, 농업대학 간에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수준을 체계화해야 함. 또한 농업분야의 국제 교류를 위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야 하고, 농산업 관련 기업과 영농조합 등의 요구를 반영한 농산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연계형 특성화고 확대 모델, 농업분야 우수인력 양성 및 다양한 인력 양성 경로 개발을 위한 '2+2' 형태, 또는 '2.5+1.5' 형태의 전문대 통합형 특성화고(안) 운영, 우수영농법인과 연계한 현장실습(WPL)의 확대 및 내실화 지원체제 구축 등이 필요함.

○ 마상진 외(2014)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2014)' 연구에서 귀농·귀촌의 과정 특성, 경제활동 실태, 지역사회활동 실태 등을 분석하였음.

- 귀농・귀촌 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여유 자금 부족,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 농지 구입의 어려움, 생활 여건(의료・복지・문화・쇼핑) 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이 지적되었음. 귀농・귀촌자들은 성공적 정착의 요인으로 경제적인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정부・지자체와 공무원의 지원,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 김현수 외(2014)는 '중장기 농업인력 육성대책 수립 연구(2015~2024)'에서 농업인력 육성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 기본방향으로 '창의적인 농산업 육성을 위한 창의인재 확보 및 육성', '농업법인체 중심의 전문 인력 육성 확대', '지역중심의 농업인력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안함.

- 추진과제로 ‘국립농업고등학교’ 설치·운영 방안’을 제안함.

○ 마상진 외(2015)는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 방안’ 연구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관련한 전문인력 관련 이론과 정책 분석, 전문인력 현황분석과 수급 전망, 전문인력 육성 실태와 요구 분석을 토대로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음을 주장함.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추진되는 농업 6차 산업화를 계기로 저숙련 균형 상황의 농업인력 구조를 고숙련 균형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함. 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 확대로 고숙련 인력이 충분히 양성되고, 이들이 고품질・고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경쟁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개인은 많은 임금을, 조직은 많은 수익을 얻고, 수익 일부는 새로운 숙련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농업인력의 고질적인 저숙련 상황은 일부가 변화 노력을 하더라도 그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상호 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쉽게 변화하지 않음. 거시적・구조적으로 풀어가야 함. ‘저숙련・고숙련 균형이론’에서 강조하듯 단기적으로 행동하는 개별 경영체의 기회주의 행동을 규제하고, 산업계의 숙련 수요를 공급 시장과 체계적으로 매개해주는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수적임.
-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전문인력 육성 계획과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함.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수급 분석을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의 분야별 인력육성 규모를 설정하고,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구체적인 전문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해야함. 국가직업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신직업 자격체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경력경로를 개발・제공하여 육성 주체들의 관련 인적・물적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하도록 해야 함. 특히 신규 인력의 확보 측면에서 농업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6차 산업화 분야로 유입되도록 농업계 학교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함. 또한 지역별 특성이 반영이 되는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별도의 펀드가 조성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가 필요함. 지방정부는 관련 주체(지역 농협, 민간투자사, 농업계 학교, 지역 6차 산업 경영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과 더불어, 계획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지역 필요에 맞는 6차 산업화 전문인력 및 경영체 육성 활동을 주도해야 할 것임.

○ 정제영 외(2015)는 '농업 직업교육체계 개편방안 연구'에서 세계적인 농업을 이끄는 인재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농업직업교육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가능한 체계로의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음을 주장함.

- 탐색 및 성장단계의 인력에게는 영농중심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별 농대 개편 및 거점 농고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진입단계에서는 영농 창업을 목표로 하는 젊은 신규 예비농과 은퇴를 앞둔 고령화 농가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가칭: 농가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일정 기간 농가를 공동으로 경영함으로써 후계농의 자질을 검증하고 장기적인 거치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후계농이 해당 농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임. 신규 취농자의 농지, 시설, 운영을 위한 초기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개발계좌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김정호 외(2016)는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에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책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업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농업 창업 준비자 조사를 통해 이들의 창업초기 애로사항으로는 생활비부담(24%)과 자금조달(24%), 영농기술 습득(19%)이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과의 유대와 농촌생활 적응(11%), 재배품목 선택(10%), 도시생활과의 인간관계 단절(8%) 등이라 보고함. 농업 창업 준비자들은 창업자금 지원기간은 3년 이내,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월 100만원 정도를 가장 선호하였음.

- 선진국의 청년 신규취농 장려 지원 정책을 검토하였음. EU,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농촌에 정착한 지 5년 미만이고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45세 이하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 동안에 급여형태의 보조금(연간 150만 엔)을 지급하고 있음. 특히 일본 정부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면서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을 구상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청년취농급부금'이라는 명칭으로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독립영농을 실시하는 농가(경영개시형)에게 연간 150만 엔을 최장 5년간 지원하고, 부모로부터 경영을 승계하거나 부모 영농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영농준비형)에도 지원하고 있음.

○ 마상진 외(2016)는 '농산업 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청년 고용 관련 이론과 정책 분석, 농산업 분야 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전망 제시, 농산업분야 청년 인력 수요 분석, 농산업분야 청년 인력의 육성 및 공급 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농산업 분야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농산업 청년 고용 활성화의 기본 방향으로 '농산업 분야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구축・강화', '농산업 고용의 질 제고', '농산업체와 학교간의 산학협력 강화' 등을 제시함.
- 농산업 고용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농산업 고용 전담조직 구성, 농산업 고용 통계 및 일자리 정보 구축· 강화, 지역별 농산업 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농산업 세부 부문별 교육・고용 전문성 지원 등을 제시함. 농산업 고용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농산업 일자리 임금 보전, 농산업체 복지여건 확충 방안을 제시함. 학교-농산업체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체 주도 산학 협력교육 활성화, 농고 산학협력 지원인력 보강, 농대 산학협력교육 혁신, 일반청년대상 기본교육 및 도제교육 운영 등의 방안을 제안함.

○ 선행연구의 한계

-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많이 제시하고 있음. 청년 농업인들은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략적인 방향과 정책 아이디어 정도는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 통해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까지는 제시하고 있지 못함.

3. 연구내용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부문으로 구성됨.

○ 청년 농업인력 현황과 문제점

- 청년 농업인력 현황
- 신규 취농 현황
- 청년 농업인력 문제점

○ 청년 농업인 육성 관련 우수 사례

- 농업 선진국 (EU 청년농업직불제, 일본 청년취농급부금제 등)의 사례
- 국내 우수사례 사례
- 타 부처의 유사 사업 운영사례

○ 청년 농업인력 육성사업 현황과 문제점

- 청년 농업인력 육성사업 현황
- 주요 현안과 문제점

○ 청년 영농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 사업의 기본방향
- 사업대상(지원 자격 및 요건) 범위
- 지원내용 및 운영·관리방안 등
- 청년직불제 도입방안

4. 연구방법

○ 문헌 및 사례 연구
- 영농창업 지원 프로그램 선행연구, 통계자료, 국가정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의 이론적 토대 마련
- 국내외 우수사례 및 타 부처 유사사업 운영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연구 자문회의
-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및 사업 참여 예정자 등을 참여시켜 추진방향 자문 및 검토를 실시
- 개발된 청년 영농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 검증 실시

제 2 장

청년 농업인력 현황과 문제점

1. 청년 농업인력 현황

○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비중은 1970년대 6.4%였던 것이 1980년대 11.2%, 1990년대 20%대(23.7%)를 넘었고, 2000년에 40%대(44.1%), 급기야 2010년에는 55.9%, 2015년에는 62.2%를 기록함.

표 2-1. 연령대별 농가경영주

단위: 명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9세 이하	215,812	129,673	36,719	7,270	1,696	792
30~39세	657,922	367,123	221,177	84,246	31,447	13,574
40~49세	662,953	664,794	372,508	237,737	140,479	84,025
50~59세	569,564	555,907	583,964	348,067	287,139	246,824
60세 이상	377,067	437,576	552,665	706,148	716,557	743,303
전체	2,483,318	2,155,073	1,767,033	1,383,468	1,177,318	1,088,518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총조사」.

○ 농가 경영주 고령화

- 매년 0.5년씩 고령화: 53.3세(1990) → 65.1세(2015)

표 2-2. 품목별 농가경영주 연령

단위: 세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연평균 변화	
							2000 ~2015	1990 ~2015
논벼	53.90	57.50	59.29	61.99	63.61	66.44	0.48	0.50
과수	51.53	54.91	56.85	59.56	60.98	63.57	0.45	0.48
특용작물	52.34	55.37	56.52	58.26	59.10	62.85	0.42	0.42
채소	52.31	54.98	57.45	60.16	63.09	65.99	0.57	0.55
화훼	45.28	48.01	49.46	53.74	57.55	60.90	0.76	0.62
전작	54.83	58.73	61.02	63.13	63.34	65.60	0.31	0.43
축산	47.65	52.26	52.05	56.36	60.59	60.25	0.55	0.50
기타	51.90	55.86	56.50	60.03	58.71	60.11	0.24	0.33
합계	53.29	56.27	58.32	60.98	62.31	65.06	0.45	0.47

자료: 통계청(각 연도).「농업총조사」.

○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인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1970년대에는 전체 농업 인력의 57.6%가 30대 이하였는데, 1990년에는 22.1%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6.4%, 2015년에는 5.7%에 그치고 있음(통계청 2015).
- 영농경력 5년 미만 40세 미만 청년 농가: 7,903(2005년) → 9,219(2010년) → 4,604(2015년)
- 40세 미만 농업종사 가구원(3개월 이상 농업종사): 143,455(2005년) → 115,583(2010년) → 68,168(2015년)

○ 40세 미만 청년 농가가 없는 농촌마을(행정리) 증가

- 읍 지역: 농촌마을당 청년 농가수는 2005년 1.19명→ 2015년 0.4명
- 면 지역: 2005년 0.88명 →2015년 0.24명

※ 농가경영주 연령분포 국제 비교

- 35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0.4%로 일본 0.6%보다 낮음.

그림 2-1. 농가경영주 연령대별 분포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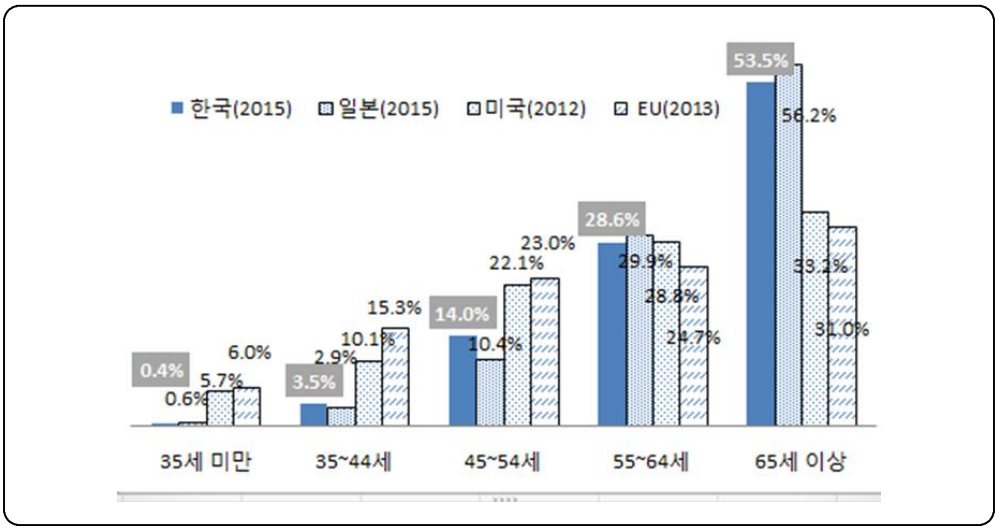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농업총조사」; 日本 農林水産省(2015). 農林水産統計; USDA(2012). Census of Agriculture; EUROSTAT(2013). Farm Structure Survey.

- 65세 이상 경영주 / 35세 미만 경영주: 한국 140.1 > 일본 89.3 > 미국 5.8 > EU 5.2 > 프랑스 1.4 > 독일 1.0

그림 2-2. 청년농(35세 미만) 대비 고령농(65세 이상)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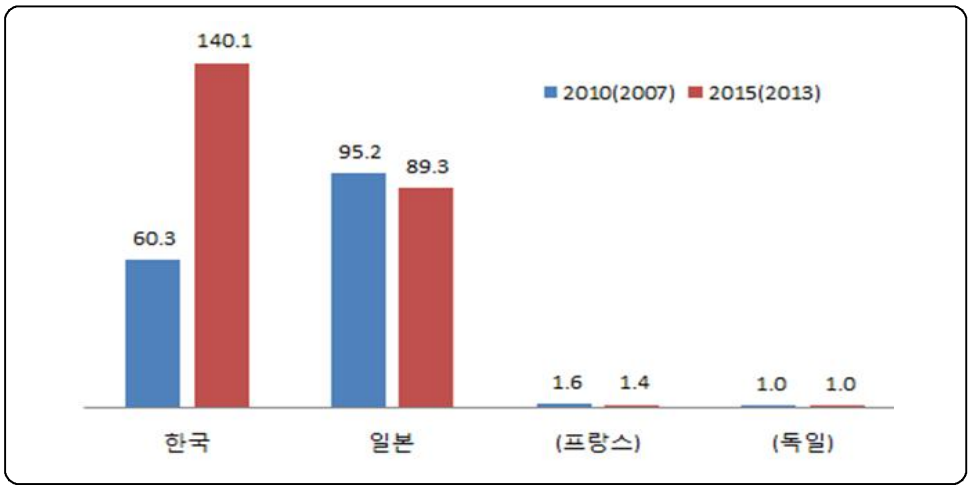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농업총조사」; 日本 農林水産省(2015). 農林水産統計; EUROSTAT(2013). Farm Structure Survey.

2. 신규 취농 현황

○ 신규 진입농가 분석

- 연간 은퇴 및 신규 유입 규모: 연간 3만 농가 은퇴, 1만 농가 유입(40세 미만은 1천 가구 이하)

그림 2-3. 연평균 은퇴, 유입 농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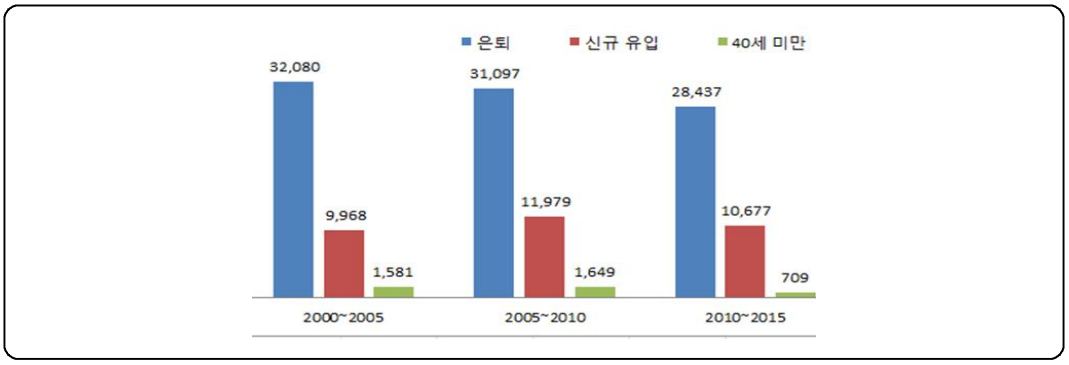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총조사」.

- 영농경력에 따른 영농진입 연령(농업총조사 2015): 40년 전 21.3세 → 최근 5년 이내는 49.2세

그림 2-4. 영농경력별 영농진입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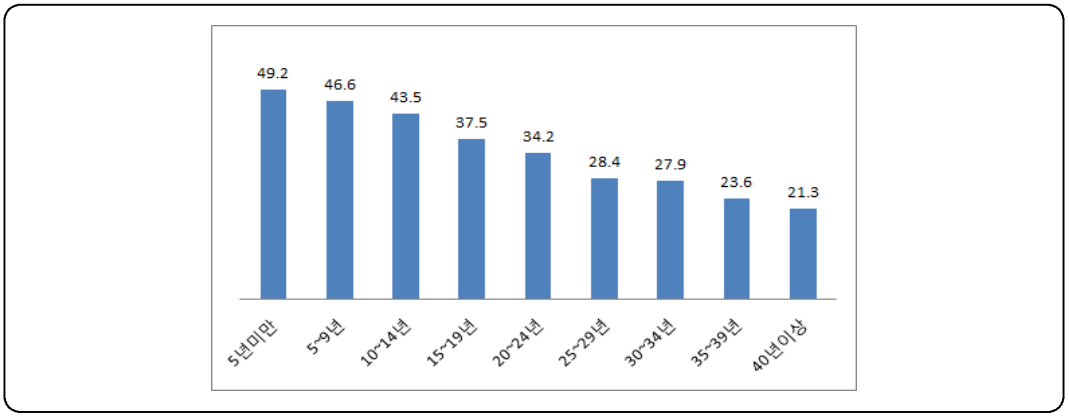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농업총조사」.

○ 신규 취농자들은 영농 초반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농외 활동 참여 제한적). 2015년 기준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이 75.1%이고, 겸업 귀농인이 24.9%를 차지함.

표 2-3. 귀농인의 전업·겸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계	전업	겸업	계	전업	겸업
귀농인	10,904	8,175	2,729	12,114	9,101	3,013
구성비	100.0	75.0	25.0	100.0	75.1	24.9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규모는 기존농가에 비해 소규모. 귀농 가구 중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재배 면적은 2015년에 0.45ha. 0.5ha 미만 가구가 75.3%로 대부분을 차지함. 2ha 이상은 1.9%

표 2-4. 작물재배 면적규모별 귀농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m^2

구분	귀농가구수	평균재배면적	0.5ha 미만	0.5~1ha	1~2ha	2ha 이상
2013	5,361(100)	4,590	3,871(72.2)	994(18.5)	397(7.4)	99(1.8)
2014	5,910(100)	4,518	4,411(74.6)	1,018(17.2)	367(6.2)	114(1.9)
2015	7,100(100)	4,495	5,349(75.3)	1,193(16.8)	420(5.9)	138(1.9)

자료: 통계청(각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 신규 취농자 다수는 채소, 과수, 특용 등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종사. 2015년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 가구의 42.5%가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과수 33.6%, 특용작물 29.7% 순으로 나타남(중복 재배 포함).

- 귀농 가구의 논벼농가 비율은 25.4%로 일반농가의 논벼농가 비율인 44.4%와 비교하면 귀농 가구의 벼 재배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표 2-5. 재배작물별 귀농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

작물재배 귀농가구수	논벼	맥류	서류	두류	채소	화훼	특용	과수	기타
7,100	1,802	607	1,028	1,446	3,016	152	2,112	2,387	356
(100.0)	(25.4)	(8.5)	(14.5)	(20.4)	(42.5)	(2.1)	(29.7)	(33.6)	(5.0)

자료: 통계청(2016).「2015년 귀농·귀촌인 통계」.

○ 신규 취농가 대다수가 정착 초반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3년차 이후 점차 안정화에 접어듦(한국갤럽 2016).

- 귀농 가구의 귀농 직전소득: 4,574만원 → 귀농 1년차 1,781만원
- 귀농(5년차 이하) 가구의 평균소득: 2,645만원(일반 농가의 71% 수준)

○ 청년 신규 취농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추적조사(마상진 외 2014)에 의하면,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중 '여유 자금 부족'(47%)과 '농지 구입의 어려움'(25%)이 가장 크다고 응답함.
- 청년(30대 이하) 귀농자 애로사항: 여유자금부족(55%), 농지(40%), 주거(24%), 기술(20%)
- 지속적인 농지가격 상승 추세 하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금력이 부족하여 농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6. 연령대별 귀농 정착 애로사항

단위: %

연령	일자리	여유 자금 부족	농지 구입	자녀 교육	지역 주민 갈등	주거 문제	생활 불편	영농 기술	건강 체력	외로움	가족내 갈등
30대 이하	10.0	55.0	40.0	6.3	7.5	23.8	22.5	20.0	1.3	6.3	3.8
40대	14.6	55.2	29.2	10.7	9.3	14.6	19.6	21.7	6.0	7.8	7.5
50대	9.6	44.1	23.9	4.7	20.2	8.9	26.8	28.9	8.0	11.0	7.0
60대 이상	9.9	35.1	17.3	0.0	20.3	7.9	30.2	34.7	14.4	17.3	7.9
전체	11.2	46.6	25.3	5.6	15.9	11.4	25.1	27.5	8.1	11.0	7.0

자료: 마상진 외(2014).「귀농·귀촌인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

3. 문제점

○ 심각한 고령화에 처한 농업·농촌은 청년 농업인의 확보가 지속가능성 담보에 핵심 과제

- 농가경영주 평균연령 65.1세, 40세 미만 농가 1% 수준
- 농가 고령화율(65세이상 고령농 / 35세미만 청년농) 세계 최고 수준: 한국 140 (일본 89, 미국 6, 유럽 5)
- 면지역은 40세 미만 청년농가 0.24명, 즉 4개 마을당 1명 밖에 없음.

○ 청년농은 모아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정착에 어려움을 겪음.

- 애로사항: 여유자금, 농지확보, 주거문제
- 주거지 확보, 영농기술 습득 지원 등과 함께 정착 초기 영농 수익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기간 안정된 생활자금이 절실

제3장

청년 농업인력 육성 관련 정책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사업연혁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가 인구의 노령화 현상 심화, 농촌 임금 상승과 농촌 일손의 부족 문제 대두, 농촌 청소년의 농업 기피와 이농 현상으로 인해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영농후계자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농어촌 지역의 후계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1977년부터 농수산부 내에서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978년에 기본방향을 수립함. 1980년 국가보위 최고위원회가 부정축재자 환수 재산을 농어촌에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1980년 8월 25일 농어민후계자 육성 강화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이어 9월 10일 농수산정책 조정 방향의 일환으로 농어민후계자 육성 방안이 발표되었음.
- 1981년 당시 농어민 후계자의 연령제한은 30세 이하였음. 일부 지원 대상 중 경험 부족으로 정착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1982년부터 연령제한을 35세 미만으로 개정함. 이후 대상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1992년 40세 미만, 2004년 45세 미만, 2013년부터 만 18세 이상 50세미만).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교육·컨설팅 지원, 창업자금 융자(최대 2억 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연간 1,800여 명 수준에서 선정)

○ 사업실적

표 3-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

연도		선정인원(명)	취소인원(명)	영농 정착률(%)
기간 평균	1981-1990	39,012	11,231	71.2
	1991-2000	69,196	10,704	84.5
	2001-2010	17,863	2,211	87.6
	2011-2015	8,660	187	97.8
전체		140,289	28,556	79.6

주: 영농 정착률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취소인원)/선정인원 x 100
자료: 마상진(2011). 「농림수산식품 인력육성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주요통계」.

2. 농업경영체 전문 인력 채용지원 사업

○ 사업연혁

- 2007년 한국농업전문학교(현재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전문 인력 활용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10년차 사업을 추진함.
- 2009년 명칭변경과 함께 CEO와 전문 인력으로 구분하고, 지원범위를 2명으로 확대했으며, 평가단계를 2단계로 축소함.
- 2011년 농업인재개발원(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평가단계가 3단계로 강화됨.

- 2013년에는 처음으로 농고·농대생 채용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최저임금수준에서 지원이 되었고 CEO 대신 채용할 수 있었음.
- 2014년에는 농고·농대생을 별도 채용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현재의 사업체계를 구축함.

그림 3-1. 농업경영체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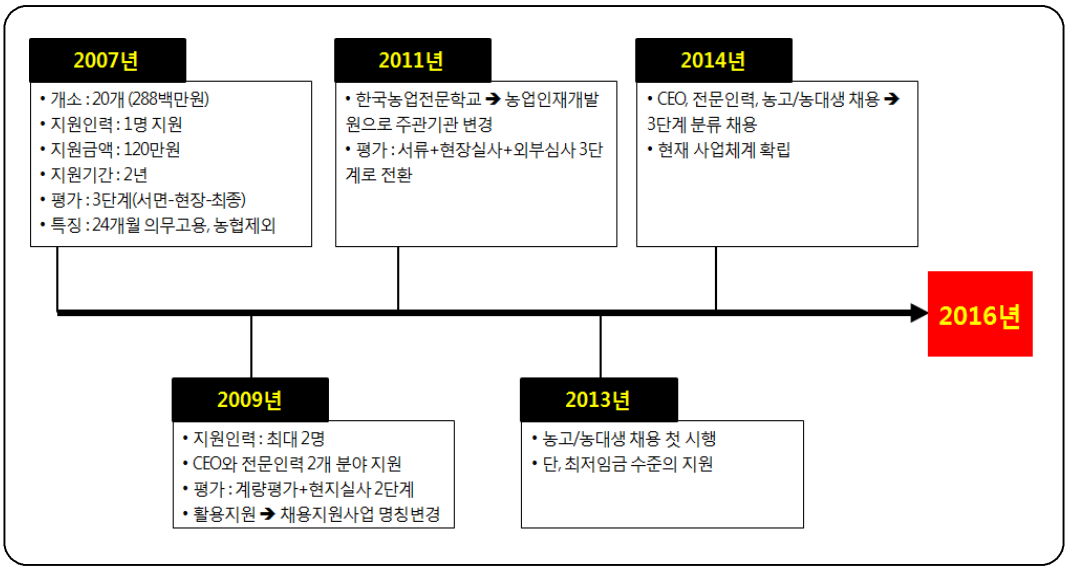

자료: 국민농업포럼(2016).「2016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사업내용

- 목적: 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APC, 농협공동사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향상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 지원 ② 농고・농대졸업생의 농업경영체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유도, 영농경력을 쌓은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채용지원금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원 분야 및 연차에 따라 1인 월 180만원 이내 차등지급 (경영체당 1명 신규채용 인력 지원, 다만 농업계 졸업생을 채용 시 1명 추가 채용 가능)
- 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영체 기준 최대 36개월 지원(추가채용을 통

해 2명을 채용한 경영체는 2명의 지원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 지원)

○ 사업실적

표 3-2. 연도별 지원계획 및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경영체수	예산(계획)	집행(실집행)	집행률	경영체당 지원액
2007년	18	259	257	99.1%	14.3
2008년	19	274	268	97.8%	14.1
2009년	50	1,000	376	37.6%	7.5
2010년	72	818	692	84.6%	9.6
2011년	69	834	582	69.8%	8.4
2012년	69	800	691	86.4%	10.0
2013년	73	800	686	85.8%	9.4
2014년	41	800	323	40.4%	7.9
2015년	56	800	609	76.1%	10.9
2016년	79	800	632	79.0%	8.0
합계	546	7,185	5,115	71.2%	9.4

[참고] 1. 2007~2009년 예산 : 정산보고서의 교부결정액으로 기입함
2. 2010년 예산 : 결과보고서의 총사업비로 기입함
3. 2011년 예산 : 기본계획(안)의 집행계획 금액으로 기입함

자료: 국민농업포럼(2016).「2016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지난 10년간 227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CEO 34명, 전문 인력 170명, 농고·농대생 21명이 채용되었음.

그림 3-2. 전문 인력 유형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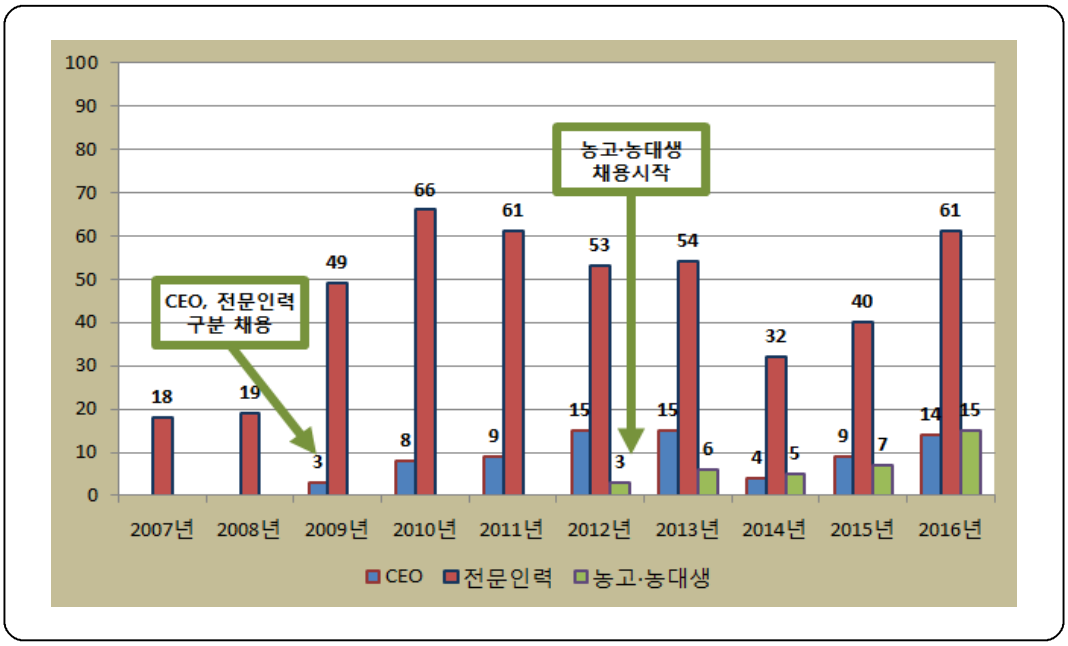

자료: 국민농업포럼(2016).「2016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3. 귀농·귀촌 지원 사업

○ 사업 연혁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차에 걸쳐 귀농・귀촌 지원 대책 수립・추진(2009년, 2012년)
- 2009년 대책: 도시민 일자리 제공,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촌 지역 주민 확보 등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 지원 정책 수립

그림 3-3. 2009년 귀농·귀촌 지원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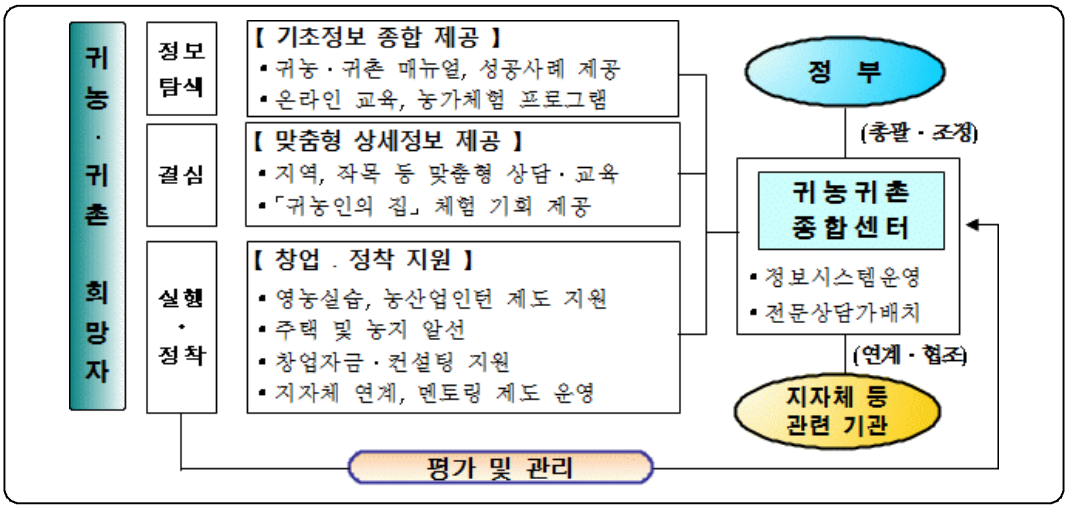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 2012년 대책: 귀농·귀촌 양적 확대를 정책 목표(귀농 2만호 달성)로 설정하고, 6개 분야 정책 과제 제시

표 3-3. 2012년 귀농·귀촌 지원 대책

과 제	세부과제
1. 정보전달 시스템 개선 (One-Stop 서비스)	o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재편
2.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확대	o 단계별(관심, 이주 등),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강의 추진
3.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확대	o 선도농가 실습 지원 사업 도입 o 영농·창업 및 주택마련 정책자금 융자 지원 o 농어촌주택 및 농지 구입에 따른 세제 감면
4. 지자체 도시민유치 활성화	o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확대 o 수도권 중심지에 '귀농·귀촌 종합상담센터' 설치
5. 사회적 붐 조성	o 귀농·귀촌 박람회(페스티벌) 개최
6. 법적 지원 근거 등 제도 마련	o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제도 및 행정조직 정비 o 귀농·귀촌 관련 통계 정비 및 보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발효
- 201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2)’ 발표(2016. 11. 22.)
  · 목표: 5년간(’17~’21)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
  · 정책:
  ① (청년층 농업창업 지원) ‘청년 창농 교육농장’ 운영, 6차 산업 창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층의 귀농 성공모델 창출 지원
  ②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품목별·과정별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교육 강화
  ③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④ (귀농귀촌 저변 확대)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⑤ (융화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융화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

○ 사업내용
- 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귀농 농업창업 계획서』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사업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

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
- 대출금리: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 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 원 한도 이내

○ 사업실적

표 3-4.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출 금액

연도	예산	대출 건수			대출 금액			대출 잔액
		창업	주택구입	합계	창업	주택구입	합계	합계
2009	561	193	9	202	104	2	106	64 (2015년 말 기준)
2010		524	111	635	314	38	352	254 (2016년 6월 말 기준)
2011	400	614	213	827	408	76	484	-
2012	500	705	304	1009	536	114	650	
2013	600	793	312	1105	644	113	747	
2014	700	1035	315	1350	882	131	1013	
2015	1,000	1524	283	1807	1573	122	1695	

주: 예산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금액으로, 연도 중에 증액된 부분은 미반영.
자료: 김정섭 외(2016).「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청년귀농 교육농장 지정・운영 시범사업(2017)

□ 목적 및 배경

○ 청년귀농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 중심의 맞춤형 현장 귀농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기관 양성 필요

○ 이에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17~'21) 주요 목표인 청년 귀농창업 1만 가구 달성의 세부 과제인 청년귀농교육농장 지정·운영 사업 시범 추진

- 시범 사업을 통해 교육농장·사업 운영의 세부 기준 현실화 및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청년 귀농 교육 지원 방안 도출

※ 연차별 교육기관 지정 계획 : ('17) 2개 →('18) 15개 → ('19) 30개 → ('20) 45개

□ 사업내용 : 귀농 예정 청년 대상 맞춤형 현장교육 기관 지정·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1월(8개월 간)

□ 사업예산 : 1억 4천만 원

□ 추진방법 : 공개 경쟁모집을 통한 교육기관 선정(2개소 시범운영)

□ 공모대상 및 자격

○ 공모대상 : 농업관련 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 고등교육법에 해당되는 농업 교육 기관 제외(농고, 농대, 한국농수산대학 등)

○ 참가자격

- 농업교육이 설립목적(정관 적시 필수)이며 청년 귀농 장기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자
- 1차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중 실습 교육이 가능한 기반*(시설, 농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청년 귀농 희망자 5명의 교육 훈련이 가능한 규모여야 함

- 교육생이 활용할 수 있는 숙박·학습 시설을 보유한 법인

* 지역 내 권역사업 및 정부지원 사업 등으로 구축된 시설, 공간을 업무협약 등을 통해 본 교육 운영 시 활용 가능한 경우도 해당

- 귀농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강사풀의 보유 또는 활용 가능한 법인

*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농업인, WPL 지도교수 등 가능

- 청년귀농교육농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 이상의 상시 근무 가능 인력을 보유한 자

* 보유 인력은 근로 사실 증빙이 가능한 교육 전담 인력만 인정 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한 사업비 정산·관리 가능자
- 소재 지역 지자체의 현장실사를 통해 추천서를(서식 1) 발급받은 자

* 추천서는 재정건전성, 전담인력, 시설 유무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현장실사를 통해 발급받은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교육 프로그램 기준

○ 교육대상 : 귀농 예정 청년(교육농장 개소당 5명)

○ 교육시간/기간 : 주 40시간 기준 / 8개월 간(시범운영)

○ 교육구성

- 청년층이 성공적인 창농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실제 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 이론, 실습, 토론, 견학, 지역 활동, 창업계획서 작성 등을 균형있게 구성
- 교육생별 선택 작목 대상 직접 재배를 통한 영농 기술 교육 필수 포함

* 생산 활동 실습은 4시간/일 기준 구성

□ 지원내용

○ 생산실습훈련비 : 교육기간 중 1인당 80만원/월* 지급

* 4만원/일 × 20일 = 80만원/월

* 월 출근 가능일의(공휴일, 주말 제외) 75% 이하 일수 출근 시 일할 정산(4만원/일)

○ 수료 시 교육시간 인정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자금 융자 시 필요한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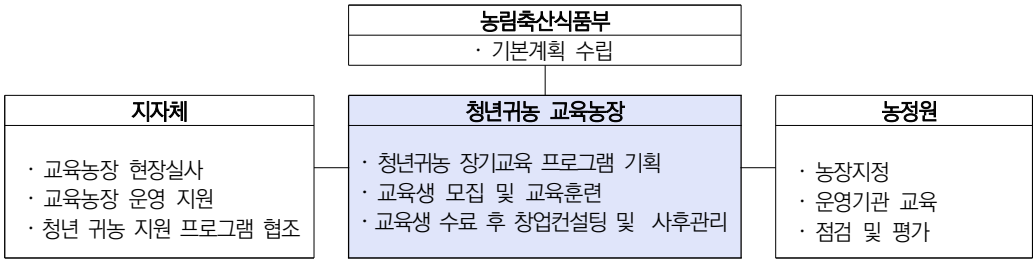

4. 영농정착기술교육

○ 목 적

-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농촌생활적응 및 영농기초기술교육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성공적인 농촌정착 유도

○ 사업규모 : 4,520명 1,130백만 원

표 3-5. 영농정착기술교육 사업규모(2016)

단위: 백만 원/국비, 명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사업량	4,520	480	600	280	440	440	660	720	480	140	280
사업비	1,130	120	150	70	110	110	165	180	120	35	70

주: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농촌진흥청(2016). 내부자료.

○ 교육대상 : 농촌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등

그림 3-4. 영농정착기술교육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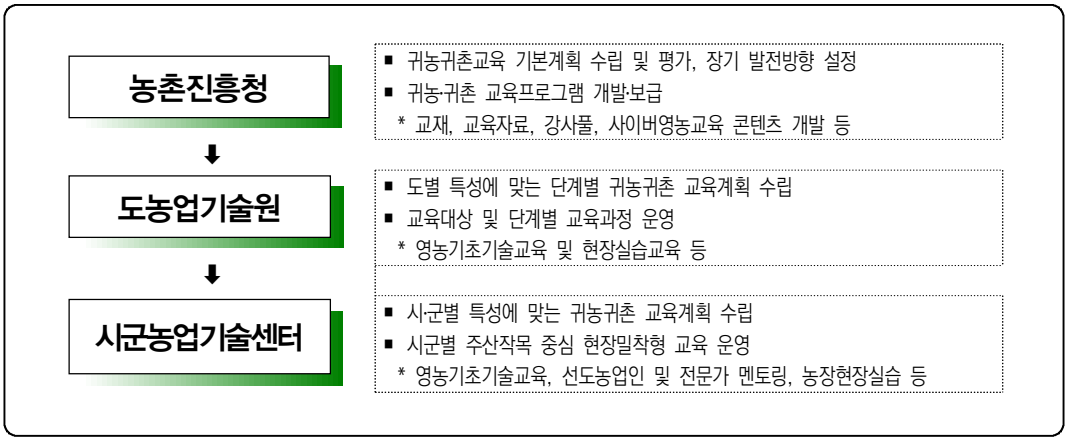

자료: 농촌진흥청(2016). 내부자료.

○ 교육방법

(도단위 : 도농업기술원) 도별 광역단위 귀농・귀촌교육 추진

- 교육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등
- 교육기간 : 1~2주
- 반 편 성 : 귀농반(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귀촌반 등
- 교육과목 : 공통과목(귀농・귀촌), 과정별 전문 과목(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에 의한 공동과정 개설 가능
  (예) 공통과목(도원, 2일) +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센터, 8일)
* 시군에서 편성하기 힘든 과정 개설, 귀농・귀촌교육 연중 운영체계 구축

(시군단위 : 시군농업기술센터) 시군별 주력작목 중심 귀농・귀촌교육 추진

- 교육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등
- 교육기간 : 수시(총 40시간 이상)

* 시군별 특성에 맞게 주요 영농시기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운영방법 : 영농기술, 영농현장 견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경험을 심화시켜 귀농 실천역량 및 자율적 역량배양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기초창업 교육

○ 주요내용

-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대상 품목중심 기초영농교육・코칭・멘토링
  · 농업기술교육 : 농업의 이해, 품목별 농업기술, 농업정보 및 농업기계 활용
  · 농업경영・마케팅・기술창업 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기술창업기초, 비즈니스모델(캔버스), 영농설계기법
  · 농촌생활적응 교육 : 전통문화 등 생활과학기술교육
  · 귀농자 추수교육 : 기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피드백 교육 및 지원 사업

  * 선도농가-귀농연수생에 대한 집합교육, 선도농가 교수학습 기법 및 경영역량강화 교육

-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지역학습단체 등 지역의 리더와의 멘토링 지원
  *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의 농촌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토록 멘토링 활동비 지원
- 현장지원팀 운영 : 관내 전문가(농업기술원 등 분야별 전문가 포함 등) 5명 내외 구성 운영

5.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 농촌(시・군)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규모(2016년) : 귀농연수자 517명(3~7개월),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표 3-6.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규모(2016)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사업량 (명)	517	13	54	48	51	71	119	89	52	15	5
사업비 (백만원)	1,550	39	162	144	153	213	357	266	156	45	15

자료: 농촌진흥청(2016). 내부자료.

-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단,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 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게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연수 수당 지원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시행자(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함(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교육운영: 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농업법인, 현장실습농장(WPL)・농업 마이스터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 현장실습교육: 귀농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강화(필수 + 선택과정)
- (필수) 기본실습과정 :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습득기술의 자가 영농 적용실습
  * 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에 역점 추진
  * 습득기술의 적용실습 : 자가 영농지 실습,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창업관련 전문기술 습득 등
- (선택) 네트워킹과정 : 시군센터 주관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 자율학습조직 등

* 도・시군단위 귀농교육(단, 농업인대학, 귀농대학 등 중장기교육은 제외), 귀농현장실습 성과평가회 및 심화기술교육, 관련 전문가초청 교육, 자율학습조직 운영, 도시 등 타 산업 연계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실습기록관리 시스템 지도, 귀농연수생 영농기반 확보, 도시소비자 연계 등(단, 선택과정은 월별 총 연수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귀농인 연수 작목별 현장실습기간 등 탄력적 운영(3~7개월, 연간 총 800시간): 자가 영농 실습인정(월 40시간 이내), 주 작목(벼)+부 작목(채소) 연수 가능,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복수지원 가능, 자가 영농실습 결과 온라인 실습보고서 작성, 지역여건에 따라 조별 2명의 선도농가나 귀농연수생이 실

습 추진할 수 있음

* 시군센터 주관 하 당사자 간 상호학습방법, 실습기간 등 협의(예 : 지역여건에 따라 1명의 선도농가 또는 귀농연수생이, 2명의 귀농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실습할 수도 있음, 조별 3명이상 불가)

○ 사업실적

- 선도농가 실습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에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 귀농인의 농촌 지역 적응 및 정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 교육만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1] 2016년에 국무총리실 주관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도 선정됨.

표 3-7. 선도농가 실습 지원 사업 실적

구분	2012	2013	2014	2015
지원 예산 및 대상자 수	12억 원 (200명)	15.5억 원 (609명)	15.5억 원 (602명)	15.5억 원 (557명)

주: 2012년의 경우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이었으며, 만 59세 이하 귀농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연수기간 동안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지급액의 50%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

자료: 농촌진흥청(2016). 내부자료.

- 관련 문제점: 현장 수요에 비해 사업량이 적음. 선도농가(멘토)의 역량에 따라 실습지원의 성과가 좌우되는 한계가 있음. 일부 연수 시행자의 경우, 실습자(멘티)를 고용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음.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재배하는 특정 품목의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실습이 이루어져 귀농인이 여러 품목의 재배 전반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에 한계가 있음.

1 영농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 ('13) 86.0점 → ('15) 90.0점, 교육만족도: ('13) 87.7점 → ('15) 91.6점

6.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 취지와 목적

-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광역 단위)의 특화된 농업기술 인프라와 민간 역량을 연계한 귀농창업 정보제공 등으로 귀농인의 창업역량과 농업 기술 기반형 일자리 창출 모델 제시

  * 귀농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귀농인 맞춤형 지원거점을 육성하고자 함

  * 기존 현장 실습형 귀농교육 이후 창업설계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그림 3-5.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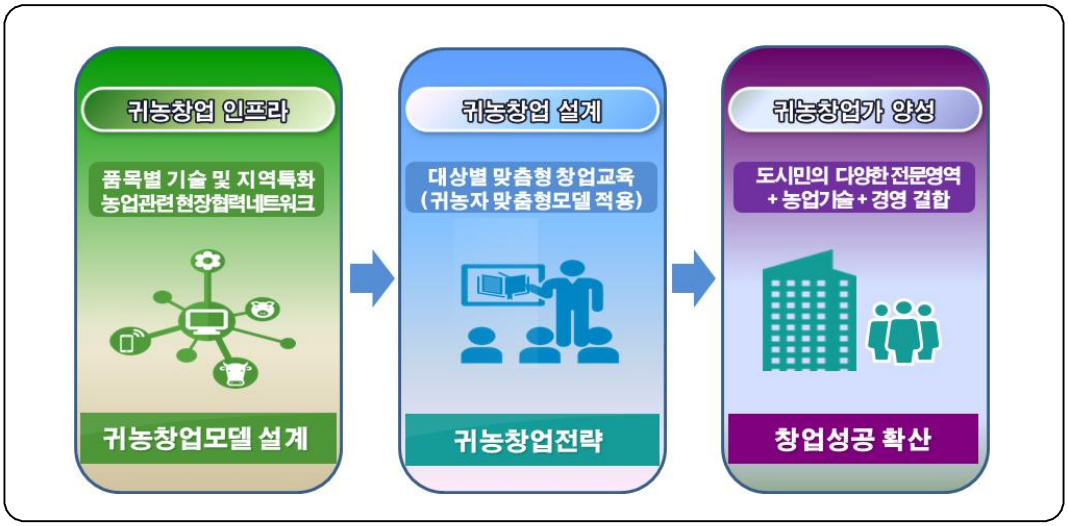

자료: 농촌진흥청(2016). 내부자료.

○ 사업내용

- 사업규모: 6개소, 도농업기술원, 2,400백만 원 (국비 30%, 지방비 70%)

표 3-8.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규모(2016)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개소)	6	1	1	1	1	1	1
사업비 (백만원)	2,400	400	400	400	400	400	400

자료: 농촌진흥청(2016). 내부자료.

(1단계) 도단위 창업교육 : 200명(과정 1 + 과정 2 + 과정 3)

- (과정 1)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1박2일×5회차, 도원, 교육인원 30～50명)
  * 귀농창업지원대상자 후보자・시군 추천귀농인(시군별 1～2명, 몰입과정) + 농식품부 청년 농산업창업 인턴(교육인원의 1/2 이내, 선택과정)
  * 강의식 교육이 아닌 1:1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퍼실리테이터 활용 개인별 창업모델 3종 작성 필수)
- (과정 2) 귀농창업비즈니스 과정(5시간×3회차, 도원, 교육인원 00명)
  * 창업 희망 귀농인 및 농산업창업인턴 참석 가능(일회성 특강형식)
- (과정 3) 귀농기술창업과정(3시간×1회차, 도원, 교육인원 00명)
  * 창업을 희망하는 귀농인 대상 창조경제혁신센터・농업기술실용화재단・6차산업 지원센터 등 외부협력기관 연계 신제품개발, 지적재산권 활용교육 ⇒ 도단위 창업교육과정 중 과정 1(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은『위탁교육』으로 추진 가능

(2단계) 창업 심화코칭

- 사업개요 : 1단계 교육 대상자 중 우수수료자들이 심화코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면대면 개별 코칭 지원
  * 도별 채용한 창업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활용, 전문기관 위탁 추진(개별 관리대장 작성)
- 대 상 :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우수 수료자 10명 이상
- 코칭내용 : 개인별 일자리 상담, 사업성 분석, 창업 실행비 활용방안, 최종 비즈니스모델(창업모델) 개발

(3단계) 창업지원

- 지원규모 : 10명 상당(예비 창업 실행비 1억 원 한도 내 차등지원)
- 지원내용
  - ・귀농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를 위한 창업 지원 자금 지원
  - ・귀농창업 우수사례 발굴 및 귀농창업모델 확산
  - ・예비 창업 실행비 및 크로스코칭・전문가를 통한 창업지원

7.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

○ 39세 이하 성장잠재력이 큰 신규 영농창업자에게 최대 2년 훈련수당(1년) 또는 창업안정자금(1년) 지원 (연 300명 규모)

① (창업 준비단계) 독립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일정한 영농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 시 훈련수당(최대 1년, 월 80만원) 지급

② (창업 초기단계) 창업(예정) 소재지 시・군에 주거 이전 및 농업경영체 등록 등 일정요건 확인 후 창업안정자금(최대 2년(준비단계 포함), 월 80만원) 지급

※ 제외대상: 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② 동일세대 내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농 하는 자 ③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④ 병역미필자

○ 사업성과[2]

- 사업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농업소득 증가) 뿐 아니라 이들이 농촌에서 농업종사에 따른 사회적 편익(도시 교통혼잡비용 및 환경오염비

2 맥스컨설팅(2017)의 연구결과

용 감소, 농업생산성 증가)과 비용(도시의 집적경제 감소)이 발생
- 경제적 편익: 일반 농업인에 비해 3배 이상의 농업소득 발생
- 사회적 편익: 도시 출신 청년 농업인의 경우 1인당 626만 원 발생

표 3-9. 2016년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 시행 개요

구분	세부 사항
사업 목적	영농창업에 관심있는 도시 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 창업지원
사업 대상	우선순위 설정: 창업예정자 〉 영농경력
지원 기간 (금액)	1년 (10백만원)
대상 인원	300명 (실 선발인원 248명)
자금 용도	영농 목적의 소모성 자재 및 교육비로 제한
의무 사항	영농종사: 수급기간 영농교육: 없음
지급 방식	정산후 사후 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계획(안)」 및 내부자료.

○ 한계
- 사업 목적을 청년 영농창업에 한정하고 자금 사용 용도를 소모성 영농자재 구입 및 농업 관련 교육으로 제한하여 청년 농업인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반영하지 못 하였음. 지급 방식도 자부담 후 영수증을 첨부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8. 신규 취농 지원 농지매입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농가경영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추진

○ 매입대상 농지 :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 진흥 지역안 1,000㎡이

상 1,983㎡이하 농지

○ 매입지역 : 7개도 26개 시・군 선정(시・군당 1ha 규모)

○ 농지임대 : 매입 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

○ 지원체계 : 농지매입 및 매입농지 정보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통보 →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와 임대계약

신규취농인 농지매입 지원 사업 평가[3]

○ 이 사업은 26개 시・군을 참여 지자체로 선정하여 이들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90억 원의 사업비로 30ha의 농지를 매입하여 신규 취농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하지만 2016년 7월까지 사업실적은 8개 시・군에서 2.8ha를 매입하여 4억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규 취농인들에 대한 임대는 3필지 0.5ha에 불과함.

○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 취농 농지 확보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격(내용)과 신규 취농인의 농지수요상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현행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사업대상지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나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농지의 대부분이 논으로 구성됨.
- 하지만 신규 창업농의 대부분은 논농사보다 밭작물 재배에 관심이 더 많음.

○ 농지은행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농어촌공사 업무 담당자로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업농 지원으로 할 것인지 신규 창업농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인지 입장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규 취농인보다 기존 전업농의 규모화 지원에 더 적극적이게 되는 현실적 문제도 있음. 또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의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경영이양 직불제4

○ 이 사업은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만 65~74세의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이양할 경우 최장 10년간 ha당 연 300만 원(월 25만 원, 지급상한 4ha)을 지급하여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1997~2015년 경영이양직불사업 실적

구 분		경영이양실적			전업농 등 지원현황	
		인원(명)	면적(ha)	금액(백만 원)	인원(명)	1인당면적(ha)
직불금	신규매도	16,384	8,208	17,770	14,741	0.56
	신규임대	89,963	67,741	159,849	70,592	0.96
	분할(매도)	[24,982]	[15,332]	42,061		
	분할(임대)	[121,041]	[104,349]	292,863		
	계	103,308	75,949	512,543		
운영비				41,463		
합계		103,308	75,949	554,006	72,474	1.05

주: 매도·임대 중복인원 고령농업인 3,039명, 전업농 12,859명.

○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고령은퇴 농업인 10만 3,000명에게 5,12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1인당 496만 1,000원의 소득지원 효과를 창출함.

- 2015년까지 전업농 등 약 7만 2,500명의 농업인에게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7만 5,949ha를 이양함에 따라 전업농 1인당 1.05ha 영농규모 증가에 기여함.

○ 경영이양사업의 중심이 매도이양보다 임대이양에 놓여 있는데, 임대이양은 약정종료 후 자경이나 재임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경영이양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2011~2013년 기간에 평균 재임대 비율이 면적 기준으로 88%에 이르러 사실상 경영이양 비율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약정자의 의사에 좌우되기 때문에 완전한 경영이양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매도나 종신형 임대를 통해 완전한 경영이양을 의무화하는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함.

- 사업약정으로 매도 또는 영구임대를 의무화하는 대신에 은퇴농이 자경과 같은 소득 수

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경영이양직불금 상향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영이양 유형에서 기존의 매도형과 임대형 경영이양과 별도로 매도형과 임대형의 결합형태 등 다양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고, 일시에 경영 이양하는 기존 사업과 별도로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경영 이양하는 사업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 사업과 농지연금 사업을 결합하는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9. 농업계 학교 육성[5]

□ 농고·농대 육성(~1995)

○ 1972년 시범 농업고등학교 육성

- 13 개(홍천, 이천, 보은, 공주, 김제, 장성, 강진, 안동, 성주, 창령, 사천, 서귀농업고등학교)농고를 산학협동 시범 농업고등학교로 지정
- 학교와 농촌지도 기관이 연계: 교과과정의 70%를 전문교과로 구성 + 연간 현장 실습 일수를 60일(일반 농업고등학교 20일) + 재학생의 5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감면 + 학교당 운영비를 연간 100만원씩 지원

○ 1978년 농업고등학교 실험·실습 지원

- 과학영농을 육성하고 농촌 새마을운동을 주도할 우수한 기간 영농인을 길러낼 수 있도록, 기존 농업고등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

3 김수석 외(2016). 「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발췌

4 김수석 외(2016). 「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발췌

5 마상진(2016). 「농업 인력육성정책으로서의 귀농 정책」에서 발췌 및 일부 수정

- 60 개 농고에 국고를 지원하여 100 %의 실험・실습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며, 학과의 통·폐합과 교육과정의 개편, 그리고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우수 학생을 확보하며, 실험실습비와 실과수당을 인상하고, 졸업생의 영농정착 지원과 농업관련 기관의 취업을 보장(1979년부터는 농업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새마을 장학금이 지급)

○ 1980년 자영농고 육성
- 각 도에 1 학급씩(학급당 40-50 명)의 학생을 모집. 이천농고, 춘천농고, 청주농고, 보은농고, 공주농고, 김제농고, 강진농고, 안동농고, 사천농고, 서귀농고. 이후 1985년에 주천농업고등학교 역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
- 과 단위의 자영농과 운영을 학교단위 운영으로 전환. 1983년 여주농고를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로 개편(전국 모집)

○ 1983년 우수농업고등학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사업
-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 대상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금을 융자하여 학생을 지원. 융자한도액을 학생 1인당 100만원으로 하고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하되 무이자로 지원.
- 1983년부터 1991년까지 9년 동안 매년 400여명의 학생에게 지원.

○ 1993년 신농정 5개년계획하의 농고, 농대 육성
- 농업계 고등학교 후계인력육성의 중심학교로 육성 → 자영농고 집중 지원
- 국립농과대학을 기능별특성화대학으로 육성 지원: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첨단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 농업인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지역 농림어업 발전과 과학기술연구 개발센터로 활용
- 농과대학에 농업 전문경영자 과정 설치

농업계 학교 현황

○ 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 학교를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현재 71개의 농고가 있다. 농업계열 학과만 있는 순수 농고는 23개, 비농업 부문 학과를 포함하여 농업계열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농업계고 48개이다. 이들 71개 농고에는 735개 학급이 있으며 약 2만여 명(2014년 21,02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매년 약 7,000여 명의 학생이 졸업하는데, 졸업생의 1% 미만이 영농 현장에 진출하고, 동일계열 취업이 15% 수준, 동일 계열 진학이 20~30% 수준이다.

최근 3년간의 농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진학 현황

단위: 명(%)

연도	졸업생 수	영농 종사자	취업자				진학자		기타
			동일계열		타 계열	소계	동일 계열	소계	
			공공 기관	기업체					
2012	6,977	17	-	1,012	1,191	2,134	2,157	3,922	693
	(100.0)	(0.2)	(0.0)	(14.5)	(17.1)	(30.6)	(30.9)	(56.2)	(9.9)
2013	7,353	16	82	1,151	1,407	2,652	1,628	3,314	1,185
	(100.)	(0.2)	(1.1)	(15.7)	(19.1)	(36.1)	(22.1)	(45.1)	(16.1)
2014	7123	44	34	1,201	1,372	2,615	1,247	2,739	1,675
	(100.)	(0.6)	(0.5)	(16.9)	(19.3)	(36.7)	(17.5)	(38.5)	(23.5)

자료: 한국농업교육협회(2015).

○ 농업계 대학(2년제 포함)의 경우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 학교를 중심으로 보면 전국에 37개가 있다. 학과 수는 국 · 공립 23개 대학에 170개, 사립 14개 대학에 50개가 운영 중이며, 여기에 약 3만 4천여 명(2013년 34,177명)이 재학 중이다. 2013년 기준 전국 농업계 대학 졸업생 수는 총 5,953명이고 취업자는 총 3,058명으로 취업률은 51.3%였다. 전공 직접관련 분야 취업자는 25.6%, 간접관련 분야 9.0%, 타 산업 부문은 16.7%였다. 직 · 간접 분야 취업자 중에 영농자는 650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10.9%를 차지하고(이 중 과반이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농산업 창업자는 2.5%였다.

농업계 대학 졸업생 취업현황

단위:명(%)

지 역	졸업생	취업인원				영농	농산업 창업
		직접 관계	간접 관계	전공 무관	합계		
전국	5,953	1,526	536	996	3,058	650	152
	(100.0)	(25.6)	(9.0)	(16.7)	(51.4)	(10.9)	(2.6)
서울권	970	134	44	147	325	2	7
경기권	625	244	106	73	423	242	25
강원권	643	181	49	111	341	75	2
충남권	764	222	110	110	442	90	3
충북권	360	82	27	36	145	25	0
전남권	523	143	40	85	268	24	2
전북권	489	144	39	100	283	80	68
경남권	736	186	34	186	406	65	14
경북권	795	181	82	140	403	40	30
제주권	48	9	5	8	22	7	1

자료: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2014: 48).

□ 한국농수산대학(1995~)

○ 기존의 농업계 학교로는 신규 농업인 육성에 한계

○ 1995년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 추진

- 현장 중심의 지식·기술·경영 능력과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전문학교설립을 1995년부터 준비하여 1997년 3월에 개교하였음.
- 1997년에 6개과(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의 총 정원 720명(40명, 6개과, 3년 과정)으로 개교함.
- 전문대학 졸업자로 학력이 인정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교육비 전액 국고 지원, 병영미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등 지원을 함.

○ 2007년 한국농업대학,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개편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로 이관)

○ 2000년 첫 졸업생 배출 이래 3,663명이 졸업, 이 중 85.3%가 영농에 종사

표 3-10. 한국농수산대학 영농종사 현황

단위: 명, %

학과	졸업 생수 (A)	의무영농대상				의무영농대상 외					영농 종사율
		소계	종사 (B)	유예 (C)	기타	소계	이행기간종료		학비 상환	면제 (E)	
							영농 (D)	비영농			
식작	506	264	251	11	2	242	172	35	26	9	87.0
특작	654	331	287	34	10	323	207	53	59	4	80.2
채소	501	258	238	16	4	243	180	20	35	8	87.6
과수	516	260	234	21	5	256	187	26	39	4	85.7
화훼	590	269	246	15	8	321	204	47	64	6	79.1
축산	866	530	510	15	5	336	255	47	29	5	90.4
합계	3,633	1,912	1,766	112	34	1,721	1,205	228	252	36	85.3

* 영농종사율: [(B+D) / (A-C-E)] × 100

※ 선도개척농사업(1994~1998): 농과대학이나 농업계 대학원 졸업자로서 귀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1인당 1억 원의 자금 제공(35세 미만 전문대 이상 졸업자 대상)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2004~) 이후

○ 2006년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고 현장체험교육 ,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 운영

- 농고 현장체험교육: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농가와 학교 간 협력을 통해 현장체험교육 강화하기 위해, 농림부가 지정한 현장실습시설 및 농업인 강사 활용하도록 함. '06년 도별로 1개교 시범사업 실시 계획하고, 이후 현장체험교육 운영 농고에 연간 약 1억 원씩 총 3년간 지원(10개교: 여주자영고, 수원농생명과학고, 홍천농고, 청주농고, 공주생명과학고, 보은자영고, 김제자영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현장체험교육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농고, 학생, 농업경영체,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분기별 1회의 협의회 개최·운영비 지원)
- 농고 현장체험교육은 이후 → 특성화 농고 교육지원 (2008년) → 농업고교 산업연계 교육(2012년)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어짐. 2014년에는 16개교, 57개 과정, 15,719명을 교육(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5: 6).
- 농대 영농정착교육: 농과대학의 현장인력 양성 기능 회복을 통해 젊은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촉진(농업생산인력 육성)하고, 농대생에게 재학 중 농업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실습, 영농설계 등을 현장과 연계하여 이수토록 하여 창업능력을 제고한다는 목적 하에 실시. (2006년: 강원대, 공주대, 제주대 → + 2007년: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진주산업대 + 2008년: 순천대, 충북대, 경북대, 천안연암대 → 이후 11개 대학 지속적 지원, 대학당 2억여원 지원)
- 농대 영농정착교육은 이후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2012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 2014년에는 14개(15개 단과대학) 농업계 대학, 55개 과정, 7,38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5: 8).

○ 2016년 창조농업선도고교

- 추진 방향 : 기존 농업계 고등학교 중 의지와 역량을 가진 학교를 선정하고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 직업교육을 실시
- 지원 대상 및 규모 : 전국 농업계 고교 3개, ('16) 개교지원금 20억 원, ('17 이후) 운영비 매년 지원
- 지원 분야 및 단위 : 원예·축산 특화/학교 단위
- 학생선발: 전국단위로 학생 영농의지 중심 선발, 학급당 20명 내외
- 교육과정 : 전체 이수단위(204단위) 중 전문교과 비중 70%(143단위) 이상

○ 2016년(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 추진 방향 :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이 강화된 영농창업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
- 지원 대상/규모 : 전국 농업계 대학 5개, ('16 정부안) 학교당 운영비 2억 원, ('17 이후) 운영비 매년 지원
- 지원 분야/단위 : 원예·축산 또는 자율/사업단
- 학생선발 : 1학년 학생 수 20~30명, 학생 영농의지 중심 선발
- 교육과정: 기존 전공을 이수하면서 영농창업특별과정 함께 이수(학점 인정)

  * 영농창업특별과정은 졸업학점의 30~40% 수준으로 편성하되, 실습 비중은 50% 이상으로 구성

- 실습학기제 운영, 방학기간 해외전문기관 연수(우수 학생),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0. 문제점

○ 후계농업인육성체계 외에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사업규모도 매우 협소함.

○ 지역 단위 신규 유입인력 지원체계의 부재

- 대다수 지자체에서 신규취농 지원 대상자 선정과 후속 지원 조직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음.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신규취농자 지원의 지침이나 평가기준, 지원기준 등이 최근에 많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농협 및 기타 후계농 지원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
-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관련 기관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취농자 지원 사업을 다른 여러 업무의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문임. 즉, 신규취농자 지원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현장 담당자의 역량에 의해 해결될 수도,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임.

○ 밀착지원 및 창업생태계 부재

- 농촌 현장에서 신규취농 과정에서 경험하는 기술, 자금, 판매 그리고 주거 등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 부재

제 4 장

청년 영농창업 관련 외국 사례

1. 유럽연합

1.1 취농 교육

□ 독일

○ 독일에서는 대부분 농업 경영자가 되기 전에 중등 후기과정으로 농업분야 직업교육을 받음. 그리고 농업 현장에 일정 경험을 쌓은 후 추가 전문교육을 거쳐 시험을 통과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농업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됨. 즉 농업 마이스터가 되는 것임.

○ 독일의 농업 마이스터가 되기 위한 과정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정도의 국민 기본교육을 이수 후 우선 대략 3년 동안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과 농장에서의 실습으로 이원화된 교육(Dual System)을 실시하는 농업직업학교(Landwirtschafliche Berufsschule)에서 농업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음.
- 3년의 교육은 1년의 전일제 학교교육(39시간/주)과 2년여의 시간제 교육(견

습생)으로 구성됨. 교육 이수 이후 시험(이론+실기)을 통과하면 농업기능사(Gehifen) 자격이 부여됨. 농업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보통 농장 경영을 할 수 있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 자격이 부여됨.

- 농업기능사 자격 취득 이후 1~2년의 농업 현장 경험을 한 사람은 전문성 향상훈련(Landwirtschaftsschule)을 받을 수 있음. 이 훈련은 보통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에서 관리하는 마이스터 학교에서 이루어짐. 마이스터 학교에서 주당 20시간 3학기 교육 (겨울 2학기(전공이론)+여름 1학기(실습))과 학생의 의도에 따른 맞춤교육을 받은 후 역시 농업회의소[6]에서 관리하는 시험을 통해 농업 마이스터 자격을 받을 수 있음.

그림 4-1. 농업 마이스터 자격 취득 경로

○ 마이스터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마이스터 시험 구성은 크게 세부 전공 분야, 경영과 법률 분야, 직업훈련 교수법 분야로 나누어짐. 전공분야 교육은 현장을 이해하는 최고 기술자로서의 마이스터를 위한 것이고, 경영과 법률 교육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 책임자로서의 마이스터를 위한 것임. 그리고 직업훈련 교수법 분야 교육은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 책임자로서의 마이스터를 위한 것임. 특히 교육자로서의 마이스터를 독일의 마이스터 양성교육에서는 교수법이 많이 강조됨. 마이스터가 된 사람은 누구나 초기 3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음.

6 농업경영, 양어, 산림, 조경, 농업, 유가공, 말 사육, 사냥, 가축사육 분야 마이스터 자격을 관리한다.

그림 4-2. 농업 마이스터 교육 내용(시간) 및 시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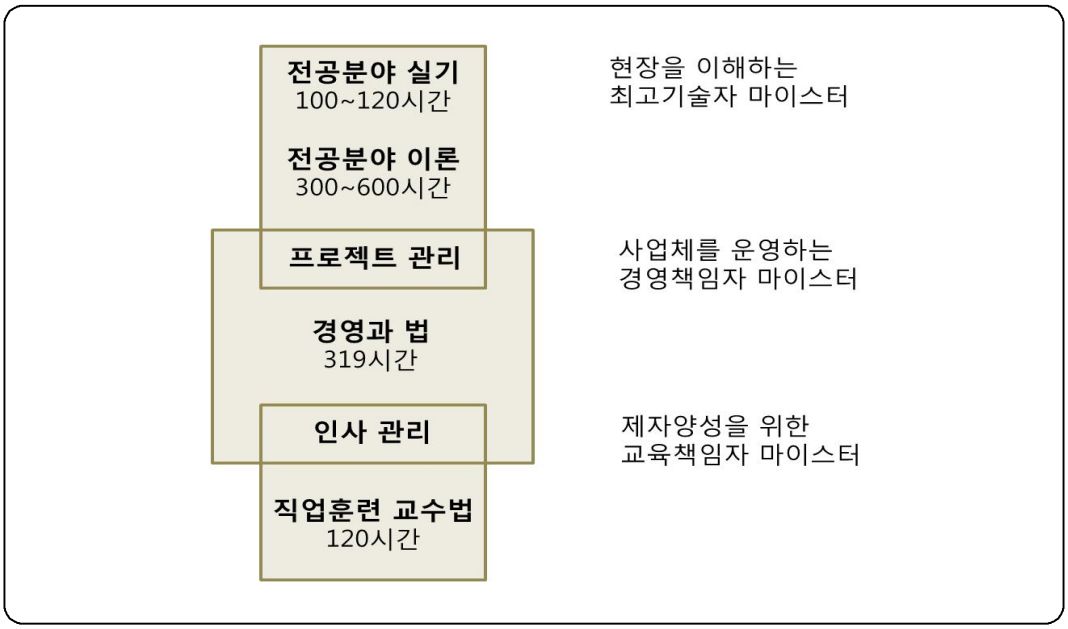

자료: 김정원(2007).「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마이스터 자격제도: 의미와 운영시스템」.

□ 덴마크

○ 덴마크에서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자격증(Green Certificate)이 필요함. 최근 변화는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소유를 위해서는 이 자격이 꼭 필요하기 때문임. 녹색자격증은 고등학교 직업교육기관인 농업전문학교(Agricultural College) 교육을 이수해야만 획득 가능함.

○ 9년간의 정규 학교교육을 이수한 후, 진학하게 되는 농업전문학교의 교육은 크게 농가에 고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기초과정(Basic Education)과 농가경영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연장과정(Extended Education)으로 구성됨.

- 기초과정은 '2개월 수업-12개월 실습-4개월 수업'의 모듈 1과 '18개월 실습

-6개월 수업'의 모듈 2로 구성됨. 이 3년 6개월 과정을 모두 마친 경우 농업 경영 자격을 갖춘 농가에 고용될 수 있는 자격(license as skilled farmer)이 부여됨. 모듈 1과 모듈 2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은 농업 경영자를 양성하는 연장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부여되며, 경우에 따라 농과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부여되기도 함.

그림 4-3. 덴마크 녹색자격 관련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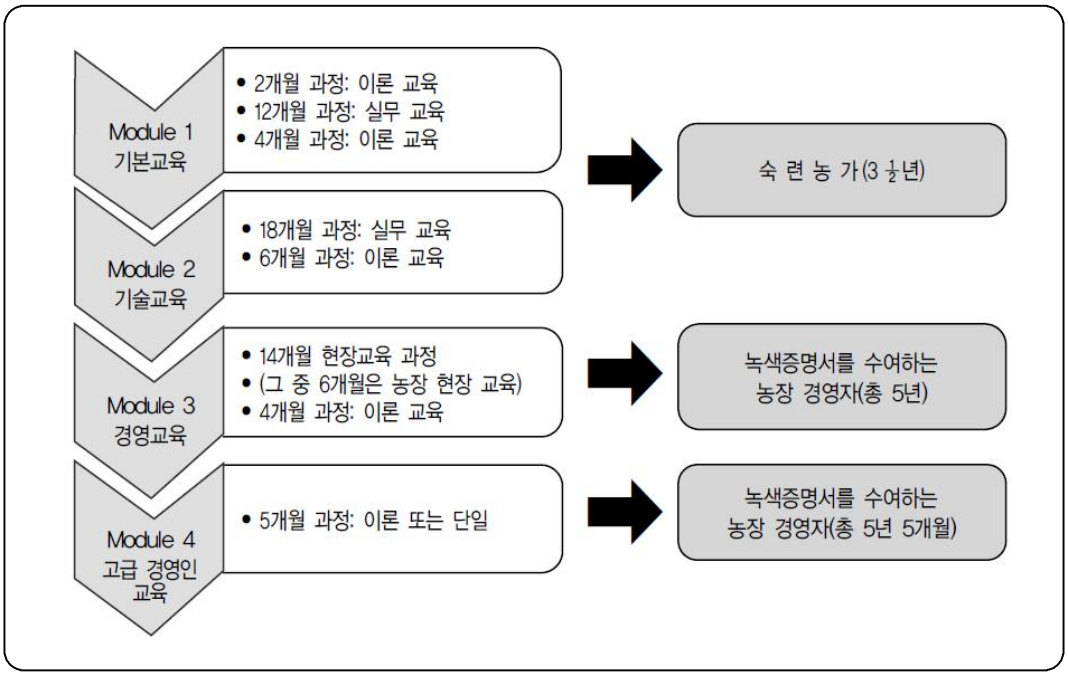

자료: 전상곤 외(2010).「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 연장과정은 기초과정을 마친 학생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임. 18개월 과정인 모듈 3을 이수한 자에게는 Green Certificate을 수여하여 농장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자격(farm manager)이 부여됨. 모듈 4과정은 모듈 3과정의 연속과정으로서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Green Diploma가 수여됨.

그림 4-4. 농업 자격 취득을 위한 덴마크 Bygholm Agricultural College의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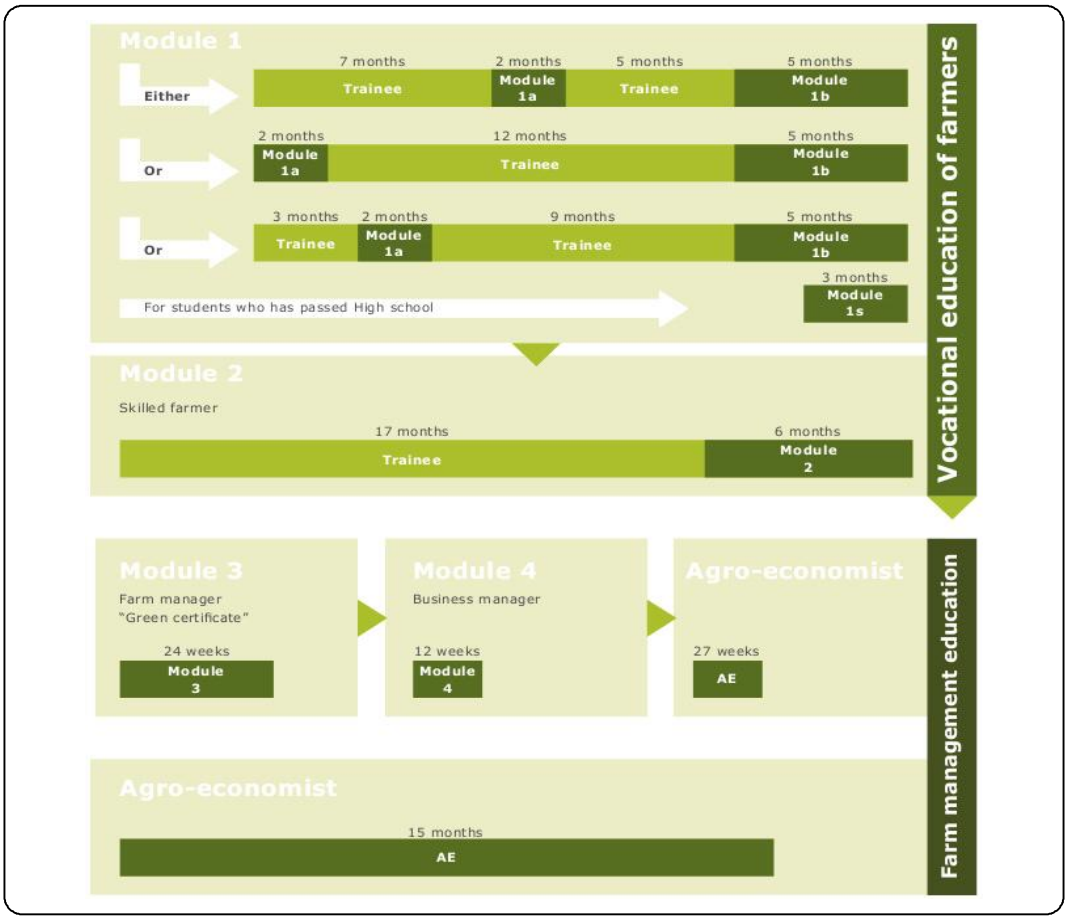

자료: http://www.bygholm.dk.

□ 프랑스

○ 프랑스 농업교육은 중학교 2학년 수준(프랑스 중등학교 4학년)부터 제공됨.

- 중학교 과정에서는 보통교육과 더불어 농업관련 분야의 직업을 체험하는 과정이 제공됨. 중학교 과정 2년을 거친 후, 농업분야에 바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농업적성시험(Le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agricole: CAPA) 준비 과정을 가거나, 고등학교 중 직업과정, 기술과정, 학문과정(과학) 중 하나로 진학하게 됨. 직업고교과정은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한

과정이고, 고교 기술과정은 단기대학 또는 종합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이며, 학문과정은 종합대학, 대학원 등의 진학을 위한 과정임.

○ 농업적성시험 준비과정은 2년으로 구성됨.

- 농촌서비스, 경관, 토목, 원예 생산, 농업 생산기계, 말 사육, 임업, 기수, 포도・와인 등의 코스에 따라 이수 과목을 선택함. 이 과정은 취업이 주된 목적이지만, 직업고교과정에 진학할 수도 있음. CAPA는 전체 프랑스 자격 중에 Level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업생산, 가공, 서비스 분야의 통합 기술 자격임.

○ 직업고교과정은 직업학위(baccalauréat professionnel)을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으로 3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됨.

-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연수가 의무화 되어있음. 직업고교과정은 CAPA 등의 기술 자격 취득자와 일반학위 및 기술학위 과정 이수자 역시 중간 편입이 가능함. 자격 취득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단기 고등교육과정에 진학할 수도 있음.
- 직업학위취득과정의 농업관련 직업교육 과목 군에는「식물 생산, 농업 시설」,「동물 생산」,「자연·정원·경관·임야」,「식품 가공・검사」,「상업 서비스」 등 다섯 개가 있음. 세부 시험 구분은「경관정비」,「임야」,「검사・품질 관리」,「고양이 관련 기업의 관리 업무」,「말 관련 기업의 관리 업무」,「자연 동식물 관리」,「농업 경영 관리 업무」,「양식」,「정원」,「농업 기계・시설」,「컨설팅 ·판매(원예 용품)」,「컨설팅·판매(식품)」,「컨설팅·판매(동물)」,「가공·바이오산업」,「사람・지역 서비스」,「동물실험기사」 등 16개가 있음. 직업학위는 농업경영자 외에도 농업, 식품산업 등의 고급인력을 육성함. 이 중「농업 경영 관리 업무」나「농업 기계 시설」 졸업 증서 취득자는 청년 농업인 보조금 제도의 수급자가 될 수 있음. 또한 성적 우수자는 BTSA 취득 코스 (전문대학졸업 수준) 또는 고급전문기술증서의 취득 과정에 진학 할 수 있음.

그림 4-5. 프랑스의 농업교육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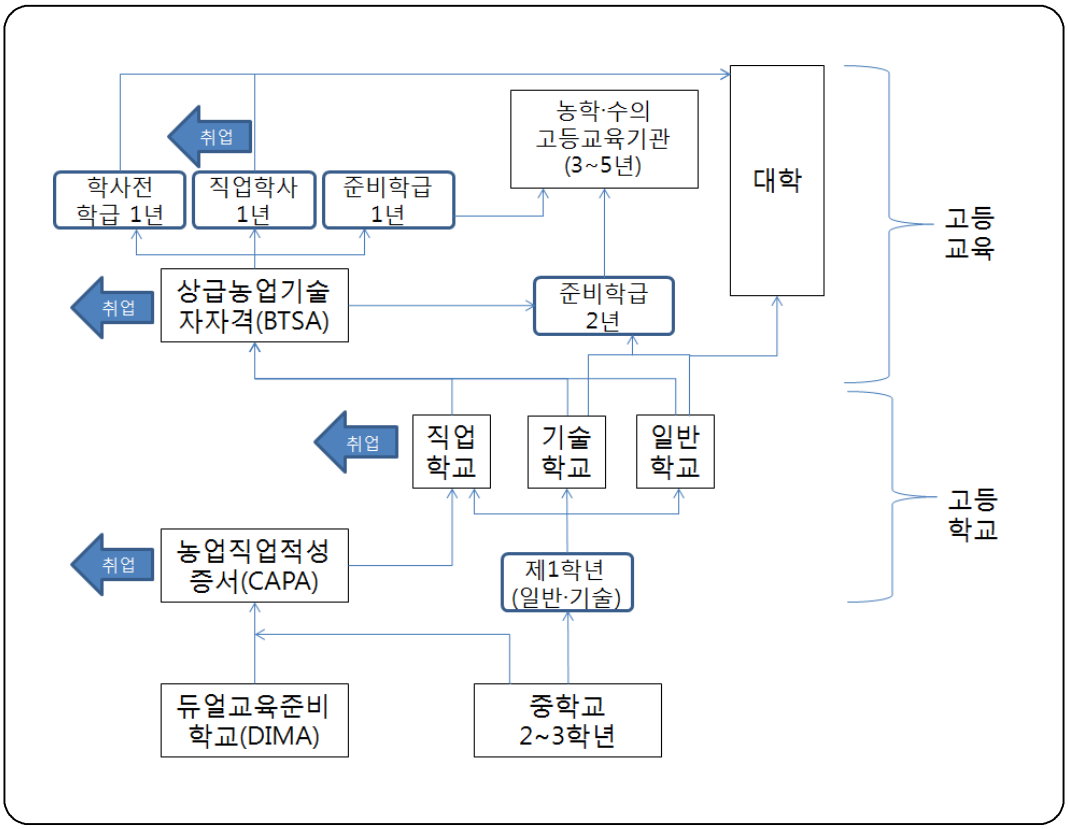

자료: 南石晃明 等(2014).「農業革新と人材育成システム」.

○ 기술고교과정을 졸업하면 기술학위(Baccalauréat Technologique)가 주어짐. 이 과정은 이후 단기고등교육과정(전문대학 수준) 진학을 목표로 함.

- 이 과정은「농업・생명과학기술: 농업-식량-환경-지역 (STAV) 코스」(Le Bac STAV: sciences et technologies de l'agronomie et du vivant)로 도 불림. 일반 과목 뿐 아니라, 생산, 농촌 정비, 농촌서비스 분야에서 한야를 선택하여 고등 교육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전문 과정 이수에 대비한다는 점이 특징임.

○ 일반고교과정은 대학과 고등기술자양성준비학급 등을 진학하기 위한교육

으로, 졸업 후 일반학위(Bac S)가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도 농업교육이 이뤄지는데, 「생물학과생태학」 주 5 시간, 「농업-지역-시민」 주 3.5 시간의 교과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고교과정 이후 이뤄지는 대학수준의 과정으로 단기고등교육과정(전문대), 장기고등교육과정(대학) 등이 있음.

- 단기고등교육과정은 농업고등기술자졸업증서(BTSA)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2년으로 구성됨. 생산, 가공 및 유통, 공간정비・환경보전, 서비스, 농업시설 등 5개 전공이 있음. 전문 이수 과목과 함께 12 ~ 16 주 기업 연수 기간이 설정되어 있음. 자격 취득 후 취업을 대부분 하지만, 대학 진학(직업학사 취득을 위한) 또는 기사(농업기사, 수의사)양성학교 준비학급(2년 과정)으로 갈 수도 있음.
- 장기 고등교육과정으로 기사양성학교와 대학이 있음. 기사양성학교의 경우 수업연한이 일반 농업기사(「농업」, 「식품 산업」, 「임야」, 「환경」, 「정원」 등의 전공)는 3년, 경관기사는 4년, 수의사는 5년임. 대학은 직업학사를 배출하는데, 직업학위 취득후 2년의 준비 교육과정을 거친 후, 1년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그 전에는 대학만이 수여기관이었지만, 2010년부터는 농림부 소관 농업교육기관에서 수여가 가능). 학과 교육이외에 12~16주 기업연수가 필수이며, 기본교육 외에 듀얼교육, 계속교육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함.

○ 이상과 같은 기본교육 외에 16세에서 26세에 취업 청소년, 청년을 위한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듀얼교육임. 기업에 취업한 후 연수 센터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임.

- 기본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듀얼교육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음. 학생들은 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연한만큼 기업체랑 고용계약을 맺음(CAPA 취득과정 2년, 직업학위과정 2년, BTSA 2년, 장기고등교육과정 3년 등). 고용주는 연령이나 경과 연수에 따라 최저 임금의 25~78%를

하한액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됨. 이미 직업경험과 기술을 획득되었다 평가되면 취학 연학의 단축도 가능함.

○ 기본교육과, 듀얼교육 외에도, 일반 성인의 경우 평생교육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함.

- 취업중이거나 취업 경험이 있는 일반인 또는 신규 구직자들은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 관련자격을 받을 수 있음. 기간, 인증 방법, 내용은 수강자가 얻고 있는 직업 능력 자격 수료증에 따라 연수 계획과 직업 능력 향상 계약 등에서 각각 설계됨. 농림부 소관 하에 있는 CFPPA (직업 교육, 농업 기술 향상 센터)와 고등교육기관, 사립학교에 병설 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음.
-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이외에 농업인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기 연수는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회의소에 관장을 함. 농업인 주요 4단체(전국농업경영자연합회, 청년농업인회, 농민연맹, 농촌연합), 농업회의소, 농업공제·협동조합·신용연합회 등의 협정에 따라 2001년 설립된 농업경영자 등의 평생교육 촉진을 위한 기금인 VIVEA(Le fones assurance formation des entreprepreneurs du vivant)에서는 농업 경영주와 배우자의 능력개발과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함.

○ 정리하면 프랑스에서 각종 농업인 대상 지원을 받으려면, 학교교육 또는 듀얼교육을 통해 고교수준의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농업분야 직업 또는 기술 학위(Baccalauréat Agricole)[7]을 받거나, 단기고등교육과정(전문대)을 통해 농업고등기술자졸업증서(BTSA)를 받아야 함. 또한 일반 고교학위(Bac S)를 받고 평생교육을 통해 1년 여간의 직업교육을 받아야 함. 프랑스의 경우 신규 농업인의 경우 대다수가 고교 이상의 학력과 전문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됨.

---

7 직업교육을 받으면 Bac Prof, 기술교육을 받으면 Bac Tech 학위 취득(두과정의 교육과정상의 구분은 Bac Tech은 보통 5주의 현장 교육, Bac Prof는 현장 1/2, 학교 1/2 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

1.2. 취농 지원[8]

□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 1957년 유럽 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이라는 식량안보에 대한 공감대에서 시작[9]된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새로운 변화 체제를 적용함.

- 제 1축(Pillar 1) 1992년 직불제(Direct Payment) 처음 도입. 직불금이 농장규모와 연계됨에 따라 경지규모가 클수록 많이 받는 구조. 기존에 이원화(농장직불, 지역직불)되있던 제도를 기초직불제(Basic Payment Scheme)로 통합. 직불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환경성(Greening) 강화(조건 미이행시 수령액의 30%까지 삭감). 실 경작농업인(active farmer) 기준을 지정하고 직불금 수령 상한선을 두고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삭감.
- 제 2축(Pillar 2)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은 2000년부터 시작. 농업과 임업의 경쟁력 향상, 농촌 환경의 보전과 민감한 영농활동의 유지, 농가 경제의 다각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소농 직불제(Small Farmers Direct Payment)

- 2014년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소농 직불제

---

8 마상진(2016). 「농업인력육성 정책으로서의 귀농정책」에서 발췌·수정

9 당초 EU 공동농업정책은 국제가격보다 높은 역내지지가격을 설정해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보장된 가격으로 무제한 공동체에서 사들이며,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판매할 때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농산물과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수입부과금을 매기는 구조였음(농민은 보장된 가격 하에서 생산하기만 하면 정부가 구매하고, 수입농산물은 싼 가격으로 역내 농산물과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 EU 내부적으로는 과잉농산물 구매와 수출보조금 지급은 1980년대 후반 농업정책 예산이 공동체 예산의 70%를 차지함으로써, 공동체 여타 산업분야와의 균형문제, 농업비중이 적은 국가들은 공동체 예산에 기여하는 부담에 비해 혜택을 적게 받는 국가 간 수혜 불균형 등을 야기시키면서 공동체내 재정위기와 함께 회원국 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 UR협상을 계기로 촉발되고 WTO·DDA협상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의 통합 추세 속에서 유럽공동체는 농업분야에 대한 국가개입 영역을 조정하고 농산물 생산과 가격에 대해서 는 시장에 더 많은 역할을 맡기는 쪽으로 옮겨감.

(Small Farmers Direct Payment)'. 소농직불제는 경작규모가 클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온 것으로 2015년부터 회원국들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농들을 위한 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음. 소농직불금은 규모가 작아 직불제에서 소외되거나 직불금을 받더라도 경작규모가 작아 수령액이 미미한 농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 소농 직불제는 연간 500~1,250 유로를 일괄금(lump-sum) 형식으로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회원국은 직불제 예산의 최대 10%를 소농 직불제에 배분할 수 있음. 소농 직불제 선택자는 환경성(Greening) 또는 기타 이행조건(cross-compliance) 이행의무가 면제됨.

- 현재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농가의 최소 규모는 회원국별로 상이 한데 영국, 덴마크는 5ha 이상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4ha 이상임. EU15 중에서는 이탈리아(0.5ha), 그리스(0.4ha), 포르투갈(0.3ha)이 최소규모를 1ha 이하. 신규회원국들은 루마니아 (0.3ha), 폴란드(0.5ha) 등 대부분 1ha 이하를 최소규모로 설정해 되도록 많은 소농들이 직불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농이 많은 회원국은 자국 농민의 보조금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도입을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상황에서 소농 직불금은 현 구조에서 직불금 수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농들을 위한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 EU에서는 1980년 중반부터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초기 정착자금(Installation Aid) 지원을 해왔음. 새로운 공동농업정책(2014~2020)에서는 18세~40세 미만 젊은 신규취농인(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최대 5년간·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제공. 신규 농업인들이 기존의 직접지불금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함.
- 본래 수령하게 될 직불금에 추가적으로 25%를 더한 금액을 5년간 수령할 수 있게 됨. 단, 경지면적에 직불제 요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제도를 고려해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청년직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면

적은 25~90ha로 제한.

- 국가별로 배정된 직접지불금 총액의 2%까지 지불할 수 있음. 회원국의 의무(강제)조항으로 결정됨[10].
- 토지나 동물과 같은 자산(assets)을 구입하는 데는 직접지불금을 사용할 수 없고, 농기계 현대화, 농산물의 가공, 농산품의 질 개선 등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직불금 수령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나 훈련 수준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따라서 차이가 남.

※ 조기은퇴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 젊은 농업인 또는 신규취농자들에게 은퇴 예정 농업인의 농장을 인수하거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 55세~66세 농장주가 청년 농업인(18세에서 50세 사이의 연령, 적절한 영농경험 및 영농활동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게 농장을 인수할시 은퇴하는 농업인에게는 평균적인 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장려금을 줌. 영농을 그만두는 농장주에게는 매년 18,000유로, 총 180,000유로까지 지원하며, 농장 근로자의 경우는 매년 4,000유로, 총 40,000유로까지 지원됨.
- 조기은퇴제도 실행으로 일부 경영주의 세대교체가 촉진되기는 했지만, 국가별 노후보장제도가 차이가 있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많은 지역에서 근본적인 인력구조 변화없이 오히려 농가의 조기은퇴만을 촉진시켰다는 평가[11]. 새로운 공동농업정책(2014~2020)에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음. 다만 유럽청년농업인협회(CEJA)에서 그 다음 공동농업정책에 고령농 은퇴촉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기획 중임.

---

10 청년농업인 직불액 규모는 ha당 66~100유로 정도로 추산되어, 평균 경지면적을 토대로 계산하면 943~1430 유로 정도(EU 농가당 평균 총 직불금 수령은 ha당 402.7유로 정도임. 농가당 경지면적이 2013년 기준 14.3ha이므로 평균 수령액은 5758.6 유로 정도됨).

11 노후 보장이 잘된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의 경우 은퇴 유도(30년 정도 농업인으로 연금을 부으면 노후가 보장되기에 65세 정도에 대부분 은퇴)가 잘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직불금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에 유리하기에 은퇴로 원활이 이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음.

○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지원
- 제 2축(Pillar 2)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의 일환으로 신규 창업 청년농을 위한 지원정책(Start-up Aid for Young Farmers)
- 영농 계획에 따라 7만 유로까지, 최대 5년간 융자 지원
- 영농 기반(physical assets)에 대한 투자 우대(higher support rate (20% 이상)
- 전문 교육 훈련 지원 (Knowledge transfer and information services)
- 경영 컨설팅 지원 (specific advice for farmers setting up for the first time)

□ 프랑스

○ 청년농업직불제(YFS)(pillar 1)
- 지불기준: 경영체 당 최대 34ha, 1ha당 최대 68 유로.
- 최대 연간 2,312 유로가 직접 지불금과는 별도로 지급

○ 청년 취농자 보조(DJA: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pillar2)
- 1973년부터 시작 → 1995년 확대 → 2009년 맞춤형 전문화 계획서(PPP) 추가
-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농업자(40세 미만)에게 기본배당(young farmer allowance) 지급: 8,000~17,300유로(산간지역은 16,500~35,900유로)
- 지급방식은 지역에 따라 달라 첫해 전액 지급하기도 하고, 첫해 80%, 마지막 해 20%를 지급하기도 함.

표 4-1. 프랑스 청년취농자 보조 지급 기준

		평지	조건불리	산악지
Principle Assets	최저	8,000	10,300	16,500
	최고	17,300	22,400	35,900
Secondary Assets	최저	4,000	5,150	8,250
	최고	8,000	11,200	17,950

*지리적 조건, 품목, 취농 형태(승계, 제3자 승계 등)와 승계조건에 따라 차이

자료: http://www.terresdeurope.net/en/young-farmer-s-allowance-france.asp

- 2016년 평균 20,000유로 지급 (전체 예산 20억 유로)
- 지급 후 3년간 기술적, 재정적 상황 모니터링
- 맞춤형 전문화 계획서(PPP: Personalised Professionalization Plan)

○ 청년 취농 저리 융자(MTS-JA)
- 이자액 상한 11,800~22,000유로
- 융자 상한액은 없지만 토지 구입을 위한 것은 20,000유로로 제한,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감독 하에 46,000유로 가능 (전체 융자액의 10%을 넘지는 못함)
- 상환기간 최장 15년, 이율 1%(조건 불리)~2.5%(평지)

○ 기타 지원
- 소득세, 농업자산 등기세, 재산세 5년간 감면
- 사회보장료 5년간 감액 (첫해 65%, 둘째해 55%, 셋째해 35%, 넷째해 25%, 마지막해 15%)
- SAFER를 통해 농지우선취득 지원
- 생산할당 및 보상금 수급권 우선 배분
- 기타: 농업보험료 15% 감면, 정부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PDE)작성비 50% 지원

프랑스의 신규 취농 지원 단계

1. 신규취농정보센터(PAI: Le Point Accueil Installation)[12]에서 상담 및 자기진단 서비스 제공
   - 신규취농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상담가가 자기진단조사지를 토대로 신규취농 희망자를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계획을 진행하도록 도움.

2. 맞춤형 전문화 계획(PPP: Le Plan de Professionnalisation Personnalise[13]) 작성
   - EU나 각국, 지방정부의 신규 취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PPP가 요구됨.
   - 개인의 기술수준,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작성
   - 21시간의 의무교육 + 신규취농자가 희망하는 훈련, 인턴십 (무료 교육: 주정부와 VIVEA 재단에서 훈련기관에 지급)

3. 경영발전계획(PDE: Le Plan d'Entreprise)[14] 작성
   - 향후 5년간 예비적 재정적 기술적 계획
   - 5년 시점에 최저 소득에 1~3배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PPP와 더불어 주정부가 승인

* DJA 및 융자 지원 조건
   - 18~39세
   - 프랑스나 EU 국적 또는 취농 이후 5년간 프랑스에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비회원국민
   - Agricultural Baccalaureate + 주정부에 승인된 PPP
   - 주정부 인정 ODP

* 의무이행사항
  - ODP에 따라 5년간 영농종사(지급 조건에 따라 1차 직업/ 2차 직업으로)
  - 장부 작성(5년)
  - 모든 농장시설은 환경보호 규정 준수(3년)
  - 보건, 위생, 동물복지 기준 충족(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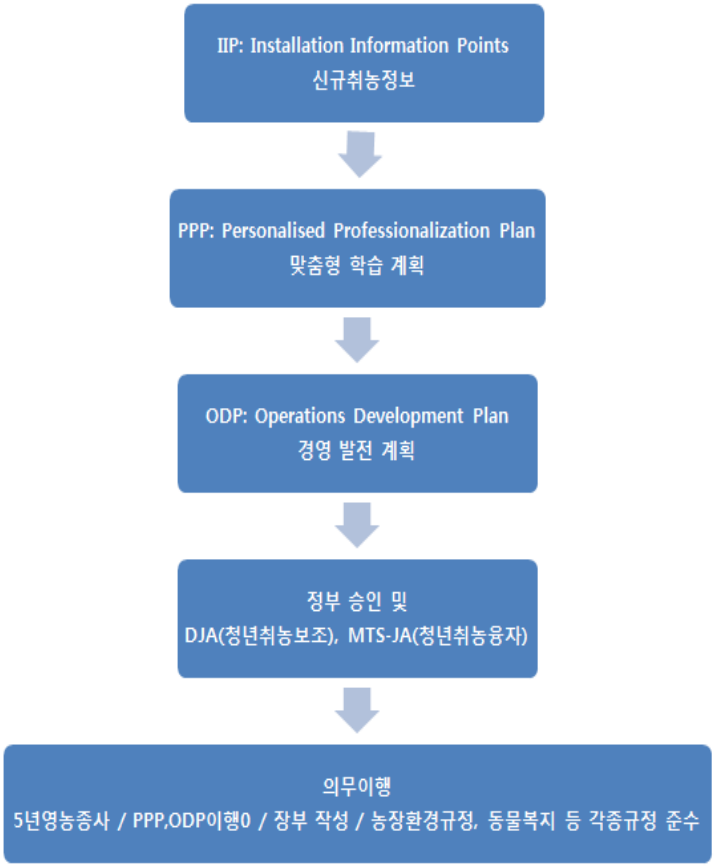

12 영문명 IIP: Installation Information Points
13 영문명 PPP: Personalised Professionalization Plan
14 영문명 ODP: Operations Development Plan

2. 일본

2.1. 취농 교육

□ 초중고 농업교육[15]

○ 초등학교 농업교육
- 고학년(4~6학년) 단계에서 「사회과」를 통해 농업관련 내용이 교육되어짐. 농업이 지역산업의 중심인 지역에서는(예: 후쿠시마현의 키타카타시)에서는 '농업과'를 개설하여 교육함.
- 교과외 시간의 농업관련 체험활동 (예: 어린이 Farm Net)

○ 중학교 농업교육
- 「기술가정」, 「사회」에서 농업관련 내용이 교육되어짐.
- 교과외 시간의 농업관련 체험활동

○ 고등학교 농업교육
- 전국의 307개(2013년 현재 전체 고교 수 4,981개) 농업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중 순수 농고는 131개 교 (최근 종합고등학교로 많은 학교들이 전환 추세)
- 농업관련 전문교과를 통해 농업의 기초·기본에 대한 학습을 함.
- 농업관련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농업관련 지식과 기술을 익힘
- 일부 "녹색학원(綠の學院)"이란 이름으로 지역의 농업대학교에서 체험입학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농가에서의 "농업취업체험"을 실시

15 마상진·최경환(2008).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에서 발췌

□ 도·부·현립 농업대학교

○ 설립

- 2차 세계대전이후 1948년 '농업개량조장법'이 마련되어 농업개량보급센터와 농업 대학교를 각 도도부현에 설치하였음. 각 도부현 농림수산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일본 전역 42개가 있음. 교토부의 경우 농업대학교의 전신은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95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시설임.
- 중앙정부 교육당국(문부과학성)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아니지만(일부 지역은 문부과학성의 단과대학 설립요건에 맞추어 정식 단과대학으로 농업대학을 설립한 곳도 있음), 도부현 내에서는 단과대 졸업으로 인정
- 교토부의 경우 농업대학교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1981년경부터임.

○ 목적

- 농업 대학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되었음. 첫째는 농업에 관한 전문기술을 지닌 전문가, 농업 보급원 등을 양성하는 것임. 둘째는 기존 농민의 농업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임.
- 최근 2000년에 과소화 고령화가 심각한 와중에 농업 대학교 본연의 기능인 실제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 경영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을 변경함. 농업대학교를 운영하는 실무진은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연구원, 농업보급원 등으로 3~4년 간격의 순환 보직으로 농업대학교를 담당함.

○ 교육

- 학년당 모집 인원은 약 20명이며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2년 동안 연수를 시행함.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풍부한 인간관계를 배움.
- 신청 자격은 학교 법인 법에서 규정하는 고등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의 졸업자, 이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자로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함.
- 교육시간: 2년간 3,000시간 교육(실습 60%)

○ 혜택

- 입학료는 5,650엔이며, 수업료는 연간 118,800엔. 교재비, 실습비, 도구비 등은 학생이 부담하며 2년간 약 40만 엔 정도. 졸업 후 5년 간 교토 부안에서 취농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수업료와 입학료를 반환
- 1인당 연간 투입 교육비 450만 엔 정도
- 교육기간 신규취농급부금(준비형 2년 수혜) 연간 150만 엔 혜택

○ 진로

- 100% 농관련 취업 (자영 85%, 법인 취업 15%, 농관련 취업 등)

그림 4-6. 일본 교토부립 농업대학교의 설립 목적, 조직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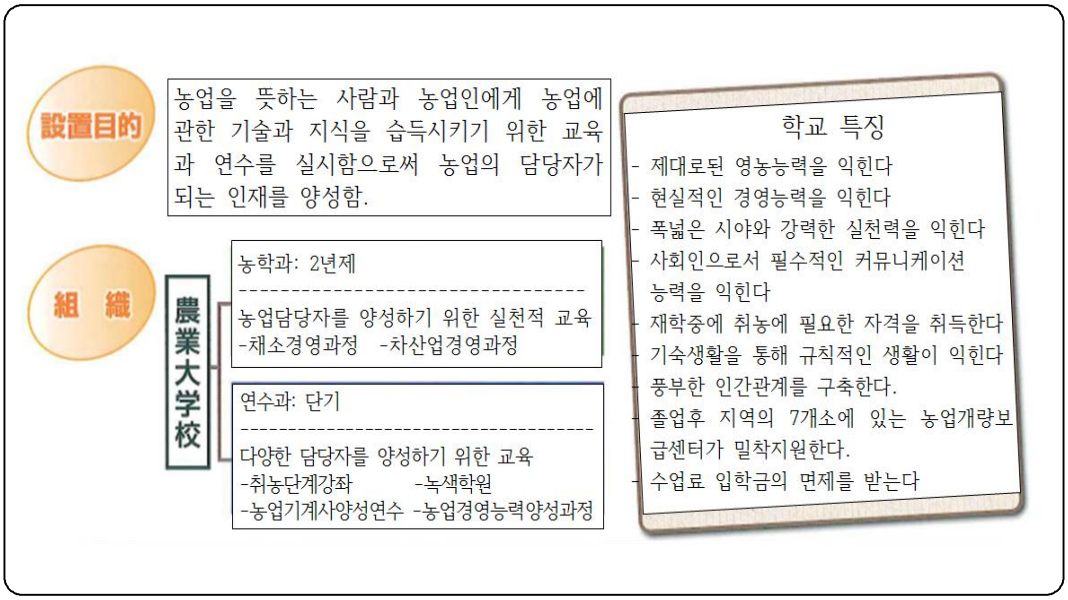

□ 교토부 실천형 학사

○ 설립 및 목적

- 교토부 교탄고시에는 약 30년 전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한 대규모의 국영개발농지가 있음. 탄고 국영개발농지의 규모는 동경 돔 100개 면적에 해당하는 512ha. 이 국영개발농지는 과소화 고령화로 경작포기지가 증가. 이 경작 포기지를 활용하여 신규 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13년에 「탄고 농업연구소」 안에 교토부와 교탄고시가 협력하여「탄고 농업 실천형 학사」를 설치함.
- 「탄고 농업 실천형 학사」에서는 국영 농지를 필드로 하여 각종 연수를 시행하여 농업 인재를 육성하고 있음. 약 300명의 농가와 농업 법인이 국영개발농지에서 야채, 차, 과수 등 대규모 농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

- 매년 전기・후기 각각 10명 정도의 연수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음. 연수 대상자는 개인 자격과 법인 자격으로 나누어져 있음. 개인 자격의 경우 일정 기술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규모 농업을 경영하고 자하는 대략 40세 미만의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탄고 지역에서 정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사람. 법인 자격의 경우 탄고 국영 개발 농지를 기초로 하여 대규모 농업 경영하고자 하는 농업 법인의 종업원.
- 운영 직원은 6명. 이 중 2명은 교토 부의 농업 관련 공무원(정직원) 으로 농업 기술 중 재배를 담당. 1명은 탄고 시의 공무원(정직원)으로 생활・농지 및 지역 조절 등 생활 측면을 지원. 실천형 학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 3명의 임시 직원을 모집함. 이 중 1명은 기술직으로 재배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기술직으로 기계를 담당. 이들 직원은 농업보급소 등에서 퇴직을 하거나 농업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풍부한 인재. 이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부 강좌는 4년제 대학 농업관련 학과의 교수, 교토부의 농업 관련 연구 기관의 연구원, 농업 보급원 등이 담당

- 연수생에 각각 10a의 농지를 제공. 제공하는 농지에 농업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농지의 토양 상태 등을 점검. 흙을 깊게 파고 엎고, 큰 돌을 골라내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양 환경을 정비하여 연수생에게 제공
- 연수는 취농 계획에 따라 연수를 시행하며 연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첫째, 농업 생산에서부터 가공, 농업 경영까지 종합적인 능력을 지닌 신규 농업인을 양성. 둘째, 농업 관련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 측면을 지원하는 직원을 두어 지역 정주에 필요한 빈집 확보 등을 지원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셋째, 연수 완료 후에도 연수용 농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취농할 수 있으며 연수 완료 후에도 농업 보급원 등을 통하여 지원. 넷째, 교토부립 농업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5년간 교토 부안에서 취농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수업료와 입학료를 반환.

표 4-2. 탄고 농업 실천형 학사의 연수 내용 특징

충실한 연구 내용	생활 측면 지원	연수 후의 지원	연수 경비 지원
• 전문 직원과 교토 부 기술 직원, 농지 법인 등이 지도 •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판매(6차 산업화)까지 실천 연수 • 농업 경영에 관한 강좌 • 연수 농자·기계는 학사에서 준비	• 쿄탄고 시내 주택 소개, 2013년도 숙사 정비 • 지역에 착실히 정착할수 있도록 전문 직원이 지역의 여러 사람과의 교류를 지원 • 연수 이외 생활환경 등에 관한 상담·질문에 대응	• 연수용 농지(1~2ha/인)를 그대로 사용하여 취농 가능 • 연수 완료 후에도 계속하여 교토 부 기술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음	• 청년 취농 교부금 활용 가능(조건부) • 학사의 연수비는 교토 부와 시가 지원 ※단 교과서 비용, 보험료, 종묘, 비료 비용 등의 기재비, 생활비 등은 개인 부담

출처: 일본 丹後農業実践型学舎(2015). 내부자료.

- 재배 작물 중 크기가 작은 수박, 고구마, 무 등을 재배. 이 작물은 오사카의 농산물 도매 시장, 지역의 제과 회사, 지역의 농업 법인 등의 요청으로 계약 재배를 시행. 이처럼 안정 적인 판매처를 먼저 확보하여 연수생이 농산물을 재배하여 안정적인 취농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오이타현 인큐베이션 팜

○ 오이타현에서는 지자체와 지역 농협 등이 연계하여 농림업공사를 통해 신규 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션 팜을 운영함. 인큐베이션 팜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취농급부금'과 연동해 운영하는 2년 합숙 방식의 농업 연수 프로그램임. 일본 오이타현에는 인큐베이션 팜 8곳이 있음. 분고오노시의 경우 총 17㏊의 부지에 재배사・관리동・숙소가 마련돼 있으며, 예비 귀농인들은 2년간 합숙을 통해 영농기술과 농촌생활을 배우게 됨. 비용은 정부에서 2분의 1, 현에서 3분의 1을 지원하고 나머지 6분의 1은 시 또는 지역농협에서 부담하며 농림업공사 형태로 운영됨.

○ 분고오노시 인큐베이션 팜은 55세 미만의 부부 또는 형제자매가 2인1조로 참여할 수 있음. 1기에 3~4조씩 연수를 실시하며, 현재까지 4기수 13조 26명의 연수생이 배출됐음. 재배사는 2인1조에 1년차 때는 7.5a(약 227평), 2년차 때는 15a(약 454평)를 지급함. 영농을 통해 얻어진 수익은 농장 운영비로 충당되는데, 특히 2년차에는 영농에서 얻은 수익의 전액을 연수생이 갖도록 해 경영학습 효과를 높임.

그림 4-7. 오이타현 인큐베이션 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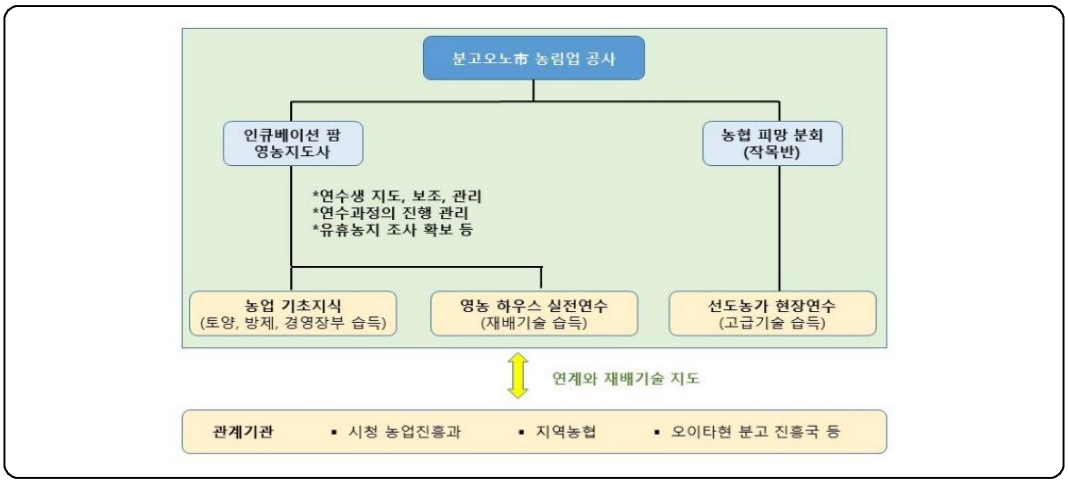

자료: 농민신문(2016. 5. 27).「채상헌교수의 일본 귀농이야기」.

2.2. 취농 지원

○ 단계별 신규 농업 인재 육성 시스템 [교토부 사례]

- 구체적으로 신규 취농은「농업 일자리 카페 사업」,「취농 서포터 사업」,「후계자 양성 실천 농장 사업」등으로 추진. 이러한 사업이 서로 관련 없이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상담」,「농업 기술, 경영 지식 습득」,「실재 농업 경영 개시」란 일련의 흐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 농업 일자리 카페 사업은 접수・상담을 담당하며, 취농 서포터 사업과 후계자 양성 실천 농장 사업은 농업 기술, 경영 지식 습득과 실재 농업 경영 시작을 지원.

○ 농업관련 지원조직 통합 및 종합 서비스 지원[교토부 농업종합지원센터 사례]

그림 4-8. 교토부 농업 종합 지원 센터의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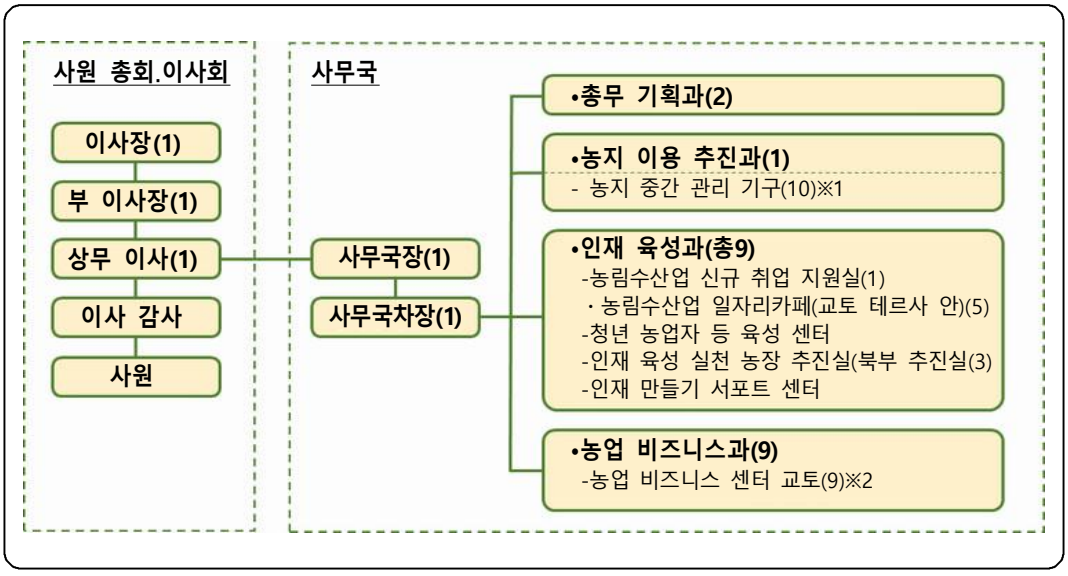

자료: 일본 京都府(2015). 내부자료.

- 조직변천
  · 1970년:「농지법」 일부 개정으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재단법인 교토 부 농업개발공사」 설립(교토 부 지사 인가)
  · 1995년:「청소년 취농 촉진을 위한 지금 대부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근거, 교토 부 지사가「청년농업자 등 육성 센터」로 지정
  · 2009년:「농업 비즈니스 센터 교토」설치
  · 2010년:「농업 인재 만들기 서포트 센터」설치
  · 2010년 6월:「농림수산업 일자리 카페」가 교토 부 농업회의에서 지원센터로 이관
  · 2011년 7월: 40년에 걸친 명칭을「사단 법인 교토 부 농업 종합센터」(가칭: 교토 에그리21)로 조직 명칭 변경
  · 2012년 4월:「공익재단법인 교토 부 농업 종합 지원센터」(교토 에그리21)로 이행.
  · 2014년 6월: 교토 부 지사가「농지 중간 관리 기구」로 지정.
- 조직구성: 지원센터는 크게「사원 총회・이사회」,「사무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무국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은 총무 ①총무 기획과, ②농지 이용 추진과, ③인재 육성과, ④농업 비즈니스과로 구성.
  · 농지 이용 추진과에는「농지 중간 관리 기구」가 있음.
  · 인재 육성과에는「농림수산업 신규 취업 지원실」,「농림수산업 일자리 카페」,「청년 농업자 등 육성 센터」,「인재 육성 실천 농장 추진실」,「인재 만들기 서포트 센터」가 있음.
  · 농업 비즈니스과에는「농업 비즈니스 센터 교토」가 있음. 농업 비즈니스과에서 6차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9명이며 이중 4명은 사무 업무를 보는 정직원(이중 1명은 지역 코디네이터 겸임)이며, 나머지 5명은 농업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임. 코디네이터는 치프 코디네이터가 1명 (전체 총괄), 서브 코디네이터가 1명(기업 진출 담당), 지역 코디네이터 4명(이중 1명은 정직원이 겸임)(6차 산업화 담당)으로 구성. 코디네이터는 6차 산업화 종합화 추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림수산성의 교부금으로 고용.

- 주요 사업 내용 개요

· 교토 부 농업 종합 지원 센터는 위의 조직의 구성에 대응하여 ①신규 취농,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②농지 보유 합리에 관한 사업, ③농업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표 4-3. 농업 종합 지원 센터의 사업 개요

(1)신규 취농, 취업을 지원 하는 사업

신규 취농(취업)자 등을 확보・육성하고자, 연구 자금 대부 및 연수 농장 등을 설치하여, 농업 인재 만들기를 지원을 추진한다.

- 농림수산업 일자리 카페 사업
- 후계자 양성 실천 농장 정비 지원 사업
- 취농 지원 자금 교부 사업
- 무료 취업 소개 사업 (직업 안정법 제33조 허가)
- 「교토 농림수산업」 미래를 담당하는 인재 만들기 지원 사업(신규 취농・취업자 정착 촉진 사업)
- 젊은 농업자 경영 능력 향상 지원 사업

(2)농지 보유 합리화에 관한 사업

농업 경영 강화와 농지 보유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농지 매수하여 농지를 빌려주고, 경작 규모를 확대하도록 농지를 농가에 공급을 추진한다.

- 농지 보유화 합리 사업
- 인재 활용 농지 뱅크 설치 사업

(3)농업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사업

농업 경영의 새로운 추진을 위하여 농상공 연계와 6차 산업 등 농업 비즈니스를 지원.

- 종합 상담 창구
- 농상공 연계 등으로 농업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한 발굴 활동
- 농업 비즈니스 플랜을 구현하기위한 「농업 비즈니스 응원단」 파견
- 비즈니스 정보 제공
- 농산물의 수출 지원 활동
- 농업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활동

출처: 일본 京都府(2013). 내부자료.

그림 4-9. 교토부의 농업 비즈니스 지원 조직 및 사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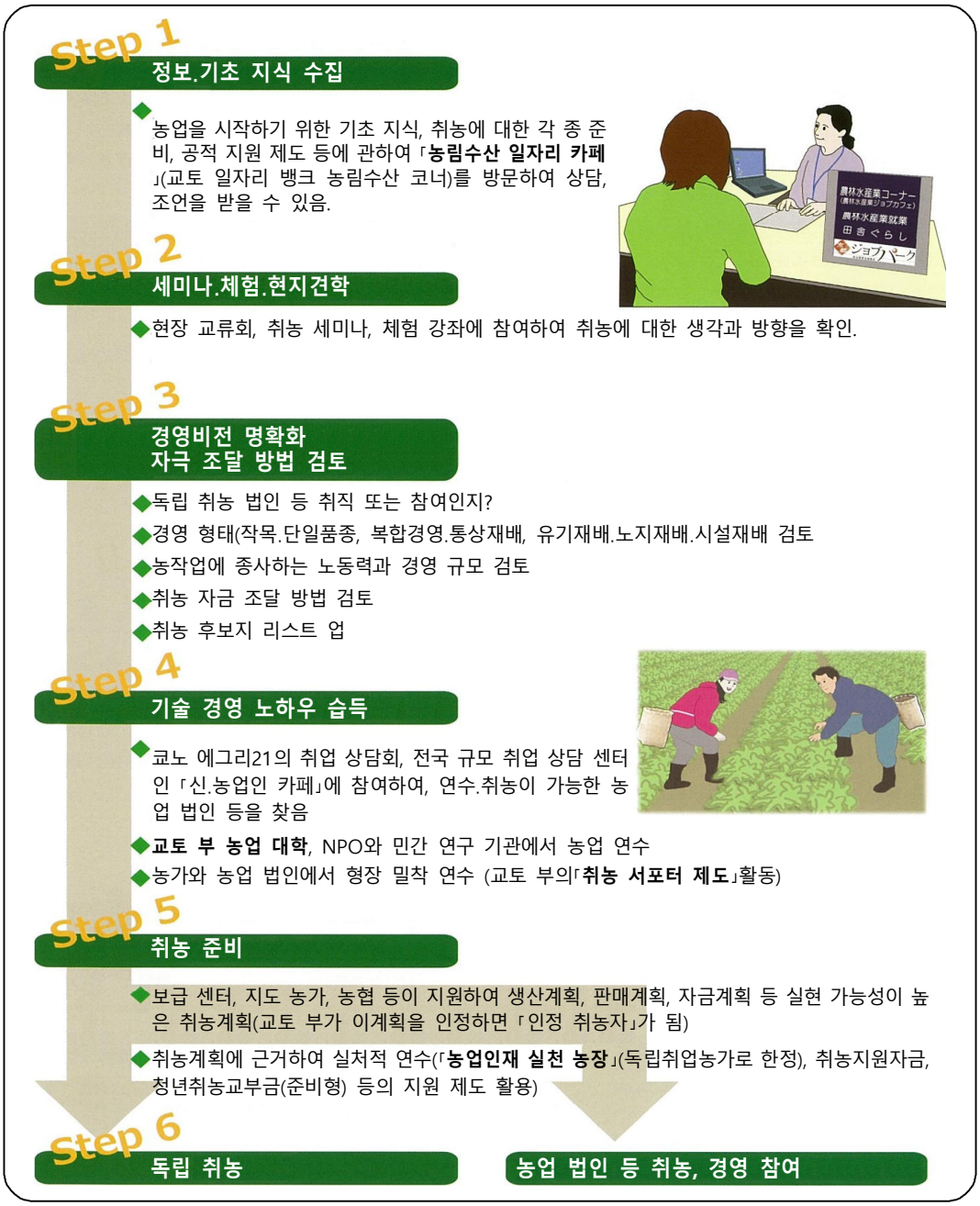

출처: 일본 京都府(2015). 내부자료.

○ 신규취농·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新規就農·経営継承総合支援事業)

- 농업 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40세 미만 신규 유입자를 두 배로 증대시키기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12년 4월부터 시행
- 목표: 청년 신규 취농 자를 매년 2만명 정착시켜 10년 후 40대 이하의 농업인을 약 40만 명으로 확대
- 청년취농급부금, 농의고용 사업, 농업자육성 지원 사업 등을 실시

○ 청년취농급부금[16]

- 45세 미만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 동안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함.
- 취농 예정인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대학 등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농가, 농업법인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을 경우(준비형)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함[17].
-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독립영농을 실시하는 농가에게 연간 150만 엔을 최장 5년간 지원함(경영개시형). 부모로부터 경영을 승계하거나 부모영농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함. 농지를 친척으로부터 임대받아도 지원대상이 되나 5년 이내에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함.
- 지급액은 연간 150만 엔. 부부가 같이 취농할 경우에는 부부를 합하여 1.5인분의 지원금을 받음. 급여를 받은 기간의 1.5배(최소 2년) 기간 동안 독립・자영농으로 농업에 종사해야 함. 연 소득이 25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청년취농급부금을 받기위해서는 준비형은 '연수계획'(연수기관 또는 선진

16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으로 2017년 4월 5일자로 사업명칭 변경 (이하 자료는 일본 農林水産省 (2017) 홈페이지(www.maff.go.jp) 참조)

17 교부 대상자의 특례: 국내에서 2 년의 연수뿐만 아니라 미래 영농 비전과 관련성이 인정 받아 해외 연수를 할 경우 교부 기간을 1년 연장

농가나 법인에 1년 1,200시간 이상 연수)을 도도부현 또는 청년농업인 육성센터 등에 제출해야하고, 경영개시형은 '청년 등의 취농 계획'을 시정촌에 제출하여 인정받아야함.

- 취농에 필요한 기계 시설의 취득 등을 위한 자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 실시 (2014년도부터 제도 신규 도입(청년 등 취업영농자금))

취농상황 보고의무

○ 준비형의 경우 연수종료후의 보고

가. 취농 상황 보고: 준비형수급자는, 연수종료 이후 5년 간, 매년 7월 말 및 1월 말까지 그 직전의 6개월 간의 취농 상황 보고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함. 또한, 준비형의 수급 종료 이후, 계속해서 수급대상이 되는 연수에 준하는 연수(이하 「계속연수」라고 한다.) 를 행한 경우는, 계속연수계획을 작성해서, 급부주체에 신청하고 동시에, 계속연수개시이후 1개월 내에 계속연수신청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계속연수는 준비형의 수급 종료 이후 1개월 내에 개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한다. 계속연수를 행하는 경우 연수종료 이후 1개월 내는 계속연수 종료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또는, 계속연수의 기간 중에 급부주체에게 연수의 실시상황 보고를 행해야 한다.

나. 주소 등 변경신고: 준비형수급자는, 급부기간 내 및 급부기간 종료 후 5년 간 성명, 거주지 또는 전화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주소등변경신고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다. 취농 보고: 준비형수급자는, 연수종료 후, 독립ㆍ자영취농, 고용취농 또는 친족 취농한 경우에, 취농 후 1개월 이내에 취농 보고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 경영개시형의 취농보고

가. 취농 상황 보고: 개시형수급자는, 급부기간 내 및 급부기간 종료 후 3년 간 매년 7월 말 및 1월 말까지 그 직전의 6개월 간의 취농 상황 보고서를 급부 주체에 제출한다.

나. 주소 등 변경 보고: 개시형수급자는, 급부 기 간내 및 급부기간 종료 후 3년 간 성명, 거주지 또는 전화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주소 등 변경 신고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급부금의 반환

(1) 준비형의 경우

① 적절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부 주체가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필요한 기능을 습득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연수 종료 후 1 년 이내에 원칙 45 세 미만으로 독립 ・자영 취농 또는 고용 취농하지 않은 경우

③ 교부 기간의 1.5 배 (최소 2 년)의 기간 독립・자영 취농 또는 고용 취농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2) 부모와 취농자의 경우: 취농 후 5년 이내에 경영 상속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업 법인의 동업자가 되지 않은 경우

(3) 독립 ・자영 취농자: 취농 후 5년 이내에 인정 농업자 또는 인증신규 취농자 되지 않은 경우

※ 취농상황 현지확인 등에 의해 적절한 농업경영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급부주체가 판단할 경우예 : 청년 등 취농 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경영자산을 축소한 경우, 경작해야 할 농지를 유휴화한 경우, 농작물을 적절히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농업 생산 등에 종사한 일수가 일정 (연간150일 및 연간1,200시간) 미만인 경우, 급부주체로부터 개선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대처를 행하지 않은 경우 등) 급부를 정지

○ 신규 취농 계획 인증 제도

- 신규 취농자를 대폭 늘려 지역 농업의 담당자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취농 단계에서 농업 경영의 개선・발전 단계까지 일관된 지원이 중요. 2014년도부터 청년 등 취농 계획 제도를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자리 매김. 시정촌이 청년 등 취농 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시정촌의 인정을 받은 공인 신규 취농 자에게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한 혜택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

- 중앙정부의 취농 계획과 도도부현의 취농 촉진 방침에 맞게 신규 취농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시정촌은 신청 된 청년 등 취농 계획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인증을 실시.
  ① 계획이 시정촌 기본 구상에 비추어 적절한 지
  ② 계획이 달성 될 전망이 확실하다 등
- 인증 대상자: 지역 내에서 취농하려고 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취농하거나 농업법인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농업경영을 시작하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정 농업자는 제외)
  1. 청년 (18세 이상 45세 미만)
  2. 특정 지식과 기능을 가진 중・장년층(65세 미만)
  3. 상기자가 임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법인

그림 4-10. 청년 등 취농 계획 인정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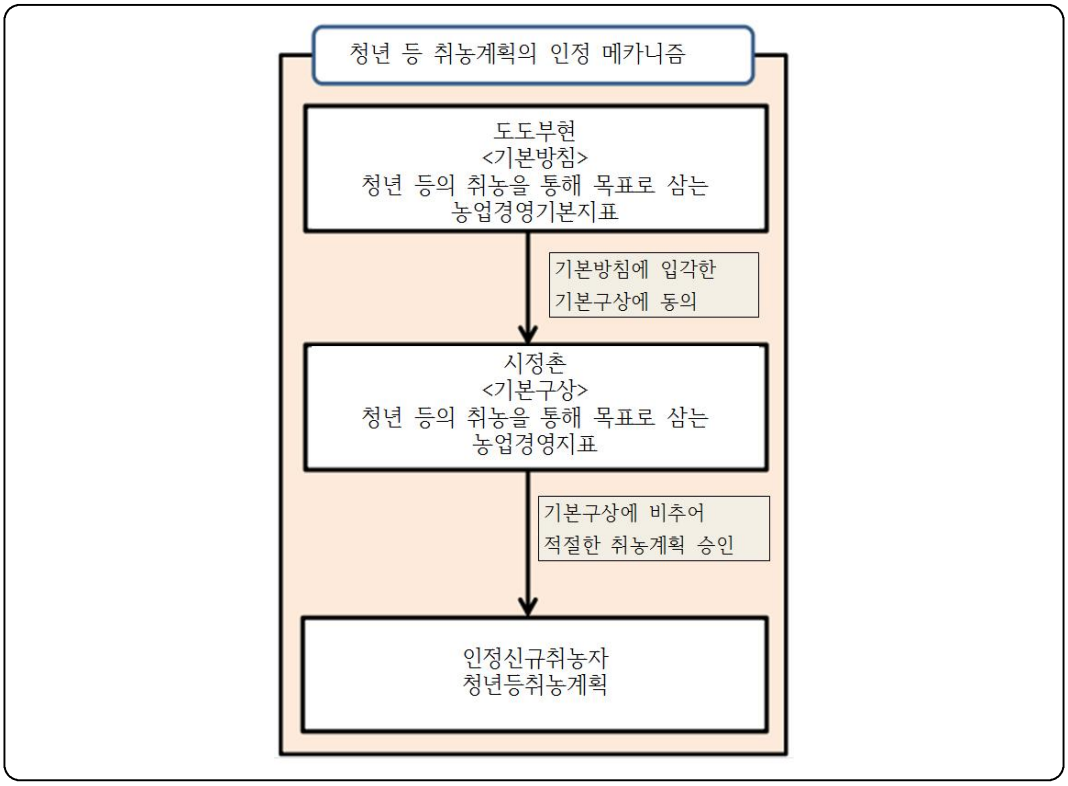

- 취농 계획의 작성(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1980 년 법률 제 65 호) 제 14 조의 4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청년 등 취농 계획의 승인을 신청): 장래의 영농 목표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수, 어떠한 자금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함.

그림 4-11. 청년 등 취농 계획 인정 신청서(양식)

青年等就農計画認定申請書

平成○○年　○月　○日

○○市町村長　殿

申請者住所　○県○市○丁目○－○
氏名＜名称・代表者＞ 農林　太郎　(印)
昭和○○年　○月　○日生(　○○歳)
＜法人設立年月日　　年　　月　　日設立＞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昭和55年法律第65号）第14条の４第１項の規定に基づき、次の青年等就農計画の認定を申請します。

青年等就農計画					
就農地	○○市		農業経営開始日	平成○年○月○日	
就農形態（該当する形態にレ印）	☑新たに農業経営を開始 □親（三親等以内の親族を含む。以下同じ。）の農業経営とは別に新たな部門を開始 □親の農業経営を継承 （□全体、□一部 継承する経営での従事期間　　年　　か月）				
目標とする営農類型（備考の営農類型の中から選択）	露地野菜				
将来の農業経営の構想	（例）農業技術の向上、機械化、規模拡大等によりタマネギ、カンショ・・・の複合経営で地域の認定農業者の８割程度の所得水準を目指す。 （年間農業所得及び年間労働時間の現状及び目標）				
		現状		目標（平成○年）	
	年間農業所得	2,000千円		4,000千円	
	年間労働時間	2,000時間		1,800時間	
農業経営の規模に関	作目・部門名	現状		目標（平成○年）	
		作付面積 飼養頭数	生産量	作付面積 飼養頭数	生産量
	タマネギ	40a	15,600kg	80a	31,200kg
	カンショ	0a	0kg	20a	3,800kg
	・	・	・	・	・
	・	・	・	・	・
	・	・	・	・	・
	経営面積合計	○○	○○	○○	○○

- '취농인증자'의 이점(혜택):
  · 청년 등 취농 자금 (무이자 대출)
  ·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 사업 (경영 개시형)
  · 담당자 확보·경영 강화 지원 사업,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융자 주체형)
  · 경영 소득 안정 대책
  · 인증 신규 취농 자에게 농지 집적 촉진
  · 농업자 연금 보험료의 국고 보조 (청색 신고자[18]에 한함)

○ 농업법인취업지원(농의 고용사업)
- 일본의 법인을 통한 신규 취농 정책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은 신규 취농 희망자들이 농업법인에 우선 취업해서 상당기간 영농기술을 배운 후, 회사 인근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영농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영농기술을 배우는 동안 급여를 받아 농촌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 효과가 높다는 평가임.
- 고용하는 법인에게 1인당 최장 2년간 연간 최대 120만 엔을 교부하고 취업자(45세 미만이면서 취농을 전제로 선진농가나 법인에서 연수하는 이)는 2년간 연간 120만 엔을 지급함(최대 4년간 가능, 3년 이후는 최대 60만엔 지급).

○ 농업자 육성지원 사업
- 미래 지역농업 의 리더가 될 인재층을 두껍게 하고, 농업계를 견인해야하는 농업경영자를 육성하기 위해 고도의 경영 능력, 지역 리더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고급 농업 경영자 육성 교육 기관 등을 지원
- 취농 희망자 등에 대한 전국적인 구인 정보 등 의 제공이나 취농 상담, 취업 전의 단기 취업 체험(인턴쉽) 지원

---

18 복식부기의 방법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고 정확한 소득과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사람

○ 경영단체육성 지원 사업

- 농기계나 시설 등의 구입비에 대한 보조 실시

○ 농업경영승계 사업

- 후계자 없는 우량 농업경영을 신규 취농 희망자에게 계승하는 대응 지원

표 4-4. 일본의 신규 취농에 대한 종합적 서포트(일본 농림수산성)

<table>
<tr><th rowspan="2"></th><th rowspan="2">취농준비
(고교 졸업 후를 지원)</th><th colspan="2">취농개시</th><th rowspan="2">경영확립</th></tr>
<tr><th>법인 정직원으로 취농</th><th>독립·자영 취농</th></tr>
<tr><td>소득 확보</td><td>청년취농지원(급부)금
(준비형)
현 농업대학교나 선진농가·선진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연구기간 중에 대해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td><td rowspan="2">법인측에 대해
농의 고용사업
•법인에 취직한 청년에 대한 연수경비로 연간 최대 12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
•고용한 신규취농자의 새로운 법인 설립·독립을 위한 연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 엔을 최대 4년간 지원(3년째 이후는 최대 60만 엔)</td><td rowspan="2">청년취농지원(급부)금
사람·농지플랜에 위치되어 있는 인정신규취농자 등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엔을 최대 5년간 지원</td><td rowspan="2">농업법인 등의 차세대경영자 육성
(농의 고용사업)
법인 등의 직원을 차세대 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파견연수 경비로 월 최대 1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

톱 프로를 지향하는 경영자육성을 위한 지원</td></tr>
<tr><td>기술·경영력 습득</td><td>농업경영자육성교육의 레벨업을 위한 지원(조성)
취농희망자나 경영발전을 목표로 하는 농업자 등에게 고도의 농업경영자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에 대해 지원</td></tr>
<tr><td rowspan="2">기계·시설의 도입</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청년등 취농 자금
(무이자)</td><td>슈퍼 L 자금</td></tr>
<tr><td colspan="2">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td></tr>
<tr><td>농지 확보, 취농 상담 등</td><td>취농하고자 하는 시정촌과 순조로이 상담하고, 사람·농지플랜에 적절히 위치토록 지원받음.
•농지이용의 계획을 만듦.
•법인정직원으로 취농 내정을 받음 등과 같은 사전 준비를 지원</td><td></td><td>농지 중간관리기구에 의한 지원
지역연계추진원에 의한 지도</td><td></td></tr>
</table>

그림 4-12. 일본의 농업경영체 단계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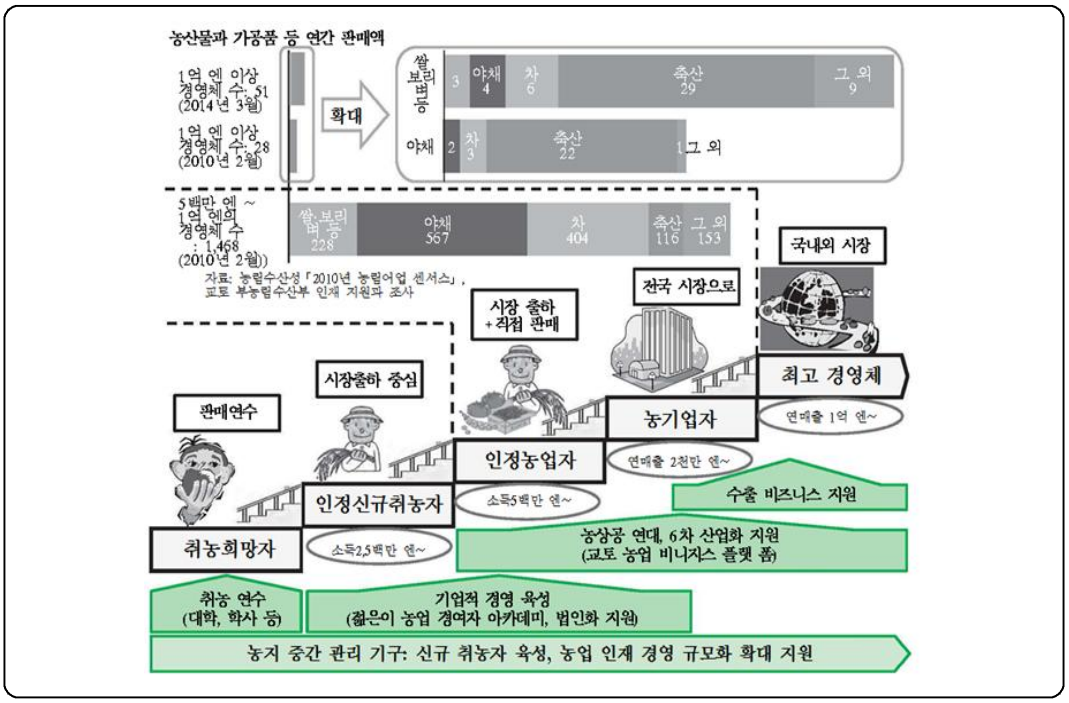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2015). 내부자료.

3. 시사점

○ 농업계 학교 교육에서부터 현장과 밀접히 연결된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의 결과를 국가 및 지역이 인정하는 자격제 운영

○ 자격이 인정된 (청년) 농업 인력에 대한 파격적 지원
- 유럽: 청년농업인 직불제
- 프랑스: 청년농업직불제 + 청년농업보조 + 기타
- 일본: 신규취농급부금

○ 창업 준비·정착 단계별 (학생 (예비) 단계 - 취농 단계 - 정착 단계) 체계적 지원

제 5 장

청년 영농창업 관련 국내 우수사례

1. 제주 친환경 농업학교[19]

○ 농고 교사출신의 법인대표는 1991년부터 제주에서 감귤, 단감, 매실 농사를 시작해, 1998년 도내 처음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음. 품질인증과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영농 현장에서 경험했던 채소・과일류 재배방법을 회원과 새로운 인증자에게 2001년부터 가르치기 시작(1991년 제주금산자연농원 → 2003년 제주보타리친환경연구회 → 2006년 제주친환경농업체험교육센터 → 2008년 제주친환경농업학교)

○ 교육 수강자는 연평균 5,000명 정도로 지금까지 10만 명 가까이 이곳을 거쳐 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인근 지역 내 고령농의 농장을 인계하도록 주선하고, 이후 정착과정 상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음(지금까지 약 40여명을 교육 이중 16명이 인근에 정착). 이후 해당 농가와의 공동 생산을 통한 전체 생산을 규모화하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접목하여 전체 법인의 사업을 다각화하였음.

---

19 마상진 외(2016).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에서 발췌

○ 현재 졸업생 중심으로 제주 보타리 지역 12만평에 금산자연농원-JAS(유기농산물 채소 과수), 보타리영농팜(㈜채소류 건조, 저염 양배추 김치 제조), 이건조(㈜상온진공 건조시스템, 효소발효기계), 농부와 스승(귀농, 친환경인증농가모임), 푸른제주영농조합(친환경 채소류 경매,친환경 학교 급식), 보타리에너지(㈜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업, 태양광연구소) 등이 상호 연계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됨(미디어제주 2013).

2. 괴산 흙사랑 영농조합

○ 2001년부터 괴산 감물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 회원농가 60호, 2014년 매출액 18억 원으로 감자, 옥수수, 채소, 잡곡, 콩나물 등 약 50여종 재배함.

○ 흙사랑은 실무 역량이 필요한 실무자를 귀농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옴. 귀농자가 법인 실무자로 2~3년간 일하면서 지역을 파악하고, 이후 지역에 농민으로 정착하는 방안으로 추진.

○ 지난 10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귀농한 가구는 약 15호. 이들은 현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법인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마을 모임의 주요 간부로 활동

3. 하서 미래영농조합

○ 2000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 2004년 당 법인을 설립하여 83농가 150명으로 150ha의 친환경고품질단지를 조성, “청호뜰맑은쌀” 브랜드로 연간 600

톤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였음

- 2003년부터 과천 어린이집 연합회(10여개 공동유아협동조합)와 직거래를 추진 현장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 2006년부터 익산솜리생협과 하서면 삼현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1,000여명의 도시인들이 친환경고품질단지를 견학, 친환경 쌍 생산에서 가공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친환경 농산물 시식회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농업체험을 통해 믿고 살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마련하여 판로 확대 및 개척
- 2015년 현재 35농가 유기 63ha, 무농약 11ha, 총 74ha의 친환경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

○ 귀농인큐베이터

-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귀농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단체에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이용 영농기법을 지도받고, 품앗이, 일손 돕기 등 현지 농업인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 현재 10명의 귀농인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모두 안정적으로 정착함.

○ 젊은 농부의 확대와 공동체 구성 활동

-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젊은농부 소모임을 구성하여 회원 내 은퇴농의 농지임차권 우선지급, 농지간 경작지 우선변경 제도를 적용하여 젊은 세대의 이탈을 막고 고품질 친환경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관리체계가 구축된 당 법인에 소속된 품목별 친환경 작목반을 구성하여, 친환경 생산품 생산에 전념하고 고품질의 다양한 품목을 생산토록 하여 부안군친환경학교급식센터에 생산품 출하,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토록 함 (마을 공동체 운영을 위한 품목별 공동생산단지를 마련하고 공동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도농교류

-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전주, 익산, 군산 아이쿱 생협 회원들과 함께하는 도농교류 체험을 현재 1년 2회 300여명이 봄맞이와 가을걷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음

전북 디딤돌청년협업농장

○ 체계적인 영농실습을 통해 귀농, 창농을 희망하는 인력을 선발하여 농촌정착 지원(5명)

- 영농실습(벼, 양파, 마늘, 쌈채소, 하우스농사 등)
- 영농활동비 80만원, 9개월간
- 법인(운영주체)과 협의하여 영농실습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을 공동배분, 4대 보험료(개인부담)는 지원하지 않으며, 상해보험 등은 법인과 협의하여 가입, 2017.12월까지만 지원
- 사전·심화 교육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개인역량개발 지원
- 활동 후에는 전라북도 내에서 귀농, 창농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자료: 전라북도. (2017).「전라북도 디딤돌청년협업농장 참여인력」선발공고.

4. 농협 축사은행 시범사업[20]

○ 축사은행 개념

- 고령화 등으로 자신이 직접 경영하기 어려운 축사를 조합에서 매입, 필요시 시설 개선
- 자기자본이 부족한 신규 축산인에게 임대 운영(임대기간 만료 시 인수 원

20 농협중앙회(2017). 내부자료

칙) 함으로써 신규 축산인의 축산업 진입 지원

○ 목적

- 자본력이 부족한 젊은 축산인의 신규 축산업 진입을 통한 미래 축산업 생산 기반 확충
- 조합의 축사은행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유도

○ 운영방향

- 임대(기간, 임대료), 매각 방식 등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합이 농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자율적 결정
- 임대료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 소요비용으로 산정 (임대수입을 통한 수익사업이 아님을 유념)

○ 자금 지원

그림 5-1. 축사은행 자금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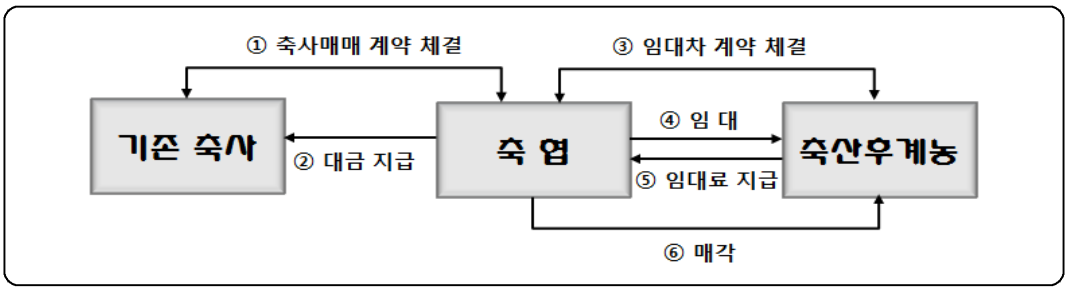

- 재원 : 유통지원자금, 무이자
- 지원액 : 대상조합 시설투자(토지+축사) 해당액 이내
- 지원기간 : 1년간 (사업성과, 지원 필요성 등 검토하여 최대 3년까지 재지원 추진)

○ 2016년 처음 시행: 축사은행 사업은 남원축협 한우 300두, 도드람양돈농협 모돈 200두 규모

5. 고흥 청년 창업농장[21]

○ 추진배경 및 목적

- 청년층(20~40세)의 농산업 취업 기피로 인한 후계 농업인력 부족 심화
- 농업 창업 초기 농지・농업시설물 구입 등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해소
-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신규 농업인 육성 필요
- 방치된 농업시설물을 활용한 청년 영농창업 유도

○ 사업내용

- 사 업 량 : 활용 가능한 시설물(하우스) 2개소(1,320~1,980㎡평 규모)
- 사 업 비 : 50,000천원(개소당 25,000천원 이내/시설물 개보수, 임대료)
  ※ 사업비(개보수)은 농업시설물(하우스)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영농추진 가능 하우스로 개보수
  ※ 시설보수 : 내부시설(철재)보강, 비닐교체 등
- 신청자격 : 만 40세 미만 중 다음 조건을 갖춘 자
  · 농대・농고(산업고) 졸업생 및 휴학생 중 관내 거주자
  · 경제적 여건 미흡으로 자력 창업이 어려운 저 소득층 자녀
  · 신규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 및 청년 귀농인
  ※ 복합영농 창업을 위한 그룹(2명)구성 신청자, 가족(부부)단위 신청자 가점 부여

○ 주체별 역할

- 농업기술센터: 활용 가능한 시설물(하우스) 확보 및 개보수 임대, 영농교육, 연계사업 추진, 사업종료 후 농장창업 지원, 행정지원(현장 영농기술 지원, 컨설팅) 및 사후관리
- 농가(시설물 소유자), 청년창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목적사업 이행, 영농

21 고흥군(2017). 2017년『청년 창업농장』육성사업 추진계획

창업 준비, 생산, 홍보, 판매활동 등 정보공유, 시설물소유자(작목반) 선도농가 지정 및 멘토·멘티제 운영

○ 특징

- 지자체 주도: 농촌 고령화로 방치된 유휴 하우스를 지자체에서 임차(5년간, 임차료 3백여만 원 지급) + 시설보수(500평당 2천5백여만 원) 청년 귀농자에게 임대(2~3년)
  · 계약주체 : 고흥군 ↔ 시설물 소유농가 ↔ 청년창업자
  · 임대기간 : 2년 (재배 작기를 감안한 임대기간 조정)
  · 조건 : 사업 종료(2년) 후 영농창업 의무이행
  · 임대료 : 1년 무상 (2년째부터 임대료, 시설물 수리비 등 제반 경비 자부담)
  · 임대 기간 중 시설물의 선량한 사용 및 관리 의무 부여
- 기존사업의 활용
  · 사업기간: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 연계
  · 사업 완료후: 지자체 사업 (농어촌진흥기금, 고흥군 소득지원기금) + 귀농인 영농창업자금 or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 농지은행
- 지원 내용
  · 오이, 딸기 등 시설 고소득 작목 위주
  · 우선 2년간 정착자에게 시설 지원 + 추가 1년 가능
  · 1년차 임차료는 지자체 지원, 2년차부터 정착자가 지불

○ 2016년 청년창업 지원 사업 성과분석

- 생산(매출)현황(2017. 1. 31 기준)

표 5-1. 고흥 청년창업농장 사례

구분	오이재배(한○○)	딸기재배(신○○)
시 설 규 모	시설하우스 550평	시설하우스 500평
첫 수 확	’16. 11. 20일	’11. 30
생 산 량	50개/623박스	1670kg(2kg/825박스)
출 하 처	고흥군유통(공선출하)	도매시장(광주,순천)
매 출 액	18,500천원	13,600천원
총매출(예상)	52,000천원(순소득 30,000)	35,000천원(순소득 21,000)
향 후 계 획	• 오 이 : 1~7월/ 1,720박스 수확예정 • 딸 기 : 1~6월/ 2,500kg(1,250박스) 수확예정	

○ 향후 계획

- 시설물 확보 계획 : 매년 2개소 총 8개소
- 청년 창업자 육성 : 2019년까지 16명(시설물 1개소당 2명 창업)

6. 강원도 귀농인 월급제

○ 귀농인 월급제는 강원도가 20세 이상 45세 이하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강원도 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들을 2015년부터 지원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귀농・영농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2년간 지급되는 월급은 총 1560만원.

- 첫 1년은 월 80만원, 2년차는 월 50만원을 정액 지급
- 2016년에 32명에 월 80만원씩 지원

7. 경기 팜쉐어[22]

○ 사업 추진 배경

-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산발적 귀농 교육으로는 농업 창업 현실과의 괴리 우려 ⇒ 영농기반이 없는 창업 성공이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시설하우스에서 작물재배・유통・판매 모의 창업 및 단계별 1:1 컨설팅
- 초기창업으로 소규모 생산물에 대한 유통 판로 확보의 어려움 ⇒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재배 작목을 꾸려 모아 판매(꾸러미) 등 필요
-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실현해 가는 공공임대 농장 운영
- 농장경영 종합컨설팅 지원을 통한 영농현장 안정 정착: 대학교수, 품목별 전문가 등 1:1 집중 멘토 지원으로 실패요인 최소화

○ 사업 내용 및 실적

- 전국 최초 공공실습농장 조성・운영으로 청년 창업후계인력 양성(11명)
  · 실습용하우스(한경대학교) 1,650㎡(165㎡×10개동) 설치
  ·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 최적화된 실습프로그램 운영
  * 이론・실습 중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높음(경쟁율 3:1)
- 농장 경영 종합컨설팅 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업 정착 기여
  · 품목별 전문가 1:1 멘토 55회 지원(11명 × 5회)
- 다양한 품목의 재배・기술・유통・정보 등 공유
  · 7개 품목 재배 (딸기2, 미니양배추2, 미니단호박2, 쌈채소, 새싹인삼, 둥근대마)
  · 농장 실습 후 첫 농업소득 경험 (11명 매출액 16,420천원)
- 공동브랜드 창출을 위한 디자인・포장재 제작 및 공동 활용
  · 상자 2,000개, 소포장재(pp용기) 2,000, 숨쉬는 비닐봉투 2,000, 스티커 3,300

---

22 경기도(2017). 내부자료.

○ 향후 계획

- (시설설치) 경기지역에 적합한 내재형 고효율 시설 하우스 설치
  · 시설하우스 40개동(165㎡ × 40) 운영 및 컨설팅 / 870백만 원(도비)
  · 대　　상 : 2개 지역 (남부권역/한경대학교, 북부권역/농협대학교)
  * ’16년 10개동 → ’17년 40개동으로 확대 운영(50평/동)
- (1:1컨설팅) 작목별 선도농가와 1:1 멘토·멘티 지정 학습으로 초기 영농 정착 유도
  · 품목재배기술, 병충해관리, 농장경영, 유통·판매 등 농업경영 교육
- (공동브랜드) 참여자들의 생산물 지속적 마케팅을 위한 파워브랜드 구축
  · 경기 팜셰어 협동조합 구축으로 생산자·소비자 신뢰 구축 및 직거래 판매
  · 공공 가공시설 활용으로 농산물 가공 판매 확대
- (6차산업) 팜셰어 농장을 관광화하여 농업 창업에 대한 비전 제시
  · 팜셰어 농장 주변 환경 개선으로 근거리 도시민의 농촌 관광(체험·힐링) 활용 및 소비자와의 상생

8. 홍동 젊은협업농장

○ 추진 배경 및 경과

- 풀무학교 전공부(전문대학 수준 교육과정) 교수(정민철)가 학생들이 졸업 후에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졸업생 두 명과 영농 창업(2012년). 지역의 유기농 사회적기업(홍성 유기농)이 운영하다 실패한 하우스 1동을 임대하여(년 100만원 임대료) 농장 시작.

○ 사업 내용 및 실적

- 2013년, 마을 이장님이 하우스 3개동을 임대해 받고, 군 사업(하우스 지원

사업)을 받아 총 8개동(동당 200평)(부지는 마을 이장이 지원) 운영하고 있음. 군 사업을 받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고(2014년), 농장이름을 젊은협업농장으로 지음.

- 교육생은 3개월 정도 견습 기간을 거친 후 1년 정도의 인턴과정을 통해 농업을 배움. 농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3개월은 점심만 제공하고 무보수로 일하게 한다. 더 하겠다면 1년간 일할 수 있으나 수익을 나누지는 않고, 지역 차원의 지원금으로 임금을 충당함. 함께 생활하며 농업과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습득. 단순히 농사일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의 포장과 납품도 해보고, 동네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농부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통해 농촌과 농업을 배움.
- 매주 목요일은 농장 자체세미나를 여는 날로 이날은 생산 작업을 하지 않음. 농사와 함께 인문학도 배워 학교라는 틀이 아니어도 농장과 지역이 학교가 되어 교육하는 것이 젊은협업농장의 목표 중 하나임.
-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쌈채소와 샐러드채소들은 70%를 홍성유기농영농조합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역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 매장, 지역장터, 식당 및 꾸러미 등에 납품.
- 교육농장에서 만일 1년이 지나도 계속 농장에 남고 싶다면 앞선 사람들을 독립하게 하는 방법을 택함. 농장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협업농장의 목적이 규모를 키우고 수익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이 같은 농장을 여러 개 더 만들어 내는 데 있기 때문. 교육농장을 거친 후 일부는 현재 독립하여 새로운 협업농장을 만들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새로운 젊은 농업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음.
- 젊은 협업농장은 현재 조합원 45명, 이사회는 풀무학교 이사장, 홍성유기농 대표(유통), 이장님(마을대표), 실무자 2명으로 이루어짐. 교육 주체 및 교육생이 11명이 일하고 있음(20대 6명, 30대 3명, 50대 2명). 지원조합원 20여 명이 농장을 함께 운영하는데 포장 디자인, 포스터・홈페이지 제작과 관리, 사진 촬영, 팟캐스트 녹음 등을 함.

농식품부-충남-롯데슈퍼 '청년 유기농부 육성 프로젝트'

○ 농식품부는 롯데슈퍼, 충청남도와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17.4.12.)

- 농식품부, 롯데슈퍼와 「건강한 밥상*」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로 친환경농산물과 연계한 CSV**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층을 농업으로 유도

* 농식품부-롯데슈퍼-친환경단체의 유기농산물 소비확대 업무협약('15.5)

CSV(Creating Shared Value) : 공유가치창출, 기업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경제 수익을 추구하는 것

- 롯데슈퍼의 자금출연과 충청남도의 교육 및 정착기반 지원을 통해「청년 창농+실명제+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추진

* 청년농부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롯데슈퍼와 롯데마트 전점에서 브랜드화 하여 판매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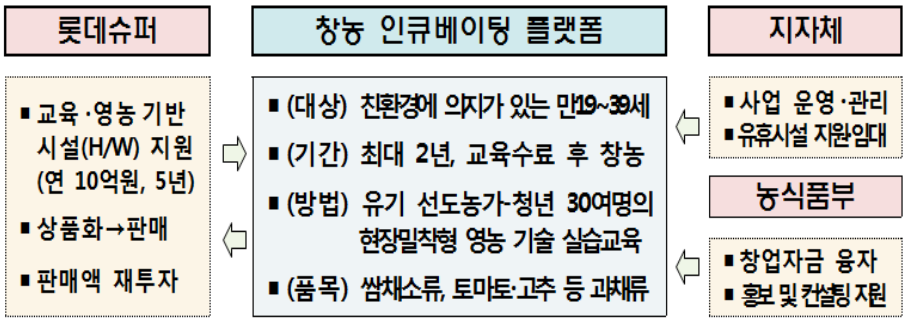

- 롯데슈퍼가 연간 10억 원씩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청년농장의 하드웨어 기반을 마련하고, 충청남도는 5월부터 청년농부를 선발하여 연간 20여명, 향후 5년 간 100여명의 친환경 청년농부를 육성할 예정
- 충청남도는 교육생 선발 및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된 홍성·아산·부여·논산에서 시작해 그 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4. 12). 「농식품부, 롯데슈퍼·충청남도와 손잡고 친환경 청년농부를 육성한다」.

9.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민간 자발적인 다양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사례 등장.

○ 밀착형 지원이 핵심 성공요인: 대부분 청년 농업인이 영농정착에 힘들어 하는 부분(자금, 기반, 기술, 인적 네트워크)을 선배 영농인 또는 영농 조직을 통해서 일정기간 연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체제로 운영

○ 준비기간 또는 정착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다시 떠나는 사례가 등장. 상당수 우수 사례가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기본 생활비 80만원 지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음. 준비·정착 기간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소득 지원 대책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유입 인력 창출 가능성이 높음.

제 6 장

청년 영농창업 지원 방안

1.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의 기본방향

○ 농가의 고령화 문제 해결 및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년농 신규 육성을 위한 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영농 현장교육 강화, 창업 초기 생활보조 지원, 지역별 밀착 지원체계 운영 등을 제시함.

○ 영농 현장 교육 강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자기 책임 하에 영농을 해보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청년 농업경영실습농장

○ 창업 초기(3~5년 이내) 정착 시기에 대한 집중 지원: 창업 초기 생활비 문제로 인해 창농을 포기하지 않도록 생활 보조 실시 → 청년 신규취농보조금

○ 지역별 밀착지원 및 영농 창업생태계 조성: 영농기술 습득, 영농 기반 마련, 판로개척, 주거지 마련 및 마을 정착 등 정착 초기 극복해야할 사항들을 지역별로 밀착 지원 → 청년창업지원체계 및 기타 지원방안

2. 청년 농업경영실습 농장 추진

□ 도입 필요성 및 목적

○ 농업 경영인 고령화의 심각성
-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 65.6세(일본 66.8세)
- 농가 경영주의 청년대비 노인비율(65세 이상/35세 이하)은 전 세계 최고 수준 (2015) 한국 140.1 > 일본 89.3 ← (2010) 한국 60.3 < 일본 95.2

○ 농가 중 경영승계자를 확보가 농가가 10% 미만이고, 40세 이하 농가경영주가 1개 농가도 없는 농촌 마을이 대다수임. 농가·농촌의 지속가능성 위협
- 후계자 확보 농가: 9.7%(2014) (일본은 판매 농가 중 후계자 보유 비율 51.7%, 2015)
- 읍면 마을당 40세 이하 농가경영체수: 0.4명/읍, 0.24명/면 (2015년 농업총조사)

○ 청년 창업 농업인의 단계적 영농 정착 지원이 절실
- 청년(40세 이하) 귀농자 정착 애로사항(마상진 외 2014): 여유자금 부족 > 농지구입 > 주거 > 영농기술

○ 신규 창업 청년들에게 농촌에 정착하는 일정기간 동안(3년 이내) 영농기반과 더불어 농업기술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주고, 추후 정부의 정착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을 받아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개요

○ 창업초기 일정기간 영농기반, 농업기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실습 농장을 운영

- 유형1(실습농장): 기존 농업법인, 농업학교, 선도농가(WPL) 영농기반에서 작은 규모로 경영 준비
- 유형2(임차농장): 영농기반을 공식적으로 임차하여 자신의 영농을 통해 소득 창출

○ 사업규모
- 목표: 2020년까지 15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지자체)에 한곳씩 배치
- 2018년: 광역단위별 1개소(9개소) → 2019년: 광역단위별 5개소(45개소) → 2020년: 기초단위별 1개소(156개소)

*실습농장(1/3 규모, 50개 내외): 개소당 10여명 이내(총 500여명 규모)
*임차농장(2/3 규모, 100개 내외): 개소당 3명 이내(총 300여명 규모)

○ 사업대상/주체
- 체계적 영농기술 지원 및 판로 지원, 각종 지원정책 연결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자체
- 농업계 대학 또는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협연계 전담지원팀 운영

○ 사업내용: 경영실습농장 조성비 및 임대료 국비 일부-+지원
- 농장 조성비 지원(국비): 1년차
- 임대농장의 경우 임대료 지원(지방비): 1년차(2년차는 농가 자체 해결)
- 영농기술 교육 및 판로지원: 최장 2년간 (연간 1,000시간 이상의 교육・실습 제공)
- 숙소지원 및 알선: 1년간 숙소 제공 후 2년차는 주택 임대 또는 알선
- 사업기간 종료 후 지원받은 기간 두 배 기간만큼 지역 내 영농종사
- 경영실습농장 졸업 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우선 선정으로 지역 내 정착 유도

※ 교육대상

- 40세 미만 청년
- 영농기반이 없는 농고·농대 졸업생 및 신규 취농자(지역 내 기본농업교육이수자)
- 부부단위 신청 시 가점부여

○ 사업비 구성 및 규모

- 1년차: 국비 50%(5천만 원 한도, 실습장 조성비) + 기초지자체 50% (실습장 조성비 + 각종 투입재 비용 + 임대료 + 교육훈련비)
- 2년차: 각종 투입재 비용 + 교육훈련비 (지방비)
- 2018년 4.5억 → 2020년 55.5억

표 6-1. 청년 농업경영실습농장(안)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2020년 목표	156개소 (9 → 45 → 156)	50개소 (9 → 25 → 50)	30개소 (9 → 20 → 35)
국비예산	4.5억 →18억 → 55.5억	4.5억→ 8억 → 12.5억	4.5억→ 5.5억 → 7.5억
국비+지방비 (조성비 기준)	1년차: 9억 2년차: 36억 3년차: 110억	~	1년차: 9억 2년차: 11억 3년차: 15억

비농업분야 유사사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23]

○ 설립배경: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CEO의 노령화로 인한 성장 동력 저하 문제 개선, 청년 창업농들의 창업초기 실패요인 지원 → 40세 미만 예비 또는 창업개시 3년이하 청년 경영자에 체계적 창업생태계(기술, 판로, 자금) 지원

○ 사업규모: 연간 500명 지원 (사업규모 500억 원), 5개 권역(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 등)에 한 개씩 운영

※ 180억(2011) → 256억(2013) → 260억(2015) → 260억(2016) → 500억(2017)

○ 지원대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자 (2016년부터 기술경력보유자는 49세 이하, 전체의 5% 정도에 그침)

○ 지원내용: 창업초기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
- 서류심사・심층심사 (경쟁률 약 5:1) 등의 과정을 거쳐 협약체결 (정부지원금 7천만 원 + 본인부담금 3천만원(1천만 원 현금 + 2천만 원 본인 노동력 투입분))
- 교육기간 1년 120학점 (추가로 1년 가능, 추가 시 1억 추가 지원)
- 창업 공간 제공 (50~60% 정도가 입소)
- 밀착 코칭 제공(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전담코칭+ 15개 특화분야 코칭)
- 창업관련 사업 연계 지원 : BI 입주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 복합금융)+ 마케팅・수출 + 투자・컨설팅 + R&D 연계

○ 특징
- One-Stop 패키지 지원 (시제품개발까지 지원)
- 중간평가를 통한 성과관리(퇴교율 10%)
- 창업교육 + 코칭
- 5년간 성장이력관리(매출, 수출, 고용인원, 지재권), 우수졸업생에 대한 추가 지원
- 하루 3만원씩 주5일 생계비 지원(연 720만원 규모)

○ 누적성과(2011~2016): 1,515명 창업, 일자리 3,466명, 매출액 7,312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업체수	212	425	679	963	1,215	1,515
일자리	375	997	1,522	2,381	2,843	3,466
매출액	1,919	4,243	5,434	6,905	7,210	7,312

[23] 2011~ 2016년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청 수탁사업)였지만, 2017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사업화 되면서 '창업 성공패키지 사업' (500억 규모, 정원도 확대, 상반기, 하반기 모집)으로 사업명칭 변경. 그동안 사업규모 변화: 180억(2011) → 256억(2013) → 260(2015) → 260 (2016) → 500억(2017)

3. 청년 신규취농보조금 제도 도입

□ 도입 필요성 및 목적

○ 농업은 다른 직업과 달리 안정적 생활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
- 농업은 다른 생육주기를 가진 동·식물의 재배·사육을 통해 수익을 발생하기에 수익이 나기 전까지 일정시간이 소요
- 또한 품목에 맞는 농업경영, 농업기술과 더불어 지역에 맞는 판매와 관련한 기술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함.

○ 정착 초기 영농 수익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3년 이내) 안정된 생활자금이 절실함.
- 청년 귀농자 귀농 전·후 수익감소: 60% (KREI 2015)
- 귀농 5년차까지 가구 평균 소득은 2,645만 원, 2천만 원 미만 비율 45.9%로 귀농 가구의 초기 경영 기반 취약(귀농가구 평균 소득은 평균 농가소득 3,722만원의 71.1% 수준)
- 농촌 이주 직후 가구 총소득의 급격한 하락, 3년차 이후 안정화 경향

표 6-2. 귀농 가구의 평균 소득 변화

단위: 만 원

	귀농 직전 연도	이주 첫해	이주 2년차 ('15년이주)	이주 3년차 ('4년이주)	이주 4년차 ('13년이주)	이주 5년차 ('12년이주)
농가소득	4,574	1,781 (61.1%↓)	1,984	3,071	3,145	3,242
농업소득	-	600	644	1,523	1,666	1,853
농외소득	-	773	965	693	959	960

출처 : 한국갤럽(2016). 『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 청년 농업인의 경우 모아둔 자산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정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이들의 도시로의 재이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청년(40세 이하) 귀농자 정착 애로사항(KREI 2015): 여유자금 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 귀농자 이주의향 요인(KREI 2015): 경제적 문제(38.2%), 생활편의시설 불편(26.5%), 주택 문제 (8.8%) < 3년 이하 귀농자: 경제적 문제 45.9%, 생활편의시설 18.9%

○ 창업 준비, 경영개시초반기간 청년 창업 농가에 대해 별도의 소득보전을 통해 역량개발, 영농정착에 몰입하여 조기에 경영이 안정되도록 지원

※ 프랑스 DJA(Dotation jeunes agriculteur) (1973년 조건불리지역 → 1975년 전국확대 → 1995년 전면개혁) → 일본 신규취농급부금 (2012년) 제도 도입 영향 → EU 청년농업인 직불제(2014년) 도입

프랑스 DJA와 기타 지원

-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농업자(40세 미만)에게 기본배당(allowance)을 지급: 8,000~17,300유로(산간지 16,500~35,900유로) 2016년 평균지급액(20,000유로)
- 기본배당 외에 별도로 정착에 필요한 기본 자금 융자 (상환기간 15년 1~2.5% 자금)
- 소득세, 농업자산 등기세, 재산세 5년간 감면
- 사회보장료 5년간 감액(1년에 65% → 5년 15%)
- 농지우선취득 지원
- 생산할당 및 보상금 수급권 우선 배분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목표: 연간 40세 미만 신규 유입 청년 농가 2,000호로 확대 (2010~2015년 기간 3,543호 유입, 연평균 708호) (귀농귀촌종합계획 2017~21, 청년 창업 1만호 달성)
- 연간 2000명 유입으로 2021년 40세 미만 청년 농가수 15,000농가 유지

외국의 청년농 정착보조금 연간 지원 규모(연인원/예산)(2015)

* 일본 14,107명(116.1억 엔)
* 프랑스 1만여 명 규모 (2억 유로)

○ 사업대상 및 주체

- 40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

외국의 청년농 지원 대상

* 일본: 45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
* 유럽: 40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

우리나라 비농업분야 청년창업지원 대상

* 초기창업자: 사업을 개시후 3년 이하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 사업을 개시후 7년 이하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청년기본법: 19~39세
* 창업촉진사업 우대대상 청년창업자: 39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 최소 교육 및 이행조건

(취농준비자) 정부(중앙/민간)에서 인증한 기관(학교 및 민간기관)에서 취농

준비교육자 → 준비기간 2년간 1000시간 이상 전문교육 이수
수급기간의 2배 기간 영농종사

(신규취농자) (단기적) 40세 이하 신규 창업농 전원 → 상담과정을 거쳐 교육(학습)계획 수립 및 이행 조건에 연간 200시간 이상 전문교육 강조
(장기적) 농업계 학교 교육이수자 또는 영농교육 1,000시간 이상 이수자→ 교육(학습)계획 수립 및 이행

※ 연 일정시간 이상(연간150일 및 연간1,200시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시 지급 중지

외국의 청년농 지원자 선정관리 및 의무이행

○ 프랑스 신규취농보조 대상자
- 경영발전계획(ODP)에 따라 5년간 영농종사
- 맞춤형 전문화 계획(PPP) 및 경영계획(PDE) 이행
- 장부 작성(5년)
- 모든 농장시설은 환경보호 규정 준수(3년)
- 보건, 위생, 동물복지 기준 충족(3년)

○ 일본 청년취농급부금 대상자
-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문제 제기
- 연수계획서 심사와 면접을 통해 취농 의지 철저히 확인하고 연수 실시계획 및 취농 계획의 구체성 점검, 연수처가 교육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자체를 통한 인증 강화. 신규 취농자에게 정기보고의무 부과.
- 준비형의 경우: ① 적절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부 주체가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필요한 기능을 습득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연수 종료 후 1 년 이내에 원칙 45 세 미만으로 독립 · 자영 취농 또는 고용 취농하지 않은 경우, ③ 교부 기간의 1.5 배 (최소 2 년)의 기간 독립 · 자영 취농 또는 고용 취농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2) 부모와 취농자의 경우: 취농 후 5년 이내에 경영 상속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업 법인의 동업자가 되지 않은 경우. (3) 독립 · 자영 취농자: 취농 후 5년 이내에 인정농업자 또는 인증신규 취농자가 되지 않은 경우
- 취농 상황 현지 확인 등에 의해 적절한 농업경영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급

부주체가 판단할 경우. 예 : 청년등 취농 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경영자산을 축소한 경우, 경작해야 할 농지를 유휴화한 경우, 농작물을 적절히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농업 생산 등에 종사한 일수가 일정(연간150일 및 연간 1,200시간) 미만인 경우, 급부주체로부터 개선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대처를 행하지 않은 경우 등) 급부를 정지

- 취농 상황 보고: 준비형의 경우 ① 취농상황 보고, ② 주소 등 변경 신고, ③ 취농 보고, 경영개시형의 ① 취농 상황 보고(6개월 단위 연 2회), ② 주소 등변경보고: 급부 기간 내 및 급부기간 종료 후 3년간

○ 사업내용: 준비 또는 창업기간 기초생활자금 지원

- 지급기간(5~7년): 취농 준비 2년 + 경영 개시 후 3년 또는 5년
- 지급액: 월 100만원 (시나리오에 따라 80만원도 가능)

(1안) 영농경력별 차등배분: 준비기간·1년차 100%, 2년차 80%, 3년차 60%, 4년차 40%, 5년차 20%

(2안) 농가소득[24] 1,500만원(농가 평균 농외소득 수준) 미만은 전액지급, 2,800만원(농가 평균소득의 75% 수준) 이상이면 미지급
1,500~2,800만원 사이: (2800만원-소득)×1200만원

(3안) 농업소득[25]이 1,000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 (최대 월 10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미지급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의 지급액 기준

○ 농가소득 100만원엔 미만: 150만 엔/년
농가소득 100만~350만 엔: (350만 엔 - 농가소득)*3/5,

24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 입증의 문제가 있어 실행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다만 농가 농외소득(평균 1500만원 수준)을 감안할 경우

25 수급자가 농업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물별 판매액 당 소득율 자료 등을 기준으로 농업소득 판단이 가름됨.

농가소득 350만 엔(일본 농가평균소득 496만 엔의 70% 수준) 이상: 미지급

○ 150만 엔 = 최저임금(시간당 820엔) ×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1800시간)

부부 취농의 경우 1.5배 (연간 225만 엔)

※ 일본 농가의 농업종사시간 연간 150일, 최소 1200시간

○ 지급 기간은 최장 5년 (경영개시 후 5년째 분까지만 지급: 경영 개시 후 3년이 된 사람은 4년째, 5년째 두해 수급)

우리나라 가구소득 관련 주요 수치

○ 도시가구 최저생계비 (2015년) 월

- 1인 가구: 617,281원/ 2인 가구 1,051,048원 / 3인 가구 1,359,688원 / 4인 가구 1,668,329원

○ 귀농 5년차 가구소득 3,242만원 (농가 평균소득(2015) 3721만원의 87%)

농가평균 농업소득(2015년): 11,258만원 → **93.8만원/월**

○ 최저임금(2016년)

- 6,030원 × 연평균 근로시간 (2,123시간) = 1280만원 → **월 107만원**

○ 사업비 규모

§시나리오 1안: 연간 500명, 총 5년간, 월 1백만원 지급 → 연간 300억 원

- 준비자 1,000명=1년차 500명 + 2년차 500명
- 취농자 2,500명= 취농 이후 영농경력별 500명[26] × 5년

시나리오 1의 지급 인원 확대시 소요 예산

○ 연차별(경력별) 1000명, 지급인원 7,000명→ 연간 600억 원 소요

○ 연차별 1500명, 지급인원 10,500명 → 연간 900억 원 소요

○ 연차별 2,000명, 지급인원 14,000명 → 연간 1200억 원 소요

[26] 최근 5년간 40세 이하 연간 1000명 규모로 유입(2015년 농업총조사 5년이하 경력 농가경영주 5,177명

§ 시나리오2: 연간 500명(경력대별 점차적 확대[27]), 총 5년간, 월 1백만원 지급
→ 첫해(2018년) 120억 원, 2022년부터 300억 원

- 준비자 1,000명=1년차 500명 + 2년차 500명
- 취농자 2,500명= 취농 이후 영농경력별 500명 ×5년
(2018년부터 1년차 준비자, 경력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시나리오3: 연간 300명, 총 3년간 → 연간 127억 원

- 준비자 600명=1년차 300+2년차 300
- 취농이후 900명=취농 이후 영농경력별 300명× 3년

○ 자금용도제한: 농지 등 경영 시설·기반 구입 제한

외국의 청년농 지원금 용도 제한

○ EU 청년 직불금
- 토지나 동물과 같은 자산(assets)을 구입하는 데는 직접지불금을 사용할 수 없고, 농기계 현대화, 농산물의 가공, 농산품의 질 개선 등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청년 취농 저리 융자(MTS-JA)
- 이자액 상한 11,800~22,000유로
- 융자 상한액은 없지만 토지 구입을 위한 것은 20,000유로로 제한,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감독 하에 46,000유로 가능 (전체 융자액의 10%을 넘지는 못함)

○ 사업실시에 따른 예상 효과(농가 연령구조 변화)
- 연차별 신규 취농자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을 신규로 지원할 시 40세 미만 농가수는 그림 6-1 처럼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27] 2018년에는 준비 1년차, 취농 1년차만 지급 → 2019년 준비 1,2년차, 취농 1,2년차 → 2022년 준비 1,2년차, 취농 1~5년차 지급

그림 6-1. 청년 신규취농보조금 연간 지급인원 규모별 40세 미만 농가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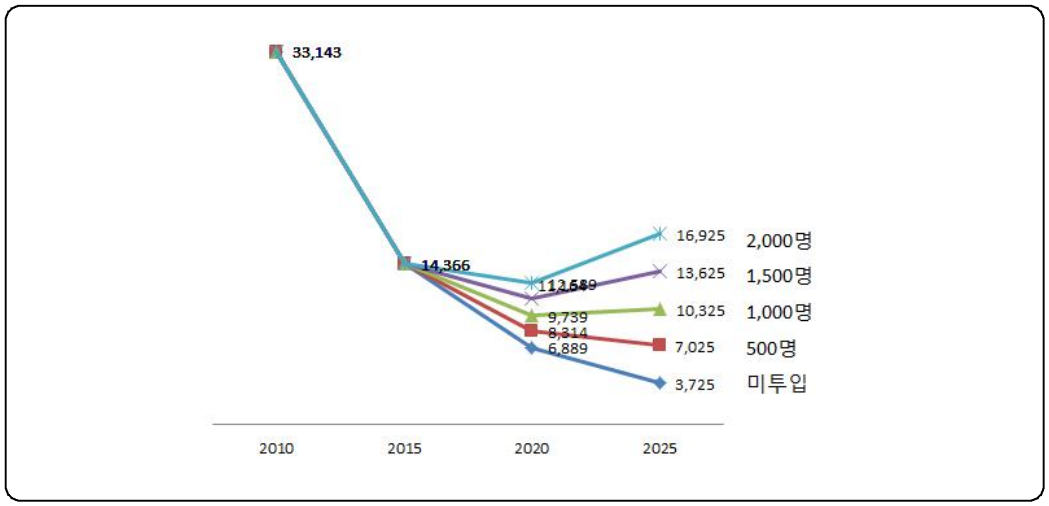

* 정책 미투입 시에는 연령대별 현재의 매년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인력(2000~2015년 연령대별 평균 변화율 반영)만 감안하여 전망; 500명(1,000명, 1,500명, 2,000명) 규모로 신규 정책 투입시 전망치는 자연 유입 인력에 전년도 신규 인력 중 40세 초과자(정책 투입 다음 해부터 1/20규모)를 제외한 수치

- 연차별 500명 규모로 실시할 경우 현재 40세 미만 농가수를 유지하면서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8% 수준 유지. 1000명 이상을 신규로 지원할 경우 40세 미만 농가수는 증가하면서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이상으로 증가 전망(2000명 지원시 2025년 1.8%)

표 6-3. 청년 신규취농보조금 제도 실시에 따른 40세 미만 농가수 및 전체 농가 대비 비중 전망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p)	2025(p)
총 농가수(천 농가)			1,383.5	1,272.9	1,177.3	1,088.5	1,018.3	967.0
40세 미만 농가 (%)	미투입시		146,512 (10.6)	91,516 (7.2)	33,143 (2.8)	14,366 (1.3)	6,889 (0.7)	3,725 (0.4)
	신규사업 투입규모	500명	-	-	-	-	8,314 (0.8)	7,025 (0.7)
		1000명	-	-	-	-	9,739 (1.0)	10,625 (1.1)
		1500명	-	-	-	-	11,164 (1.1)	13,625 (1.4)
		2000명	-	-	-	-	12,589 (1.2)	16,925 (1.8)

4. 청년창업지원체계 및 기타 지원방안

□ 지역단위 청년 창농지원조직 운영

○ 영농 창업생태계 구축

- 청년 영농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생태계를 지자체별로 구축하여 정착단계별 전문성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

그림 6-2. 창업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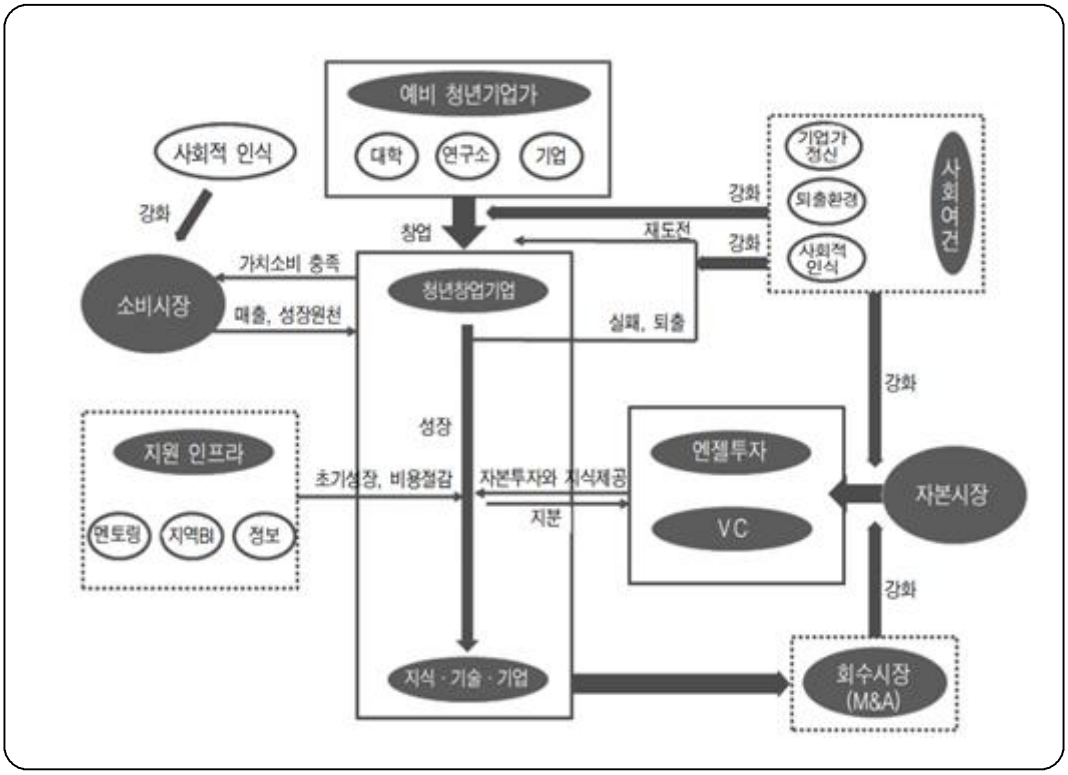

자료: 양현봉·박종봉(2011).「청년창업 활성화방안」.

창업보육센터(BI)

○ 중소기업청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게 창업 공간, 경영·기술 및 정보 등 종합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을 지원. 보육센터 건물 신축 또는 개·보수비용 및 임대료, 공용장비 구입 및 고가 S/W 구입 비용, 기타 지원 설비 구입비용 그리고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함. 보육센터에서는 입주자에게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 관련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

○ 창업 후 3년까지 경영, 기술 밀착 집중 지원

○ 창업 경영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BI manager(창업 보육매니저) 육성

○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 6차 산업, 마을 만들기, 귀농귀촌 등 관련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 지역자원 연계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 배치

○ 영농기반, 기술, 마케팅 관련 밀착 지원

- 기초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업계 학교,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 선도농가, 농업 마이스터, WPL 등의 관련 전문 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밀착 지원 체계 구축

○ 농장 수료 후 농지은행, 지자체 농업자금, 정부 후계농자금, 각종 정부사업 연계 지원

○ 직불금 수령에 따른 경영, 학습 관련 이행조건 감독 관리 → 불이행시 취소 처분

그림 6-3. 일본 교토부 신규취농 지원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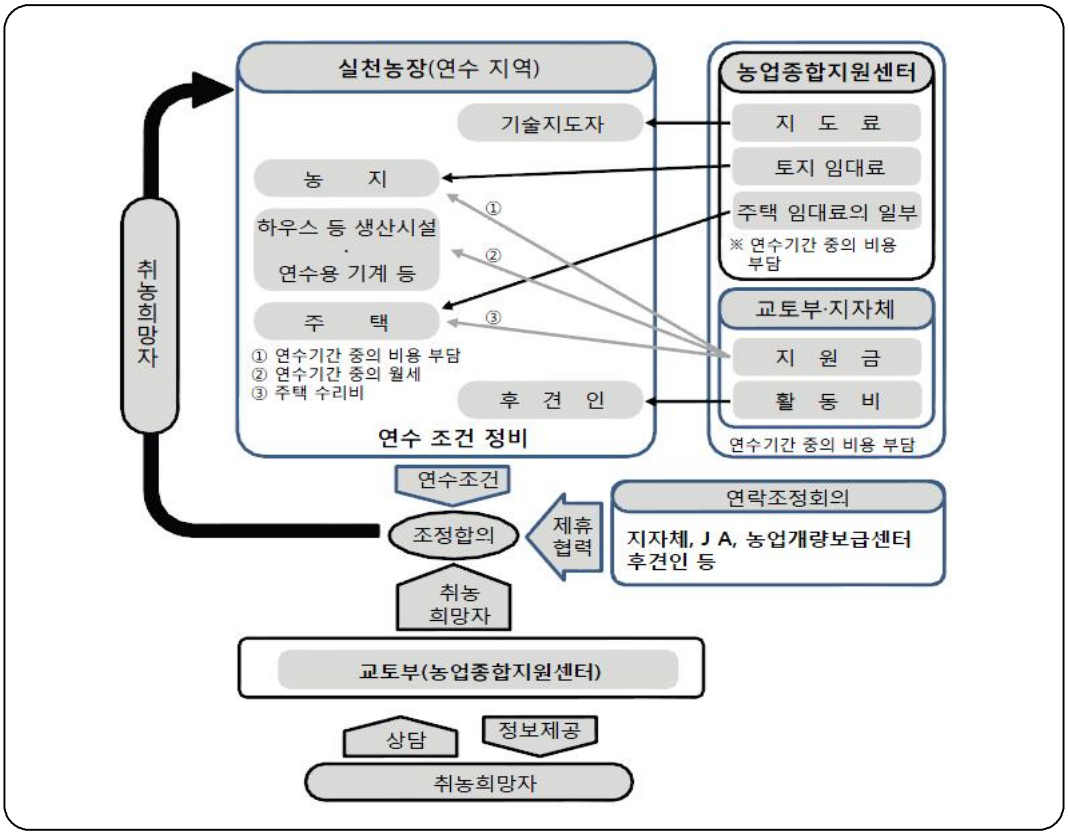

출처: 일본 京都府(2013). 내부자료.

□ 농지은행사업 등의 개편[28]

○ 농지은행사업 개편

- 농지규모화사업 중 농지임대차사업 대상자로 신규 취업농을 추가함.
- 농지매입비축 사업에서 우선 임대대상자로 선정함.
- 신규 취농인의 농지 확보 지원을 위해 밭과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지원대상농지에 포함함.
- 매입·비축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신규 취업농의 농지 임대차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매도에 의한 신규 취업농의 농지매입을 지원함.
- 신규 취농인에 대한 농지매도 지원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환매조건부 매도사업을 추진함.

○ 신규 취농인과 경영이양자의 연계 모델 개발

- 경영이양자가 신규 취농자에게 임대 또는 매도 형태로 경영이양할 경우 경영이양자는 국가로부터 5개년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신규 취농자는 취득한 농지에 대해 사후적으로 농지은행으로부터 장기임대차사업 지원 또는 농지매매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
- 여기서 경영이양자와 신규 취농자의 연결은 농지은행사업을 (사전에) 통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형태의 경영이양에 대한 증빙만으로 농지은행은 각각의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지원을 수행함.
- 독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경영이양자와 신규 취농인과의 농장이양을 중개하는 컨설팅 기구(hofgründer.de)가 자생적 조직으로 설립되어 경영이양을 지원하고 있음. 이 기구가 중개하는 형태는 매도 및 매입, 노후분(Altenteil) 제공 조건으로 증여, 공동소유, 임대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농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에서도 각 주별 농장연계프로그램을 신규 취농인들의 농장 취득을 돕고 있음

---

28 김수석 외(2016) '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일부 발췌

미국의 농장연계 프로그램(National Farm Transition Network)[29]

○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는 국가 농업의 경제적 미래가 신규로 진입하는 농업인들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이 직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 하에 설립된 차세대 농업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미국 전역의 네트워크. 농장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젊은 농업인들이 신규로 취농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은퇴하는 농장을 신규 농업인들이 우선 매입할 수 있게 도와줌.

미국 주별로 운영되는 농장연계 프로그램

주	프로그램 명
Californa	California Farm Link
Connecticut	New England Land Link
Iowa	Farm On Beginning Farmer Center
Maine	Maine Farmlink New England Land Link
Maryland	Eastern Shore Land Conservancy
Massachusetts	New England Land Link
Michigan	FarmLink
Minnesota	Land Stewardship Project
Montana	Land Link Montana
Nebraska	Land Link The Beginning Farmer Program
New Hampshire	New England Land Link
New Jersey	State Ag Development Committee
New York	NY FarmLink
Ohio	The Farmland Center, a program of the Countryside Conservancy
Pennsylvania	Pennsylvania Farm Link, Inc Center for Farm Transitions
Rhode Island	New England Land Link
Vermont	Land Link Vermont, New England Land Link
Virginia	Virginia FarmLink, Virginia Farm Bureau Federation
Washington	Washington FarmLink
Wisconsin	Wisconsin Farm Center

29 최근 International Farm Transition Network(IFTN)로 명칭 변경(http://www.farmtransition.org/)

○ 경영이양직불 개편

-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농지연금사업을 결합한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모델의 기본방향은 경영이양보조금 및 임대료 지급으로 고령농의 은퇴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은퇴생활을 뒷받침하는 농지연금사업과 연계되는 복합적 경영이양 프로그램을 개발로 설정할 수 있음(다만, 약정과 동시에 바로 매도하는 일시매도 형태의 (선매입-분할지급형) 경영이양에서는 농지연금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음.)
- 모델의 주된 특성은 농지연금 가입 시 경영이양(영구임대 또는 매도)을 전제로 하는 특약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임. 농업인이 연금가입 시점에 매도 또는 영구임대를 선택함. 가입기간 중 상품의 수익(연금과 임대료 및 경영이양보조금)이 자경 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동등한 수준이 되게 모델을 구성함.

참고문헌

강대구 외. 2002.『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농림부.
강대구 외. 2004.『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농림부.
고흥군. 2017. 2017년 청년 창업농장 육성사업 추진계획.
국민농업포럼. 2016.『2016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수석·김홍상·박지연·김부영·황연수. 2016.『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마상진·김종인·오정훈. 2016.『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원. 2007.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마이스터 자격제도: 의미와 운영시스템".『인적자원관리연구』14(2): 1-11.
김정호·김정희·박해청·금경연. 2016.『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사)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마상진. 2004.『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진모 외. 2010.『농업인 영농 능력표준 점검사업』. 농업인재개발원.
김현수 외. 2014.『중장기 농업인력 육성대책 수립 연구(2015~2024)』. 농림축산식품부·순천향대학교.
나승일·오승균. 2016.『가방끈 보다 신발끈』. 미래융합연구소.
농림부. 2004.『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2004~2013』.
농림부. 2006.『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농림부. 2007.『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6.『농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개선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8.『신 농업교육체제 구축 계획』.
농림수산식품부. 2010.『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2011)』.
농림수산식품부. 2011a.『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계획』.
농림수산식품부. 2011b.『신규 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17. 4. 12.『농식품부, 롯데슈퍼·충청남도와 손잡고 친환경 청년농부를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6.『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1990~2015.『귀농·귀촌인 통계』.
농림축산식품부. 1981~2015.『농림축산주요통계』.
마상진. 2016.『농업 인력육성정책으로서의 귀농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허주녕·김경인. 2016.『농산업 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2016.『농업 인력육성정책으로서의 귀농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김종인·김경덕. 2015.『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2014. "농업인 교육 정책 사업(2006~2011)에 대한 평가 분석".『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46(2): 23-45.
마상진·박대식·박시현·최윤지·최용욱·남기천. 2015.『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박대식·김강호. 2010.『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오내원·김경덕·남기천. 2013.『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박성재·김강호. 2011.『농림수산식품 인력육성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박대식. 2008.『농업계 대학생의 영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정기환. 2008.『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최경환. 2008.『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열·정태화·장명희·김영생·김민규. 2012.『농업계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창업률 제고를 위한 직종 및 직무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종성. 2012.『농업분야 자격제도 발전 방향』. 농업교육 열린현장포럼.
서규선 외. 2002.『농업전문인력 교육의 발전방향』.
양현봉·박종봉.(2011).『청년창업 활성화방안』. 산업연구원.
이영대·정명채. 1990.『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 외. 2016.『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인력육성사업군 심층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북도. 2017.『전라북도 디딤돌청년협업농장 참여인력 선발공고』.
전상곤·허덕·우병준·김현중. 2010.『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민상기·이영대. 1991.『농업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제영 외. 2015.『농업 직업교육체계 개편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이화여자대학교.
정철영 외. 2001.『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학교.
정철영 외. 2008.『농업인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인교육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업대학.
통계청. 1970~2015.『농업총조사』.
통계청. 2016.『2015년 귀농·귀촌인 통계』.
한국갤럽(2016),『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일본의 인정농업인·청년 창업농 지원정책의 해외사례(회의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변화하는 자격: 자격정책 및 실무검토』.
허덕·마상진·이동소. 2015.『FTA 확대에 따른 축산기반 강화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日本 農林水産省. 2017. 農業を始めたい皆さんを応援します. http://www.maff.go.jp.
日本 農林水産省. 2015 .農林水産統計.
南石 晃明, 土田 志郎, 飯國 芳明. 2014. 農業革新と人材育成システム―国際比較と次世代日本農業への含意.
EUROSTAT. 2013. Farm Structure Survey.
USDA. 2012. Census of Agriculture.

부록 1: : EU 직불제와 청년농업인 직불제[30]

1. 직접지불제 예산

부표 1. EU 직불제 프로그램(사업)별 예산(2014-2017)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산 비연계 직불 (decoupled direct aids)	단일직불제 [1] (single payment scheme:SPS)	30,083	28,342	61	45
	단일지역직불제 [2] (single area payment scheme:SAPS)	7,382	7,806	4,237	4,101
	비연계 설탕보조 [3] (separate sugar payment)	277	278	1	0.5
	비연계 과일채소보조 (separate fruit and vegetables payment)	12	12	0.1	0.1
	특정보조-비연계보조 (specific support-decoupled direct aids) *EC규정 73/2009 제68조	487	507	1	0.1
	비연계 연성과일보조 (separate soft fruit payment)	11	12	0.1	0.1
	재분배직불(redistributive payment)		440	1,251	1,609
	기초직불제(basic payment scheme:BPS)			15,927	15,296
	환경직불(greening) *payment for agricultural practices beneficial for the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12,239	11,696
	자연조건불리지역직불 [4] (payment for farmers in areas with natural constraints)	?	?	3	3
	청년농직불 (young farmer payment)			549	441
	기타(생산비연계보조) (other-decoupled direct aids)	p.m. (payment claim)	p.m. (payment claim)	p.m. (payment claim)	p.m. (payment claim)
소계		38,252	37,397	34,269.2	33,191.8
기타직불 (other direct payment)	수유용암소보조 (suckler-cow premium)	902	884	1.5	1
	수유용암소추가보조 (additional suckler-cow premium)	49	49	0.1	0.1
	양및염소보조 (sheep and goat premium)	23	22	0.5	0.5

30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를 통해 조사된 EU 직불제 자료조사보고(2017. 5. 1.)의 일부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양및염소추가보조 [5] (sheep and goat supplementary premium)	7	7	0.1	0.1
	양잠보조 (aid for silkworms)	0.5	0.5	0.5	0.1
	특정영농및품질생산보조 (payment for specific types of farming and quality production)	2	1.3		
	사탕무 및 사탕수수 초가보조 (additional amount for sugar beet and cane producers)	21	0.2		
	면화작물특정보조 (crop-specific payment for cotton)	239	239	247	246
	과도적 과일채소 보조-토마토제외 (transitional fruit and vegetables payment -other products than tomatoes)	3	0.2		
	특정보조-생산연계보조 (specific support-coupled direct aids) *EC규정 73/2009 제68조	1,089	1,430	3	6
	자발적생산연계보조(Blue box) [6] (voluntary coupled support scheme)	?	?	4,046	3,988
	소농직불 (small farmers scheme)			p.m. (payment claim)	1,347
	기타(보조) (other-direct aids)	9.7	6.2	3.1	2.5
소계		2,345.2	2,639.4	4,301.8	5,591.3
추가보조금액 (additional amounts of aid)		0.6	0.2	0.1	0.1
재정준칙과 관련한 직불금 상환 [7] (reimbursement of direct aids in relation to financial discipline)			p.m. (payment claim)	p.m. (payment claim)	p.m. (payment claim)
농업부문 위기유보금 [8] (reserve for crisis in the agricultural sector)		424.5	433	441.6	450.5
소계		425.1	433.2	441.7	450.6
총계		41,022.3	40,469.6	39,012.7	39,233.7

1) 단일직불제 : 현행 공동농업정책(2014～2020년)에서, 종전 단일직불제(single payment scheme)는 기초직불제(basic payment scheme)로 대체되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2018년 8월 1일까지 단일직불제의 수급권(payment entitlements)을 폐지해야 하지만, 회원국에 따라 수급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2) 단일지역직불제 : 2004년이후 가입국(제외 : 몰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경우 행정능력의 제한과 역사적 자료의 부재로 인해, 기초직불제 대신 단일지역직불

제를 시행하는 것이 허용됨
- 2004년 가입(10개국) : 발트 3국, 동유럽(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 2007년 가입 : 불가리아, 루마니아
- 2013년 가입 : 크로아티아

3) 비연계 설탕 보조 : 사탕무무 가격하락에 대한 생산자 보조. 생산과 비연계되었음
※ 이하, 과일채소, 연성과일 등에 대한 비연계(separate) 보조 역시 해당 품목들의 가격하락에 대한 생산자 보조로소 동일(단, 생산과 비연계되었음)한 성격임.

4) 자연조건불리지역직불 : 현행 자연조건불리지역은 종전 공동농업정책(2013년까지)에서는 “조건불리지역(less-favoured areas)”으로 운영되었음. 현행 자연조건불리지역 선정은 사회경제 조건을 배제하고 환경지리 조건만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종전 조건불리지역이 사회경제 조건을 고려한 점과 차이를 가짐,

5) 양 및 염소추가보조 : 조건불리지역(less-favoured areas)에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한 추가보조임

6) 일부자료에 의하면, 2015년 자발적생산연계보조는 4,100백만~4,200백만€ 해당
- 자료 : Trade Impacts of Agricultural Support in the EU, 22쪽 표1.(http://ageconsearch.umn.edu/bitstream/252767/2/IATRC%20CP19%20-%20Matthews%20Salvatici%20Scoppola.pdf)

※ 한편, 2013년 WTO에 통보한 Blue Box 예산은 2,663.6백만€임 (http://www.europarl.europa.eu/atyourservice/en/displayFtu.html?ftuId=FTU_5.2.7.html)

7) 재정준칙과 관련한 직불금 상환 : 이전연도에 재정준칙의 적용(회원국별 연간 예산 한도내에서 직불금 지급 등)에 의해 감액(reduction)한 직불금의 (최종 수령자에의) 보상(reimbursement)에 관한 (EU규정 966/2012) 169조(3)항에 따라 이월(carried over)된 금액을 수용하기(accommodate) 위한 것이며, 새로운 (예산)배정(appropriations)은 아님. EU규정 1406/2013 26조(5)항에 따라, EU규정 1406/2013 26조(1)항에서 (4)항에 따른 재정준칙의 적용아래 있는 직불금 최종 수령자(recipients)에게 보상(reimburse)해야 함.

8) 농업부문 위기유보금 : 농업경영체(농업경영체)당 2,000€를 초과하는 직불금에 대해 감액조치하여 충당함. 다만, 불용시 농업경영체(농업경영체)에 보상(reimbursement)하여 돌려줌.

부표 2. EU 직불제 예산 현황(2014-2016)

구분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예산		백만 €	148,049	152,502	134,318	135,328	136,050
농림 예산	EAGF	백만 €	43,969.6	43,654.7	41,585	40,989	40,421
	EAFRD	백만 €	14,617.0	14,817.0	12,865	12,613	12,366
직접지불금		백만 €	40,510.7	40,931.9	39,715	39,139	38,580
농림 예산 대비 비중		%	69.1	70.0	72.9	73.0	73.1
농업경영체 수		천 호	-	10,841.0	-	-	-
농업경영체소득		€	38,547	37,025	?	?	?
농업소득 [1] ( )안 : 직불금 포함		€	19,609	17,903	14,178 (17,841.3)	13,709 (17,319.3)	?
호당 직불금		€	-	3,775.7	3,663.3	3,610.3	3,558.7
농업경영체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		%	-	10.2	?	?	?
농업소득(직불금 제외) 대비 직불금 비중		%	-	21.1	25.8	26.3	?

참고 : (EU의회-fact sheet)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in Figures(2017.3월)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fiches_techniques/2013/050210/04A_FT(2013)050210_EN.pdf

1) 농업경영체당 농업소득(agricultural income) : 전체 농업소득을 2013년 농업경영체 수(10,841천호)로 나눈 값
   - 전체 농업소득 : (2014) 153,703백만€, (2015) 148,620백만€
     ※ 전체 농업소득에 직접지불금은 포함되지 않음
   - 자료 : Statistical Factsheet -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agriculture/sites/agriculture/files/statistics/factsheets/pdf/eu_en.pdf

2. 소농직불과 청년농 직불

부표 3. 현 공동농업정책(2014~2020)의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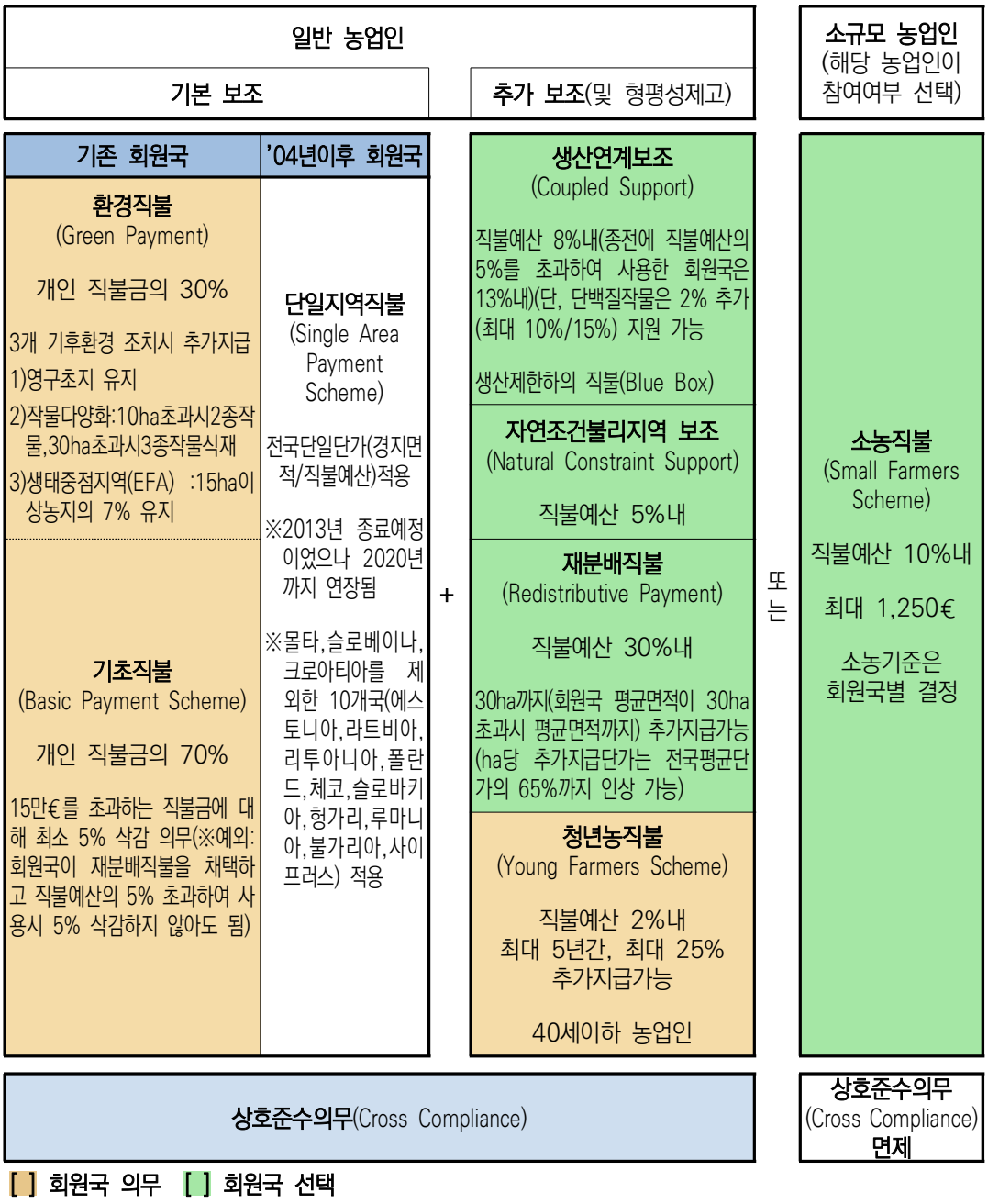

□ 소농직불(SFS : Small Farmers Scheme)

1) 제도 개요

○ 관련규정
- EU Regulation 1307/2013(공동농업정책에서의 농업인에 대한 직불제 규정, rules for direct payments to farmers under support schem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5편(Title V) 소농직불(Small Farmers Scheme)

○ 도입목적
- 시장통합 촉진에 의한 소농의 경쟁력 제고
- 행정부담 경감
- 농촌지역에 대한 활력(vitality) 및 역동성(dynamics) 제고

○ 주요특징
- 회원국 선택사항
- 다른 모든 직불제(기초직불, 재분배직불, 환경직불, 청년농직불, 생산연계직불) 대체
- 환경의무(greening) 면제,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벌칙 면제
- 최대지급한도 : 농업경영체당 1,250€(단, 회원국이 보다 낮은 최대지급한도 설정 가능)
- 최소지급금액(일시불직불금의 경우만) : 500€
  ・회원국이 변동직불금(payment due) 선택시, 최소지급금액 500€로 인상가능
- 회원국 연간 직불예산한도(national ceiling)의 10% 이내
- 지급방식 : 회원국 결정

○ 지원기한 : 2015년 신청자까지만 적용

○ 소농직불 도입 여부는 회원국 선택 : 도입 회원국(15개국)

- 불가리아(BG), 독일(DE), 에스토니아(EE), 그리스(EL),스페인(ES), 크로아티아(HR), 이태리(IT), 라트비아(LV), 헝가리(HU), 몰타(MT), 오스트리아(AT), 폴란드(PL), 포르투갈(PT), 루마니아(RO), 슬로베니아(SI)

○ 재정적 측면(financial aspects)

- (재원) 소농 직불금은 다른 직불제(기초직불제(BPS) 내지 단일지역직불제(SAPS), 환경직불(greening), 재분배직불, 청년농직불, 자연조건불리직불, 생산연계직불)로부터 충당함(해당 농업인이 다른 직불제에 남이 있을 경우 부여되었을 직불금 금액을 차감하여 충당함)
- 만약 다른 직불제로부터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가유보금(national reserve), 청년농직불금에서 미지급한 금액, 기초직불제/단일지역직뿔제에서 다른 농업인에게 지급해야할 직불금에서 선형 감액(linear reduction)에 의해 직불금을 충당할 수 있음
- EU규정 1307/2004 부속서 II에서 설정한 연간 국가직불예산한도(national ceiling)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매년변동직불(payment due each year) 방식을 채택하고, 최저지불금액을 500€로 인상(round up)하지 않은 회원국에는 국가직불예산한도의 10%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재배분배 효과 없기 때문)
  - ・직불예산한도 10%내 적용 회원국(8) : 불가리아(BG), 스페인(ES), 이태리(IT), 라트비아(LV), 크로아티아(HR), 헝가리(HU), 포르투갈(PT), 슬로베니아(SI)

2) 지급방식

○ 유형 : 회원국 결정 (3가지 방식)

- 일괄(일시불) 직불(lump-sum payment) 방식
- 매년변동직불(payment due each year) 방식
- 2015년기준 직불(payment due in 2015) 방식

(1) 일괄(일시불) 직불(Lump-sum payment) 방식

○ 최대직불금액(maximum amount of payment)
- 관련규정 : EU Regulation 1307/2013 63조 (1)항
- 일시불 직불금(lump-sum payment) 방식에서, 직불금은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동일금액(영농규모에 관계없이)으로 고정됨
- 최대직불금 결정 방식)(2가지)
  1) 회원국의 직불금 수령자(beneficiary)당 평균직불금의 일정비율(a percentage of the average payment, 25%이하이어야 함)로 산정 : 직불금 = 직불금 수령자당 평균직불금× 25%이하의 퍼센트
  2) 회원국의 얼마간의 경지(5ha이하이어야 함)에 대한 평균지불금(average payment per a number of hectares)으로 산정 : 직불금 = 전국평균 직불금 × 5ha이내 농지면적
- 위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하던 직불금은 500€이상 1,250€이하이어야 함.

○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s)
- 일시불 직불금(lump-sum payment)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은 소농직불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기초직불제 적용의 경우) 2015년에 보유했던 수급권 수치에 상응하는 최소 적격면적(eligible hectares)을 유지하거나, (단일지역직불제 적용의 경우, 2004년이후 가입국) 2015년에 신고한 적격면적을 유지하여야 함.
- 기초직불제 적용 회원국의 경우, 소농에 대한 수급권은 참여기간 동안 활성화(activated) 되었다고 간주되며, 상속을 제외하고 다른 농업인에게 수급권이 이전(transferred)될 수 없음.

○ 보조금 신청(aid application)
- 소농은 단지 2015년에만 모든 직불금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제출해야 함
- 2015년 이후에는 소농직불(SFS)아래 단순화된 직불금 신청을 제출하면 됨.

〈 소농직불금 신청 단순화 〉

관련규정 : EU 1306/2013 72조(3항)

72조 보조금 신청 및 직불금 청구(Aid applications and payment claims)

3. (전단 생략) 회원국은 보조금 신청(aid application) 및 직불금 청구(payment claim)에 대해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a) 직불금 수령자(beneficiary)가 이전연도에 제출한 보조금 신청 및 직불금 청구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면, 해당 보조금 신청 및 직불금 청구가 유효(valid)하다고 결정할 수 있음

(b) 이전연도에 제출한 보조금 신청 및 직불금 청구와 관련하여 해당 보조금 신청 및 직불금 청구가 단지 변화(changes)만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payment to farmer)

- 일시불 직불금 방식에서, 모든 농업인은 동일금액을 받으며, 농업경영체(holding)의 규모는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마찬가지로, 2015년이후 적격면적(eligible hectares)/적격가축수의 증가는 소농직불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적용 회원국(2개국) : 라트비아(LV), 포르투갈(PT)

(2) 매년변동직불(payment due each year)

○ 직불금을 매년 결정

- 결정 주기 : 매년 결정
- 직불 금액 : 해당 농업인이 소농직불이 아닌 일반적 직불제에 남아 있었을 경우 받았을 모든 직불금(기초직불, 환경직불, 청년농직불, 면화에 대한 특정직불(crop-specific payment for cotton), 재분배직불, 조건불지역직불, 생산연계직불)의 총가치에 근거하여 계산함

○ 회원국은 소농직불금 1,2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도를 설정할 수는 있음

○ 회원국은 소농직불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500€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을 500€로 인상할 수 있음

○ 특별조건 : 회원국이 소농직불금으로 지급해야할 500€ 미만금액을 500€로 인상하느냐에 여부에 따라, 농업경영체에게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짐

- 회원국이 최저금액을 500€로 인상(round up)한 경우 : 2015년의 기초직불금 자격조건들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경지면적(eligible hectares) 또는, 단일지역직불(SAPS, 2004년이후 가입 EU회원국 대상) 자격조건들에서 선언한 경지면적을 유지해야 함
  - ・기초직불제 적용 회원국의 경우, 소농에 대한 직불제 자격부여는 해당 연도에 대해 활동농업인((activated farmer)으로 간주하며,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격을 다른 농업인에게 이전(transferred)될 수 없음
- 회원국이 소농직불금으로 지급해야할 최저금액을 500€로 인상하지 않은 경우 : 특별조건 없음

○ 보조금 신청(aid application)

- 소농은 2015년에 모든 직불금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제출해야 함
- 2015년 이후에는 소농직불(SFC)에서 매년 단순화된 직불금 신청은 모든 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포함해야 함

○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payment to farmer)

- 매년변동직불(payment due each year) 방식에서, 소농직불금은, 회원국이 설정한 최대한도(maximum limit)에 따라, 농업인이 신고한(declared) 수령가능한 단위(eligible units, 면적/가축)에 따른 개인별 금액임
- 예를 들어, 회원국이 소농직불금 최대한도(maximum limit)를 1000€로 설정한 경우, 해당 농업인이 다른 모든 직불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를 초과할지라도 소농직불에서는 1,000€만 받게 됨
- 회원국이 소농직불금으로 지급해야 할 최저금액(low amounts due)을 인상(round up)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반적 직불제에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면적(eligible area)의 증가 또는 생산연계직불제에서 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가축(eligible animals)의 증가는 소농직불금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반면에, 회원국이 소농직불금으로 지급해야할 최저금액을 인상(500€로 인상)하는 경우, 2015년이후 농업인이 신고한(declared) 직불금 수령가능 면적(eligible hectares)의 감소는 특별조건의 미준수(최소경지면적 미충족)로 인해 이후연도에 어떤 직불금도 수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

○ 적용 회원국(9개국)

- 불가리아(BG), 독일(DE), 에스토니아(EE), 그리스(EL), 크로아티아(HR), 몰타(MT), 오스트리아(AT), 폴란드(PL), 루마니아(RO)
- 불가리아(BG)만 소농직불금으로 지급해야할 최저금액을 500€로 인상함.

(3) 2015년기준 직불(payment due in 2015)

○ 최대직불금 금액(maximum amount of payment)

- 매년변동직불 방식에서, 연간 직불금은 해당 농업인이 소농직불이 아닌 일반적인 직불제에 남아 있었을 경우 2015년에 받았을 모든 직불금(기초직불, 환경직불, 청년농직불, 면화에 대한 특정직불(crop-specific payment for cotton), 재분배직불, 조건불지역직불, 생산연계직불)의 총가치에 기초하여 계산함.
- 최대한도는 1,250€를 초과해서는 안됨
- 회원국은 소농직불금으로 지급해야할 최소금액을 500€로 인상할 수 있음
- 회원국은 회원국간 형평성(external convergence)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개인별 금액을 매년 조정할 수 있음(매년 증가 또는 감사 가능)

○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s)

- 일시불직불(lump-sum payment)에 적용가능한 특별조건은 2015년의 매년변동직불(payment due in 2015)방식에도 적용됨

○ 2015년 적용국 : 스페인(ES), 이태리(IT), 헝가리(HU), 슬로베니아(SI)

- 헝가리(HU)만 최소 지급액을 500€로 인상

○ 보조금 신청(aid application)

- 소농은 단지 2015년에만 모든 직불금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제출해야 함
- 2015년 이후에는 소농직불(SFC)아래 단순화된 직불금 신청을 제출하면 됨.

○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payment to farmer)

- 매년변동직불(payment due each year) 방식에서, 소농직불금은, 회원국이 설정한 최대한도(maximum limit)에 따라, 농업인이 신고한(declared) 수령가능한 단위(eligible units, 면적/가축)에 따른 개인별 금액임
- 최대한도는 1,250€를 초과해서는 안됨
- 회원국은 소농직불금으로 지급해야할 최소금액을 500€로 인상할 수 있음
- 일시불 직불금과 유사하게, 2015년이후 적격면적(eligible hectares)/적격가축수의 증가는 소농직불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반적으로, 2015년에, 농업인은 회원국이 정한 개인별 금액에 상응하는 직불금을 수령함. 2015년 이후에도 같은 금액을 적용함(다만, 2015년에 신고한 최소 적격면적을 2015년이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직불금 받지 못함)

소농직불 적격 조건(일반) (eligilble conditions for SFS)

※ 농업인은 2015년에 기초직불제(BPS) 또는 단일지역직불제(SAPS, 2004년이후 가입 회원국)에서 직불금 자격을 갖추어야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이 있음

	직불금 최대금액	특별 조건 (special conditions)	보조금 신청 (aid application)	직불금 지급 (payment to farmer)
일시불 직불금 (lump-sum payment) (라트비아, 포르투갈)	해당기간 모든 농업인에게 동일금액 최대금액 : 1,250€ 보장된 최소금액 : 500€	최소적격면적(eligible ha), 즉 2015년에 신고한(단일지역직불제)/ 2015년에 보유한(기초직불제)수급권(payment entitlements)을 유지해야 함 (기초직불제,BPS) 수급권 이전 불가/ 참여연도동안 수급권 활성화(activated)	2015년 모든 직불제에 보조금 신청 2015년 소농직불 참여를 위한 보조금 신청 2015년이후, 소농직불에서 단순화한 보조금 신청	경지규모/가축증가: 영향없음 경지규모/가축감소(2015년대비) : 직불금 없음
매년 변동직불금 (payment due each year) (불가리아,독일,에스토니아,그리스,헝가리,몰타,오스트리아,포르투갈,루마니아)	해당연도에 다른 모든 직불제에서 해당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총가치로서, 매년 계산된 금액 최대금액 : 1,250€ 최소금액 : 500€로 인상가능(회원국 선택사항,※불가리아만 채택)	최소직불금 500€로 인상시: 최소적격면적(eligible ha), 즉 2015년에 신고한(단일지역직불제)/ 2015년에 보유한(기초직불제)수급권(payment entitlements)을 유지해야 함 (단일지역직불제,SAPS) (기초직불제,BPS) 수급권 이전 불가/ 참여연도동안 수급권 활성화(activated)	매년 모든 직불제에 보조금 신청 매년 소농직불 참여를 위한 보조금 신청	최소직불금 500€로 인상시: 경지규모/가축증가: 영향 경지규모감소(2015년대비): 직불금 없음 가축감소: 영향
		최소직불금 500€로 미인상시: 의무없음		최소직불금 500€로 미인상시: 경지규모/가축의 증가/감소:영향
2015년 변동직불금 (payment due in 2015) (스페인, 이태리, 헝가리, 슬로베니아)	2015년에 다른 모든 직불제에서 해당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총가치로서, 매년 계산된 금액 최대금액 : 1,250€ 최소금액 : 500€로 인상가능(회원국 선택사항,※헝가리만 채택)	최소적격면적(eligible ha), 즉 2015년에 신고한(단일지역직불제)/ 2015년에 보유한(기초직불제)수급권(payment entitlements)을 유지해야 함 (기초직불제,BPS) 수급권 이전 불가/ 참여연도동안 수급권 활성화(activated)	2015년 모든 직불제에 보조금 신청 2015년 소농직불 참여를 위한 보조금 신청 2015년이후, 소농직불에서 단순화한 보조금 신청	경지규모/가축증가: 영향없음 경지규모감소(2015년대비): 영향없음

3) 소농직불 관련규정 : EU Regulation 1307/2013

V편(title) 소농직불(Small Farmers Scheme)

61조 일반규정(general rules)

1. 회원국은 본 편에 기술된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을 설정할 수 있다. 2015년에, 본인의 수급권(payment entitlements) 또는 임차한(leased-in) 수급권을 가진 농업인 또는 36조를 적용하는 회원국에서 단일지역직불제를 청구하는 농업인으로서, 10조(1)항의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소농직불에 참여를 선택할 수 있다.
2. 소농직불에서 직불금은 III편 및 IV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을 대체해야 한다. 상기 첫째문단은 회원국이 63조(2)항 첫째문단의 (a)호에서 기술한 직불금 방식을 채택한 회원국에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소농직불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III편 3장에서 제시된 농업실행(agricultural practices)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본 편에서 제시되는 어떤 이점도 2011.10.18일 이후에 소농직불의 혜택에 대한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만든 농업인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62조 참여(participation)

1. 소농직불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015.10.15.일 이내에서 회원국이 정한 날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이 정한 날짜(신청마감일)는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직불제의 신청마감일보다 일러서는 안 된다.

(둘째문단 생략)

2. 1항의 예외적 방법으로, 회원국은 III편 및 IV편에서의 직불금 금액이 63조에 따라 회원국이 설정한 최대금액보다 낮은 농업인은, 1항에 따라 회원국이 정한 날짜까지 또는 이후연도에 농업인이 이를 분명히(expressly)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농직불에 포함되도록 규정(provide)할 수 있다. 이 규정을 활용하는 회원국은 적절한 시기(due time)에 관련 농업인들에게

소농직불로부터 철회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63조에 언급된 직불금 금액의 계산(estimate)이 회원국이 정한 신청서 제출 또는 철회(withdrawal) 날짜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농업인에게 알려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63조 직불금 금액(Amount of the payment)

1. 회원국은 소농직불(small farmers scheme)에 참여하는 각 농업인에게 다음 수준(levels) 가운데 하나에서 연간 직불금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31].

(a) 2019년의 경우 부속서 II에 설정된 국가 직불예산한도(national ceiling)에 기초하여, 2015년의 경우 33조(적격면적 신고) (1)항 및 36조(단일지역직불제) (2항)에 따라 적격면적(eligible hectares)을 신고한 농업인들 수치에 기초하여, 회원국이 설정하는 수령자(beneficiary)당 전국평균 직불금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b) 회원국이 설정하는, ha당 전국평균 직불금액에 5ha를 초과하지 않는 얼마간의 농지면적(a number of hectares)을 곱한 금액. ha당 전국평균 직불금(national average payment)은 2019년의 경우 부속서 II에 설정된 국가 직불예산한도(national ceiling)에 기초하여, 2015년의 경우 33조(적격면적 신고) (1)항 및 36조(단일지역직불제) (2항)에 따라 신고한 적격면적(eligible hectares)이 수치에 기초하여, 회원국이 설정하여야 한다.

상기 첫째문단 (a)와 (b)에서 언급한 금액은 500€와 1,250€ 이내이어야 한다. 상기 첫째문단 (a)와 (b)를 적용하여 500€보다 낮은 금액이 되거나 1,250€보다 높은 금액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최저 또는 최고 금액으로 각각 인상(round up) 또는 인하(round down) 되어야 한다.

2. 1항의 예외적 방법으로, 회원국은 참여 농업인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a) III편 및 IV편에서 매년 농업인에게 배정된 직불금 총가치와 동일금액[32] 또는

31) 일시불(일괄) 직불(lump-sum payment) 설명 조항임.
32) 매년변동직불(payment due each year) 설명 조항임.

(b) III편 및 IV편에서 2015년에 농업인에게 배정된 지불금 총가치와 동일금액. 이 금액은 부속서 II에서 설정된 연간 직불예산한도(national ceiling)에서 변화를 고려하여 이후 연도들에서 비례적으로(proportionately) 조정할 수 있다[33].
상기 첫째문단 (a)와 (b)에서 언급한 금액은 500€와 1,250€ 이내에서 회원국이 설정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 첫째문단 (a)와 (b)를 적용하여 500€보다 낮은 금액이 될 경우 회원국은 해당 금액을 500€로 인상(round up)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64조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s)
1. 소농직불에 참여하는 동안 농업인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소유하거나 임차한(leased-in) 수급권(payment entitlements)에 상응하는 적격면적의 수치, 또는 36조(단일지역직불제) (2)항에 따라 2015년에 신고한 적격면적(eligible hectares)의 수치를 최소한 유지하여야 한다.
(b) 10조(1)항 (b)호(1ha이상 농지보유)에서 제공한 최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소농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의해 32조(수급권 활성화) 및 33조(적격면적 신고)에 따라 2015년에 활성화 된(activated) 수급권(payment entitlements)은 해당 농어인의 소농직불제에 참여기간 동안 활성화 된 수급권을 간주되어야 한다.
소농직불제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수급권 또는 임차한 수급권은 31조(국가유보금 또는 지역유보금의 보충)(1)항 (b)호에 따라 국가유보금 또는 지역유보금에 반환(revert)해야 하는 미사용 수급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3. 34조의 예외적 방법으로, 소농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보유한 수급권은, 상속 또는 예상 상속(anticipated inheritance)을 제외하고, 이전할 수 없다.
상속 또는 예상 상속(anticipated inheritance)에 방법으로, 소농직불제에 참하는

33) 2015년 직불(payment due in 2015) 설명 조항임.

농업인으로부터 수급권을 받은 농업인은, 해당 농업인이 기초직불제로부터 혜택(benefit)을 받기위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수급권을 물려준 농업인이 보유한 모든 수급권을 상속한 경우, 소농직불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회원국이 63조(2)항의 세째 하위문단을 적용하지 않고(즉, 500€로 인상하지 않음) 63조(2)항 첫째 하위문단 (a)호에 기술된 지불방식을 채택할 경우(즉, 매년변동직불금 채택), 본조 1항, 2항 및 3항의 첫째 하위문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5. 법적 확실성 보장을 위해, 집행위는 위임명령을 제정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65조 재정규정(financial provisions)

1. 본 편에서 언급한 직불금 재원을 위해, 회원국은 해당 소농이 지급자격이 부여될 금액을 각각 직불금에서 이용가능한 총 금액으로부터 차감해야 한다.

(a) III편 1장에서 언급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직불제
(b) 재분배직불제
(c) 기후 및 환경을 위한 농업실행 직불금(환경직불)
(d) 자연조건불지지역직불제
(e) 청년농직불제 및
(f) 생산연계직불제

회원국이 63조(2)항 첫째문단 (a)호를 따라 직불금 금액을 계산하기로 채택한 경우, 개별 농업인에 대한 금액 합계가 회원국이 설정한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금액은 비례적으로(proportionately) 감액되어야 한다.

2. 소농직불에서 지급해야 할 모든 직불금 합계와 1항에 따라 재원조달된 총 금액의 차이는 아래 방법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재원조달되어야 한다.

(a) 관련연도에서의 30조(국가유보금 또는 지역유보금) (7)항
(b) 관련연도에서 미사용된 III편 5장의 청년농직불금 재원을 위한 기금의 이용
(c) 32조 또는 36조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직불금 대한 선형감액(linear reduction)

3. 회원국이 63조(2)항 첫째문단 (a)호에 따라 연간 직불금 금액을 설정하기로 채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 1항에서 언급한 금액에 기초한 요소들(elements)은 소농직불에서 해당 농업인의 모든 참여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소농직불에서 지급해야할 직불금 총 금액이 부속서 II에서 설정된 연간 국가 직불예산한도(national ceiling)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63조(2)항 셋째문단을 적용(최저금액을 500€로 인상)하지 않고 63조(2)항 첫째문단 (a)호 따라 직불금 금액을 설정(일시불 직불금)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10%를 준수하기(respect) 위해 본 편에 따라 지불되어야 할 금액에 선형 감액(linear reduction)을 적용해야 한다.

동일한 예외가 63조(2)항 셋째문단을 적용하지 않고 63조(2)항 첫째문단 (a)호 따라 직불금 금액을 설정하고, 부속서 II에서 2019년에 설정된 국가 직불예산한도가 2015년보다 높으며, 25조(1)항 또는 36조(2)항에서 설정한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 청년농직불(Payment for Young Farmers)

1) 제도 개요

○ 관련규정
- EU Regulation 1307/2013(공동농업정책에서의 농업인에 대한 직불제 규정, rules for direct payments to farmers under support schem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III편(title) 5장 청년농 직불(Payment for young farmers)

○ 도입목적
- 특히 EU농업인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 및 농촌사회에서 필수적인(vital)인 신규 농업인(창업농)의 농업참여 활성화
- 2013년, 50%이상 농업 경영주가 55세이상, 35세이하는 6.9%에 불과

○ 주요특징
- 회원국 의무사항
- 기간 : 최대 5년
- 추가 지급 : 최대 25% 직불금 추가 지급 가능
- 법인(legal person)도 포함
- 회원국 연간직불예산한도(national ceiling)의 2% 이내(매년 변경가능)

○ 대상
- 40세 이하 자연인으로서,
- 최초로 경영주(head of the holding)로서 농업경영체를 설립하는 자연인 또는, 청년농직불 최초신청 이전에 5년이내기간 동안 농업경영체를 운영하여 온 자연인

○ 유보금 접근 우선권
- 기초직불제 시행 회원국 경우, 청년농은 국가유보금(national reserve) 또는 지역유보금(regional reserve)에 우선 접근(priority access) 가능(회원국 의무)

・수급권(payment entitlements)이 없거나 경지면적보다 수급권이 적은 청년농에게는 중요함

・청년농(및 창업농)이 유보금에 우선 접근토록 하는 것은 회원국 의무사항임

○ 예산 : 2016년 전체 직불제의 1.23%(5억13백만€)

○ 추가 지불(top-up payment)

- 기간/추가지급 : 최대 5년 기간 동안, 최대 25% 추가 지급 가능

- 계산 방식

1) 해당 농업인이 활성화한 수급권의 가치 × 해당 농업인이 보유한 수급권(payment entitlements)의 평균가치의 25%, 또는 해당 농업인이 활성화한 수급권의 가치 × 기초직불제의 (전국평균) 단일단가(fat rate)의 25%

2) 해당 농업인이 신고한 적격면적 수치 × 단일지역직불 단가의 25%

3) ha당 전국평균직불(national average payment)의 25%

4) 연간 일시불(일괄) 직불(lump-sum payment) : 농업경영체 규모에 관계없이 지불.

청년농의 평균 적격농지 규모 × ha당 전국평균직불의 25%

・ 다만, 해당연도의 해당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직불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회원국별 계산 방식 적용

1) ha당 평균직불(average payment)의 25% 채택 : 16개국

・벨기에(BE), 덴마크(DK), 아일랜드(IE), 프랑스(FR), 사이프러스(CY), 리투아니아(LT), 라트비아(LV), 헝가리(HU), 네덜란드(NL), 오스트리아(AT), 포르투갈(PL), 슬로베니아(SI), 슬로바키아(SK), 핀란드(FI), 스웨덴(SE), 영국-북아일랜드(UK-Northern Ireland)

2) 일시불 직불(lump sum) : 1개국

・룩셈부르크(lU)

3) 기초적인 직불금의 25% :

・기초직불제 단일단가(flat rate) 적용국 : 덴마크(DK),크로아티아(HR), 포르투갈(PT), 영국-웨일즈(UK-Wales)

・단일지역직불제 운영국:불가리아(BG),체코(CZ), 에스토니아(EE), 루마니아(RO))

・수급권(payment entitlement)의 평균가치 적용 회원국 : 그리스(EL), 스페인(ES), 이태리(IT), 몰타(MT), 영국(UK-England), 영국-스코틀랜드(UK-Scotland)

- 단일최대한도(single maximum limit) 설정

・90ha로 제한 국가 : 벨기에(BE), 체코(CZ), 독일(DE), 덴마크(DK), 스페인(ES), 이태리(IT), 사이프러스(CY), 리투아니아(LT), 라트비아(LV), 헝가리(HU), 몰타(MT), 네덜란드(NL), 포르투갈(PT), 슬로베니아(SI), 핀란드(FI), 스웨덴(SE), 영국(UK-England),영국-스코틀랜드(UK-Scotland),영국-북아일랜드(UK-Northern Ireland)

・25ha로 제한 국가 : 그리스(EL), 크로아티아(HR), 영국-웨일즈(UK-Wales)

○ 회원국이 설정한 추가 적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 회원국은 청년농 직불의 최초 신청서 제출시 해당농업이이 충족해야할 기술 또는 훈련 요구조건에 관해 추가 적격기준(eligible criteria)을 설정할 수 있음

※ 회원국이 추가 적격기준을 설정하기고 결정할 경우, EU 위임규정 639/2014 49조(1)항(c)호에 따라, 회원국은 법인(legal person)의 경우에 동 적격기준이 해당 법인에 대해 효과적・장기적 통제(effective and long-term control)를 가지는 모든 청년농들이 충족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

- 기술 및 훈련(skill and training) 추가 적격기준 : 10개국(일부국은 일부 지방만 적용)

・벨기에(플랑드르지방 및 왈로니아 지방), 불가리아(BG), 아일랜드(IE), 스페인(ES), 프랑스(FR), 크로아티아(HR), 오스트리아(AT). 포르투갈(PT), 슬로바키아(SK), 영국-북아일랜드(UK-Northen Ireland)

・기술기준과 훈련기준을 모두 적용한 회원국 : 벨기에(왈로니아), 스페인(ES), 프랑스(FR), 포르투갈(PT), 슬로바키아(SK)

- 법인의 경우 법인을 통제하는 모든 청년농들에 대한 추가 적격기준 : 6개국
  ・아일랜드(IE), 스페인(ES), 크로아티아(HR), 룩셈부르크(LU), 슬로바키아(SK), 영국-북아일랜드(UK-NI)

○ 법인(legal person)에 대한 청년농 직불

-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직불제(2004년이후 가입 회원국)에서 직불금 자격이 부여된 법인이어야 함
- 청년농이 관리, 이익(benefits) 및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을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 통제(effective and long-term control)해야 함
  ・해당 법인에 대한 효과적・장기적 통제는 청년농에 의한 단독통제 뿐만 아니라 청년농과 비청년농이 공동통제하는 경우에도 해당함

○ 2016년 청년농 직불에 대한 단순화 조치 결과

- 회원국이 청년농과 비청년농이 법인을 공동통제(joint control)하는 것을 허용
- 회원국이 청년농들만이 법인을 단독통제(sole control)하는 경우 청년농 직불에 접근제한 허용
- 단독(sole) 통제는 통제에 관한 규정이며, 청년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당 법인에 동업자(partners)가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님

2) 관련규정 : EU Regulation 1307/2013

III편(title) 5장 청년농 직불(Payment for young farmers)

50조 일반규정(general rules)

1. 회원국은 1장에서 언급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직불제에서 직불급 수

급 자격이 있는 청년농(young farmers)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본장에서, 청년농(young farmers)은 다음의 자연인(natural persons)을 의미한다.

(a) 경영체의 경영주(head of the holding)로서 최초로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를 설립하는(setting up) 자연인, 또는 EU규정 1306/2013 72조(1)항에서 언급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직불제에서 최초 신청서 제출 이전의 5년동안 이미 농업경영체를 설립(운영)해 온 자연인(※주 : 경영주가 아니어도 됨)

(b) (a)호에서 언급한 신청서 제출연도에 40세이하 자연인

3. 회원국은 적정한 기술 또는 훈련 요구조건에 관해 청년농 직불에 적용하기 위해 청년농에게 객관적이고 차별없는 추가적 적격기준(eligibility criteria)을 정의할 수 있다.

4. 재정 준칙(financial discipline)의 적용을 위반하지 않고, 본 규정 7조에 따른 선형감액의 적용 및 11조에 따른 직불금 감액의 적용을 위반하지 않고, 또한 EU규정 1306/2013 63조의 적용을 위반하지 않고, 청년농 직불은 해당 농업인에 의한 수급권(payment entitlements)의 활성화(activation)에 의해, 또는 본조 36조를 적용하는 회원국에서는 해당 농업인에 의한 적격면적(eligible hectares)의 신고(declaration)에 의해, 매년 지급되어야 한다.

5. 청년농 직불은 최대 5년기간 동안 농업인별로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기간은 2항 (a)호에서 언급한 설립(setting up)과 청년농 직불을 위한 최초 신청서제출 사이에 경과된(elapsed) 연도(the number of years)에 의해 축소되어야 한다.

6. 매년, 36조를 적용하지 않는 회원국은 해당 농업인이 32조(1)항에 따라 활성화한 수급권 수치에 다음 수치를 곱하여 청년농 직불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a) 해당 농업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수급권(payment entitlements)의 평균가치의 25%

(b) 부속서 II에서 설정한 2019년 국가직불예산한도(national ceiling)의 고정비율(fixed percentage)을 33조(1)항에 따라 2015년에 신고한 모든 적격면적(eligible hectares)의 수치로 나누어서 계산된 금액의 25%. 해당 고정비율은 2015년에 22조(1)항에 따라 기초직불제를 위해 남겨진 국가직불예산한도

의 부분(share)과 같아야 한다.

7. 36조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36조에 따라 계산된 단일지역 직불제의 25%에 상응하는 수치를 해당 농업인이 36조(2)항에 따라 신고한(declared) 적격면적(eligible hectares) 수치로 곱하여 매년 청년농 직불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8. 6항 및 7항의 예외적 방법으로, 회원국은 ha당 전국 평균 직불(national average payment)의 25%에 상응하는 수치를, 해당 농업인이 32조(1)항에 따라 활성화한(activated) 수급권(entitlements) 수치 또는 해당 농업인이 36조(2)항에 따라 신고한(declared) 적격면적(eligible hectares)의 수치로 곱하여 매년 청년농 직불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ha당 전국평균 직불은 부속서 II에 설정된 2019년 국가직불예산한도를 33조(1)항 또는 36조(2)항에 따라 2015년에 신고한 적격면적 수치로 나누어 계산되어야 한다.
9. 회원국은 해당 농업인에 의해 활성화된 수급권 수치 또는 해당 농업인이 신고한 적격면적 수치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최대한도(single maximum limit)를 설정해야 한다. 해당 한도(limit)는 25이상 90이하 이어야 한다. 회원국은 6항, 7항, 8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한도를 존중(respect)해야 한다.
10. 6항에서 9항을 적용하는 대신, 회원국은 고정된 경지면적(a fixed number of hectares)을 8항에 따라 설정된 ha당 전국평균직불의 25%에 상응하는 수치로 곱하여 계산된 농업인당 일시불(lump sum) 금액으로 배정할 수 있다. 본항 첫째 하위문단에서 언급한 고정된 경지면적(the fixed number of hectares)은 33조(1)항 또는 36조(2)항에 따라 신고한 적격면적 총 수치를 2015년에 청년농직불에 신청하는 청년농 총 수치로 나누어서 계산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2015년이후 청년농 직불에 신청하는 청년농 수치 또는 청년농 농업경영체 수치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연도에는 고정된 경지면적(the fixed number of hectares)를 재계산할 수 있다. 농업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간 일시불(lump sum) 금액은 해당 연도에 EU규정 1306/2013 63조에 적용이전에 해당 농업인의 총 기초직불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 수령자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고 권리들 간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집행위는 법인이 청년농 직불을 수급 적격이 있다고 간주돌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해

70조에 따라 위임규정(delegated acts)을 제정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51조 재정규정(financial provisions)

1. 청년농 직불에 대한 재정조달을 위해, 회원국은 부속서 II에 설정된 연간 국가직불예산한도(national ceiling)의 2% 이내에서 일정 비율(%)를 사용해야 한다. 회원국은 총년농 직불을 위해 필요한 계산된 비율(estimated percentage)을 2014. 8.1일까지 집행위(Commission)에 통보해야 한다. 회원국은 매년 8.1일까지, 계산된 비율을 수정하여 그 다음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수정된 비율을 적용하기 이전연도 8.1일까지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2. 본조 1항에 기술된 최대 2%를 위반하지 않고, 특정연도에 회원국에서 청년농 직불 총 금액이 본조 4항에 따라 설정된 한도(ceiling)를 초과하며 해당 한도가 최대 2%이하인 경우, 해당 회원국은 관련연도에 30조(국가유보금 또는 지역유보금) (7)항의 첫째문단 (f)에 의해, 32조 또는 36조(2)항에 따라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직불금에 대한 선형감액(linear reduction)에 의해, 또는 이 두가지 방법(국가유보금 또는 지역유보금 활용, 선형감액) 모두에 의해, 그 차액을 재정조달해야 한다.
3. 특정연도에 회원국에서 청년농 직불 총 금액이 본조 4항에 따라 설정된 한도(ceiling)를 초과하며 해당 한도가 부속서 II에 설정된 연간 국가직불예산한도(national ceiling)의 2%에 이르는 경우, 회원국은 해당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40조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에 선형감액(linear reduction)을 적용해야 한다.
4. 본조 1항에 따라 회원국이 통보한 비율(%)에 기초하여, 집행위는 매년(on a yearly basis) 청년농 직불에 대한 상응하는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이행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집행위 위임규정(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639/2014 (EU규정 1307/2013의 보충, s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07/2013)

4장 청년농직불(Payment for Young Farmers)

49조 법인의 청년농직불 접근(access of legal persons to the payment for young farmers)

1. EU규정 1307/2013 50조(1)항에서 언급한 매년 청년농 직불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정 형태에 관계없이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 해당 법인이 EU규정 1307/2013 III편 1장에 언급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직불제에서 직불금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동규정 50조(4)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급권(payment entitlements)을 활성화하거나 적격면적을 신고한 경우

(b) EU규정 1307/2013 50조(2)항의 의미내에 있는 해당 청년농이 청년농 직불제도에서 해당 법인의 직불금을 신청한 최초연도에 관리, 이익 및 재정위기와 관련한 결정에 있어 해당 법인을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비청년농을 포함하여 여러 자연인이 해당 법인의 자본이나 관리에 참여는 경우, 해당 농업인은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통제를 단독 혹인 다른 농업인과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c) (b)에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농들 중 최소 한명은 EU규정 1307/2013 50조(3)항에 따라 회원국이 설정한 적격기준(eligible criteria)에 맞아야 한다. 법인이 단독 또는 다른 법인에 의해 공동으로 통제되는 경우, 첫째 하위문단 (b)호에서 설정한 조건들은 해당 법인을 통제하는 모든 자연인에게 적용해야 한다.

2. 1307/2013 50조(1)항에서 언급한 직불금은 1항 첫째 하위문단 (b)호에서 설정한 기준 및 적절한 경우 (c)에서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모든 청년농이 해당 법인의 통제를 중단(cease)한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3. 본조와 관련하여,

(a) '농업인(farmer)'에 대한 EU규정 1307/2013 50조(4)항에서부터 (10)항의 언

급은 본조에서 언급한 법인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construed) 한다.

(b) EU규정 1307/2013 50조(2)항 (a)호에서 언급한 기초직불제 또는 단일지역 직불제에 대한 최초 신청서 제출에 대한 언급(reference)은 청년농 직불에서 법인의 최초 직불금 신청에 대한 언급(reference)으로 해석되어야(construed) 한다.

(c) 본조 4항을 침해함이 없이, '설립(setting up)'에 대한 EU규정 1307/2013 50조(5)항 둘째 문장(sentence)의 언급(reference)은 본조 1항 둘째 하위문단 (b)호에 따라 법인을 통제하는 청년농에 의한 설립(setting up)에 대한 언급(reference)으로 해석되어야(construed) 한다.

4. 1항 첫째 하위문단 (b)호에서 언급한 여러 청년농이 서로 다른 시기에 법인의 통제를 획득한 경우에는, 가장 일찍 통제를 획득한 시기를 EU규정 1307/2013 50조(5)항에 둘째 문장(sentence)에서 언급한 '설립(setting up)'의 시기로 간주한다.

부록 2: 일본 청년취농급부금 사업 요강(2016)

청년취농급부금사업(青年就農給付金事業)[34]

제 1 사업의 내용

취농 전 연수단계 및 경영이 불안정한 취농 초기단계의 청년 취농자에 대해서 청년 취농 급부금(이하 「급부금」이라고 한다)을 급부한다.

제 2 사업의 종류

1. 준비형: 취농을 위해서, 도부현(道府縣)의 농업대학교 등의 농업경영자교육 육성기관, 선진농가 또는 선진농업법인 등(이하 「연수기관등」이라고 한다.)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업
2. 경영개시형: 경영개시 직후의 청년 취농자에 대해서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업
3. 추진사업: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市町村) 등이 실시하는 급부 등과 관련된 추진사무를 행하는 사업

제 3 사업의 구조

1. 국가는 사업실시주체에 대해서 급부금을 지급한다.
2. 사업실시주체는 본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도도부현에 보조한다.

제 4 급부주체

1. 준비형: 도도부현 또는 청년농업인등 육성센터. 단, 제8의3에서 정하는 전국형교육기관에서의 연수에 대해서는, 사업실시주체가 급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경영개시형: 시정촌

제 5 청년취농급부금의 급부요건 등 : 급부주체는,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부금을 급부한다.

1. 준비형

(1) 준비형의 급부대상자의 요건은 다음에 언급되는 대로 한다.

34) 2017년부터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農業次世代人材投資資金)으로 명칭변경

가. 취농예정시의 연령이 원칙적으로 45세 미만으로 농업경영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을 것.
나. 제6의 1 (1)의 연수계획(별지양식 제1호)이 다음에 언급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취농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기관의 경우, 도도부현(제8의 3에서 정하는 전국형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주체)이 인정하는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을 것.
(나) 연수기간은 대개 1년이며 대개 연간 1,200시간 이상으로, 연수기간을 통해서 취농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연수할 것.
(다) 선진농가 또는 선진농업법인(이하 「선진농가 등」이라고 한다.) 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이하의 요건을 충족할 것.
a. 해당선진농가 등의 경영주가 급부대상자의 친족 (3촌등이내의 자를 말함. 이하 동일) 이 아닐 것.
b. 해당선진농가 등과 과거 고용계약 (단기간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제외) 을 체결한 적이 없을 것.
c. 해당선진농가 등이 기술력, 경영력 등에서 볼 때, 연수처로서 적절할 것 (도도부현 및 지도센터, 시정촌의 추천이나 과거의 연수실적 등, 제반 정보에 의해 판단) .
다. 상근 (주35시간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노동하는 것을 말함, 이하 동일) 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을 것.
라. 원칙적으로 생활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국가의 다른 사업에 의한 급부를 받고 있지 않을 것.
마. 연수종료후 친가에 취농(친족이 경영하는 농업경영체에 취농하는 것을 말함. 이하 동일) 할 예정인 경우에는, 취농할 때 가족경영협정 등에 따라 급부대상자의 책임과 역할(농업에 전념할 것, 경영주가 급여를 지급할 등) 을 명확히 할 것, 그리고 취농 후 5년이내에 해당 농업경영을 계승하거나 또는 해당 농업경영이 법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경영자(친족과 공동경영자가 되는 경우도 포함. 이하「농업경영의 계승」이라고 함) 로 하는 것을 확약할 것
사.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성경영국이 운영하는 청년신규취농자 네트워크(이하 「일농(一農)넷」이라고 함) 에 가입해 있을 것.
(2) 급부금액 및 급부기간: 급부금의 금액은 급부기간 1년당 1인당 150万円으로 한다. 또한 급부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3) 아래에 언급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급부주체는 급부금의 급부를 정지한다.
가. (1)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나. 연수를 도중에 중지한 경우.

다. 연수를 도중에 정지하게 된 경우.
라. 제6의1 (4) 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제7의1 (4) 의 연수실시상황의 현지확인 등에 의해, 적절한 연수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 연수주체가 판단한 경우 (예 : 연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생산기술 등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 .
바. 제10의 3에서 정한 국가가 실시하는 보고의 징수 또는 입회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4) 다음에 언급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급부대상자는 급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단, 질병 및 재해 등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사정으로 급부주체가 인정한 경우(나.(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일부반환
(가) (3)의 가부터 다까지 및 바에 언급된 요건에 해당되는 시점이 이미 급부한 급부금의 대상기간중인 경우에는, 남은 대상기간의 개월수에 해당하는 부분(당해요건에 해당된 달을 포함)의 급부급을 월단위로 반환한다.
(나) (3)의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보고에 관련된 대상기간의 급부금을 반환한다.

나. 전액반환
(가) (3)의 마에 해당하는 경우.
(나) 연수 (제6의 1 (7) 의 가의 계속연수를 포함) 종료 후 (연수중지이후도 포함. 이하 동일.)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45세 미만으로, 독립·자영취농 (2의 (1) 나에서 정한 요건((가)의 단서의「급부기간중」을「취농후5년 이내」로 바꿔 읽음)을 충족하지 경우에 한정된다. 이하 동일), 고용취종 (농업법인 등에 상근하는 것을 말함. 이하 동일) 또는 친족취농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친족취농을 한 사람이, (1) 의 마에서 확약한 것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라) 독립·자영취농 또는 고용취농을 급부기간의 1.5배 또는 2년 중 긴 기간 동안 계속하지 않은 경우.
(마) 급부기간의 1.5배 또는 2년 중 긴 기간 이내에 제6의 1(7) 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바) 허위신청 등을 행한 경우.

2 경영개시형

(1) 경영개시형의 급부대상자의 요건은 다음에 언급된 대로 한다.

가. 독립·자영취농시의 연령이 원칙적으로 45세 미만으로 농업경영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을 것.

나. 다음에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ㆍ자영취농일 것.

(가) 농지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급부대상자가 가지고 있을 것. 단, 친족으로부터 대차한 농지가 주가 되는 경우는, 급부기간 중에 해당농지의 소유권을 급부대상자에게 이전하기로 확약하는 경우. 즉, 조세특별조치법 (1957년 법률제26호) 제 70조4 제6항에 규정한 특별부가연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설정을 한 경우, 동조 제22항에 규정한 영농곤란시 대부에 의한 권리 설정을 한 경우 및 동법 제70조4의2 제1항에 규정한 특정대부의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주요한 농업기계ㆍ시설을 급부대상자가 소유 또는 빌린 경우.

(다) 생산물 및 생산자재 등을 급부대상자 명의로 출하ㆍ거래할 것.

(라) 급부대상자의 농산물 등의 매출 및 경비의 지출 등 경영수지를 급부대상자 명의의 통장 및 장부로 관리할 것.

(마) 급부대상자가 농업경영에 관한 주재권을 가지고 있을 것.

다. 기반강화법 제14조의4 제1항에 규정한 청년등의취농계획 인정을 받은 자일 것. 단, 급부기간 중에, 동법 제14조의5 제2항에 규정한 인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한 인정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청년등의취농계획에 청년취농급부금신청추가자료를 첨부한 것이 (이하「청년등취농계획등」이라고 함) 다음에 언급된 요건에 적합한 경우.

(가) 농업경영을 시작해서 5년후까지 농업 (농업생산 이외에 농산물 가공, 직접판매, 농가 레스토랑, 농가민박 등 관련사업을 포함) 으로 생계가 성립하는 계획일 것.

(나) 계획의 달성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망될 것.

마.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승하는 경우, 계승할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계승해서 농업경영을 개시, 또 급부기간 중에 신규작목의 도입, 경영의 다각화 등 경영발전을 위한 대처를 해서, 신규참가자(토지 및 자금을 독자적으로 조달, 새로 농업경영을 개시한 자를 말함)와 동등한 경영리스크를 지고 경영을 개시하는 청년등취농계획등이라고 시정촌의 장에게 인정받을 것. 또한, 1호1법인(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외의 농업법인을 승계하는 경우는 급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급부대상자가 농업경영을 법인화하고 있는 경우는 나의 (가) 및 (나) 의「급부대상자」를「급부대상자 또는 급부대상자가 경영하는 법인」으로, (다) 및 (라) 의「급부대상자」를「급부대상자가 경영하는 법인」으로 바꾸어 읽는다.)

바. 인ㆍ농지계획(人ㆍ農地プラン: 지역농업계획)에 중심이 되는 경영체

가 되거나 또는 될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될 것, 혹은 농지중간관리기구로부터 농지를 빌리고 있을 것 (이하「인·농지계획에 위치를 정한 자 등」이라고 함).

사. 원칙적으로 생활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국가의 기타 사업에 의한 급부 등을 받지 않고, 또한 원칙적으로 '농업고용사업'에 의한 조성을 받은 적이 있는 농업법인 등이 아닐 것.

자. 원칙적으로 一農넷에 가입되어 있을 것.

카. 2011년 4 월 이후에 농업경영을 시작한 자일 것.

(2) 급부금액 및 급부기간

가. 급부금의 금액은, 경영개시첫해는 급부기간 1년마다 1인당 150만엔을 급부하고, 경영개시 2년차 이후는 급부기간 1년마다 1인당 350만엔으로부터 전년도 총소득(농업경영개시이후의 소득에 한하며, 급부금은 제외. 이하 동일.)을 뺀 금액에 3/5배를 해서 얻은 금액 (1 엔 미만은 버린다) 을 급부한다. 단, 전년도 총소득이 100만엔 미만인 경우는 150만엔을 급부한다. 또한, 급부기간은 최장5년간(2015년도 이전에 경영을 개시한 자에 있어서는 경영개시이후 5년차까지)으로 한다.

나. 부부로서 농업경영을 개시해서,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급부기간1년마다 부부합산을 해서, (2) 의 가의 금액에 1.5배를 해서 얻음 금액(1 엔미만은 버린다) 을 급부한다.

(가)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부부가 공동경영자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을 것.

(나) 주요한 경영자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것.

(다) 부부가 공동으로 인·농지계획에 등으로 되어 있을 것.

다. 복수의 청년취농자가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공동경영하는 경우는, 당해 청년취농자(당해 농업법인 및 청년취농자 각각이 인·농지계획에 위치를 정한 자 등에 한한다.)에 급부기간 1년마다 각각 (2) 의 가의 금액을 급부한다. 또한, 경영개시이후 5년이상 경과한 농업자가 법인을 경영하는 경우는, 급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음에 언급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급부주체는 급부금의 급부를 정지한다.

가. (1)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나. 농업경영을 중지한 경우.

다. 농업경영을 정지한 경우.

라. 제 6 의2의(6) 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제 7 의 2 의(4) 의 취농상황의 현지 확인 등에 의하여, 적절한 농업경영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급부주체가 판단한 경우 (예 : 청년등취

농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경영자산을 축소한 경우, 경작해야 할 농지를 유휴화한 경우, 농작물을 적절히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농업생산등에 종사한 일수가 일정 (연간150일 및 연간1,200시간) 미만인 경우, 급부주체로부터 개선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대처를 행하지 않은 경우 등).

바. 제10의 3 에서 정한 국가가 실시하는 보고의 징수 또는 입회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사. 급부대상자의 전년도 총소득이 350만엔이상인 경우 (그 이후, 350만엔을 하회한 경우는 다음해부터 급부를 재개하는 것이 가능함) .

(4) 다음에 언급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급부대상자는 급부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가에 해당하는 경우로, 질병이나 재해 등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사정으로 급부주체가 인정한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3) 의 가부터 바까지 언급된 사항에 해당한 시점이 이미 급부한 급부금의 대상기간중인 경우에는, 잔여 대상기간의 개월분(당해사항에 해당되게 된 달을 포함.)의 급부금을 월단위로 반환한다.

나. 허위의 신청등을 한 경우는 급부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 (1) 의 나의 (가) 의 단서에 의한 급부기간중에 농지의 소유권 이전이 행해진 경우는 급부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 6 급부대상자의 절차(手続)

1 준비형

(1) 연수계획의 승인신청: 준비형의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계획을 작성해서, 급부주체에 승인을 신청한다.

(2) 연수계획의 변경신청: (1) 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연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계획의 변경을 신청한다 (연수기간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연수내용의 추가, 매월의 연수내용의 순번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

(3) 급부신청: (1) 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급부신청서를 작성해서, 급부주체에 급부금의 급부를 신청한다. 급부의 신청은 반년 또는 1년을 단위로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하는 급부금의 대상기간의 최초일부터 1년 이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급부신청의 대상기간이 반년 미만인 경우는, 신청 금액은 연수기간을 월별로 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한다.

(4) 연수상황보고: 준비형의 급부를 받은 자 (이하「준비형수급자」라고 한다.) 는 연수상황보고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제출은 반년마다 행

하며, 급부대상기간 경과이후 1년이내에 행한다.

(5) 급부의 중지: 준비형수급자는 준비형의 수급을 중지하는 경우 급부주체에 중지신고서를 제출한다.

(6) 급부의 정지(休止)

가. 준비형수급자는 질병 등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연수를 정지하는 경우, 급부주체에 정지신고서를 제출한다.

나. 가의 정지신고서를 제출한 준비형수급자가 연수를 재개하는 경우는 연수재개신고서를 제출한다.

(7) 연수종료후의 보고

가. 취농상황보고: 준비형수급자는, 연수종료 이후 5년간(단 , 제5의1(1)의 마에 언급된 친족취농을 하는 경우 또는 제5의1 (4) 의 나의 (나) 에 규정한 친족으로부터 대차한 농지를 주로 해서 독립ㆍ자영취농을 하는 경우는, 연수종료 이후 6년간) , 매년 7월말 및 1월말까지 그 직전의 6개월간의 취농상황보고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또한, 준비형의 수급 종료 이후, 계속해서 수급대상이 되는 연수에 준하는 연수(이하 「계속연수」라고 한다.) 를 행한 경우는, 계속연수계획을 작성해서, (1) 의 수속에 준해서 급부주체에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연수개시이후 1개월이내에 계속연수신청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계속연수는 준비형의 수급 종료 이후 1개월이내에 개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한다. 계속연수를 행하는 경우, 제5의1 (4) 의 나의 (나) 의 연수종료 이후 1개월이내는 계속연수 종료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또는, 계속연수의 기간 중에 (4)의 규정에 준해서, 급부주체에게 연수의 실시상황 보고를 행해야 한다.

나. 주소등변경신고: 준비형수급자는, 급부기간내 및 급부기간 종료후 5년간 성명, 거주지 또는 전화번호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주소등변경신고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다. 취농보고: 준비형수급자는, 연수종료 후, 독립ㆍ자영취농, 고용취농 또는 친족취농한 경우에, 취농 후 1개월 이내에 취농보고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8) 반환면제: 준비형수급자는, 제5의1 (4) 의 질병 및 재해 등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면제신청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9) 신청창구

가. 연수예정지의 도도부현의 급부주체가 신청창구가 되어, 급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제8의3에서 정한 전국형교육기관에서의 연수로 사업실시주체로부터 급부를 받는 경우, 전국형교육기관이 신청

창구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준비형수급자의 취농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도도부현의 급부주체와 취농예정지의 도도부현의 급부주체가 조정을 한 후, 취농예정지의 도도부현의 급부주체로부터 급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급부주체와 취농예정지의 시정촌이 조정을 한 위에,시정촌을 신청장구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경영개시형

(1) 청년등취농계획등의 승인신청: 경영개시형의 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년등취농계획등을 작성해서 급부주체에 승인을 신청한다.

(2) 청년등취농계획등의 변경신청: (1) 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청년등취농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계획의 변경을 신청한다 (추가 설비변경을 요하지 않는 정도의 경영면적의 확대 또는 품목별 경영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

(3) 급부신청: (1) 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급부신청서를 작성해서, 급부주체에 급부금의 급부를 신청한다. 급부의 신청은 반년 또는 1년을 단위로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하는 급부금의 대상기간의 최초일부터 1년 이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신청대상은 2015년 4월 이후의 농업경영으로 한다.

(4) 급부의 중지: 경영개시형의 급부를 수급한 자(이하「개시형수급자」라고 함.)는, 개시형의 수급을 중지하는 경우 급부주체에 중지신고서를 제출한다.

(5) 급부의 정지

가. 개시형수급자는, 질병 등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취농을 정지하는 경우, 급부주체에 정지신고서를 제출한다.

나. 가의 정지신고서를 제출한 개시형수급자가 취농을 재개하는 경우는 경영재개신고서를 제출한다.

(6) 취농보고등

가. 취농상황보고: 개시형수급자는, 급부기간내 및 급부기간 종료후 3년간 매년 7월말 및 1월말까지 그 직전의 6개월간의 취농상황보고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나. 주소등변경보고: 개시형수급자는, 급부기간내 및 급부기간 종료후 3년간 성명, 거주지 또는 전화번호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주소등변경신고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7) 반환면제: 개시형수급자는, 제5의2 (4) 의 질병 및 재해 등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면제신청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8) 신청창구

가. 당해급부대상자가 위치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인ㆍ농지계획의 책정시정촌이 신청창구가 되어, 급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인ㆍ농지계획의 책정시정촌과 개시형수급자의 거주시정촌이 다른 경우, 양 시정촌간 조정을 한 위에, 거주하는 시정촌으로부터 급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7 급부주체의 절차(手続) 등

1 준비형

(1) 연수계획의 승인: 급부주체는 준비형의 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연수계획의 승인신청이 있은 경우, 연수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다. 심사 결과, 제 5 의 1 (1) 의 요건을 충족하고, 급부급을 급부해서 연수의 실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계획을 승인하고 심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심사함에 있어서, 도도부현보급지도센터등의 관계기관을 포함한 관계자로 면접등을 실시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연수계획 변경의 승인: 급부주체는 연수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 (1) 의 수속에 준해서 승인한다.

(3) 급부금의 급부: 급부금의 급부신청을 받은 급부주체는 신청의 내용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급부금을 급부한다. 급부금의 급부는 반년도분을 단위로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연수계획의 승인 후 신속히 급부금의 급부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급부주체의 판단에 의해, 1년분의 급부금을 일괄해서 급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연수실시상황의 확인: 연수상황보고를 받은 급부주체는, 연수기관 및 도도부현보급지도센터의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연수계획에 맞게 필요한 기능의 습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수 실시상황을 확인해서,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 또는 필요한 경우 도부현의 농업대학교등의 농업경영자육성교육기관 및 도도부현보급지도센터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경영에 관한 연수 등의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 확인은 연수상황확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이하의 방법에 의해 행한다. 또한, 연수종료 후 바로 급부대상자가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연수상황보고를 받은 이후에 급부대상자와의 면담실시가 곤란한 경우는 연수상황보고를 받기 전에 급부대상자와의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 급부대상자와의 면담

(가) 기술의 습득상황

(나) 취농을 위한 준비상황
나. 지도자와의 면담
(가) 기술의 습득상황
(나) 취농을 위한 준비상황
다. 서류확인
(가) 성적표(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경우)
(나) 출석상황

(5) 계속연수계획의 승인: 계속연수계획의 제출을 받은 급부주체는 (1)의 수순에 준해서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제5의1 (1)의 요건」을 「제5의1 (1)의 가 및 나의 요건」으로 바꿔 읽는다.

(6) 취농상황의 확인: 급부주체는 취농상황 보고를 제출한 준비형수급자의 취농상황을 준비형 급부기간의 1.5배 또는 2년간 중 긴 기간동안, 반년마다 확인한다. 단, 제6의1 (7)의 가의 단서에 의한 경우는, 농업경영을 승계 또는 농지를 이전했다고 하는 취농상황보고의 제출이 있은 시점에도 그 상황을 확인한다. 확인은 이하와 같이 행하는 것으로 하고, 급부금을 급부한 급부주체의 도도부현과 다른 도도부현에 취농한 자 및 사업주체가 급부금을 급부한 자에 관해서는 취농지의 도도부현과 협력해서 확인을 한다.

가. 개시형수급자: 2의 (4)에 의한 확인결과에 대해서, 3의 (2)의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한다.
나. 농업 고용사업 연수생으로 되어있는 자 : 별기2의 제6의6에 의한 확인결과에 대해서, 농업 고용사업 사업실시주체에 조회한다.
다. 가 또는 나 이외의 자: 2의 (4)에 준해서 확인한다.

(7) 급부의 중지: 급부주체는 준비형수급자로부터 중지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경우, 또는 제5의1 (3)의 가, 나, 라 혹은 마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급부금의 급부를 중지한다.

(8) 급부의 정지
가. 급부주체는 준비형수급자로부터 정지신고서의 제출이 있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부금의 급부를 정지한다. 또한,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급부금의 급부를 중지한다.
나. 급부주체는 준비형수급자로부터 연수재개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경우, 적절히 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부금의 급부를 재개한다.

(9) 반환면제: 급부주체는 준비형수급자로부터 제출된 반환면제신청서의 신청내용이 제5의1 (4)의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급부금의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10) 신청창구

가. 연수예정지의 도도부현의 급부주체가 신청창구가 되어, 급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제 8 의 3 에서 정한 전국형교육기관에서의 연수로 사업실시주체로부터 급부를 받는 경우, 전국형교육기관이 신청창구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준비형수급자의 취농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도도부현의 급부주체와 취농예정지의 도도부현의 급부주체가 조정을 한 위에, 취농예정지의 도도부현의 급부주체로부터 급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급부주체는 준비형수급자의 취농예정지의 시정촌과 조정을 한 위에, 시정촌을 신청장구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11) 급부정보 등의 등록: 급부주체는 연수계획 및 급부신청서의 제출이 있은 경우, 청년취농급부금급부대상자 데이터베이스(이하「데이터베이스」라고 함.) 에 급부정보 등을 신속히 등록한다.

2 경영개시형

(1) 청년등취농계획등의 승인: 급부주체는 경영개시형의 급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청년등취농계획등의 승인신청이 있은 경우, 청년등취농계획등의 내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 제 5 의2 (1) 의 요건을 충족하고, 급부급을 급부해서 경영의 개시 및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등취농계획등을 승인하고 심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심사함에 있어서, 도도부현보급지도센터등의 관계기관 및 지도농업사등을 포함한 관계자에 의한 면접등의 실시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청년등취농계획등의 변경 승인: 급부주체는 청년등취농계획등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 (1) 의 수속에 준해서 승인한다.

(3) 급부금의 급부: 급부금의 급부신청을 받은 급부주체는 신청의 내용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급부금을 급부한다. 급부금의 급부는 반년도분을 단위로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청년등취농계획등의 승인 후 신속히 급부금의 급부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급부주체의 판단에 의해, 1년분의 급부금을 일괄해서 급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취농상황의 확인: 취농상황보고를 받은 급부주체는, 도도부현보급지도센터 등 관계기관 및 지도농업사등을 포함한 관계자와 협력해서 청년등취농계획등에 맞게 계획한 취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시상황을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도도부현보급지도센터 등 관계기관 및 지도농업사등을 포함한 관계자와 연계해서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 확인은 취농상황확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이하의 방법에 의해 행한다.

가. 개시형수급자와의 면담

(가) 청년등취농계획등 달성을 위한 대처상황

나. 경작지 확인
(가) 경작해야할 농지가 유휴화되어 있지 않은가
(나) 농작물을 적절히 생산하고 있는가
다. 확인서류
(가) 작업일지
(나) 장부

(5) 급부의 중지: 급부주체는 개시형수급자로부터 중지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경우, 또는 제5의2(3)의 가, 나 혹은 라부터 바까지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급부금의 급부를 중지한다.

(6) 급부의 정지
가. 급부주체는 개시형수급자로부터 정지신고서의 제출이 있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부금의 급부를 정지한다. 또한,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급부금의 급부를 중지한다.
나. 급부주체는 개시형수급자로부터 경영재개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경우, 적절히 농업경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부금의 급부를 재개한다.

(7) 반환면제: 급부주체는 개시형수급자로부터 제출된 반환면제 신청서의 신청내용이 제5의 2(4)의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급부금의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8) 신청창구
가. 당해급부대상자가 위치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인·농지계획의 책정시정촌이 신청창구가 되어, 급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인·농지계획의 책정시정촌과 개시형수급자의 거주시정촌이 다른 경우, 양 시정촌간 조정을 한 위에, 거주하는 시정촌으로부터 급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9) 급부정보 등의 등록: 급부주체는 청년등취농계획등 및 급부신청서의 제출이 있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급부정보 등을 신속히 등록한다.

(10) 상담체제의 정비: 급부주체는 수급자의 영농상 모든 과제의 상담에 응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11) 교류회의 개최: 도도부현은, 급부대상자를 포함하여 신규취농자등의 교류회를 개최한다.

3 급부대상자 정보의 공유

(1) 사업실시주체는 급부대상자의 급부금의 급부정보 등을 집약해서, 필요에 따라서 본 사업에 관계하는 관계기관 간 당해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국가, 사업실시주체 및 급부주체 등은 수급자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급부대상자가 정착해서 지역의 중심이 되는 농업경영자가 될

때 까지, 더욱 세심한 팔로우업에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급부상황의 확인, 중복 및 허위신청의 확인을 위해서 이용한다.

(2) (1)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실시주체는 급부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운용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급부주체에 의한 급부정보 등의 등록상황을 확인해서, 등록 및 갱신이 적절히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경우, 급부주체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등록 등을 완료하도록 촉구하는 등, 등록상황의 관리를 적절히 행한다. 더불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또는 갱신한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국가에 제출한다.

(3) 급부주체등 (준비형의 급부주체가 청년농업자육성센터인 경우는 도도부현을 포함)은

(2) 의 데이터베이스에 급부정보 등을 신속하게 등록한다.

(4) 급부대상자가 준비형의 급부금의 급부를 받은 도도부현과 다른 도도부현에서 취농한 경우 및 사업실시주체가 급부금을 급부한 자가 취농한 경우는 취농지 도도부현이 취농상황의 확인에 협력한다.

(5) 국가, 사업실시주체 및 급부주체 등은 본 사업의 실시에 임하여 얻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적절히 취급한다.

제8 사업계획 등

1 사업계획의 작성

(1) 청년취농급부금사업계획의 작성

가. 사업실시주체는 청년취농급부금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경영국장의 승인을 얻는다.

나. 가의 승인을 얻은 청년취농급부금사업계획을 변경, 제2의1 및 2의 경비를 3에 유용하는 경우는 경영국장의 승인을 얻는다.

(2) 도도부현청년취농급부금사업계획의 작성

가. 도도부현은 청년취농급부금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방농정국장의 승인을 얻는다.

나. 지방농정국장은 가의 승인 후, 승인한 도도부현청년취농급부금사업계획을 경영국장에게 보고한다.

다. 가의 보고를 받은 경영국장은 도도부현청년취농급부금사업계획을 사업실시주체에 통지한다.

(3) 경영개시형급부계획의 작성: 시정촌은 경영개시형급부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의 승인을 얻는다.

(4) 준비형급부계획의 작성: 청년농업자육성센터가 준비형의 급부주체인 경우, 청년농업자육성센터는 준비형급부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의

승인을 얻는다.

(5) 계획의 중요한 변경: (2) 의 도도부현청년취농급부금사업계획, (3) 의 경영개시형급부계획 및 (4) 의 준비형급부계획에 관해서 이하의 항목에 관한 변경을 행하는 경우, 각각의 수속에 준해서 행한다.

가. 신규취농자수에 관한 목표
나. 급부금의 급부계획에 대한 급부금총액
다. 준비형 급부주체 및 연수기관등
라. 추진사업비의 증가

2 사업실시주체로부터 도도부현에의 보조

(1) 1의 (2) 의 승인을 받은 도도부현은 승인받은 계획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지불을 청구할 때는, 지불청구서를 사업실시주체에 제출한다.

(2) (1) 의 제출을 받은 사업실시주체는 도도부현에 보조금을 지불한다.

3 전국형교육기관: 소재하는 도도부현에의 취농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 (이하「전국형교육기관」이라 함) 에서 연수를 받는 취농희망자에 대해서는, 사업실시주체로부터 준비형을 급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자금의 관리

(1) 사업실시주체는, 2015년 2월3일 보다 이전에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에 의해 적립된 자금 (이하「기존자금」이라 함) 과, 2015년 2월3일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을 구분해서 관리한다.

(2) 사업실시주체는, 금융기관에의 예금에 의해 기존자금을 운용한다.

(3) 사업실시주체는, 기존자금의 관리, 개인정보의 취급 등에 관해 정한 사업실시에 관한 내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내규작성시 또는 변경한 때에 경영국장의 승인을 얻는다.

(4) 사업실시주체는, 기존자금의 운용수입 및 기존자금을 헐어서 생긴 수입에 관해해서는 본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고, 그 밖의 비용에 충당해서는 안된다.

(5) 사업실시주체는, 헤이세이27년2월3일 보다 이전에 신청이 있었던 자의 도도부현으로부터의 보조금의 반환 또는 준비형수급자로부터의 급부금의 반환이 있은 경우, 이것을 기존자금에 편입한다.

(6) 사업실시주체는, 기존자금을 본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헤이세이32년3월31일에 기존자금에 잔여가 있은 경우는, 국가에 반환한다. 또는, 국가는 상기의 경우 이외에도「보조금등의 교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등에 관한 기준 (2006년8월15일 각의결정)」3의 (4) 의 가를 준용해서, 사용전망이 낮은 기존자금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잔액을 납부시키는 경우가 있다.

5 사업실적보고의 작성

(1) 청년취농급부금사업실적보고의 작성: 사업실시주체는, 매년도의 사업완료 후, 청년취농급부금사업실적보고를 9월말까지 경영국장에게 보고한다. 또는, 기존자금에 의한 사업에 관해서는 매년도의 당해사업완료 후, 청년취농급부금기금사업자금결산보고서를 6월말까지 경영국장에게 보고한다. 실적보고의 작성에 즈음해서 전국형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급부대상자의 연수계획의 추진상황, 달성상황의 평가를 행한다.

(2) 도도부현청년취농급부금사업실적보고의 작성

가. 도도부현은 청년취농급부금사업실적보고를 작성해서, 사업실시년도의 다음해 9월9월말까지 지방농정국장에게 보고한다. 도도부현이 준비형의 급부주체인 경우는, 청년취농급부금사업실적보고의 작성에 즈음해서, 연수기관등과 연계하여, 급부대상자의 연수계획의 추진상황, 달성상황의 평가를 행한다.

나. 지방농정국장은 가의 보고를 받은 후, 당해 도도부현청년취농급부금사업실적보고를 경영국장에게 보고한다.

다. 나의 보고를 받은 경영국장은 도도부현청년취농급부금사업실적보고를 사업실시주체에 통지한다.

(3) 경영개시형급부실적보고의 작성: 시정촌은, 경영개시형급부실적보고를 작성해서 도도부현에 보고한다. 또한, 경영개시형급부실적보고에 즈음해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급부대상자의 경영개시계획의 추진상황, 달성상황의 평가를 행한다.

(4) 준비개시형급부실적보고의 작성: 청년농업자육성센터가 준비형의 급부주체인 경우, 청년농업자육성센터는 준비형급부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도부현에 보고한다. 또한, 준비형급부실적보고에 즈음해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급부대상자의 연수계획의 추진상황, 달성상황의 평가를 행한다.

(5) 국가에 의한 팔로우업: 국가는 (1) 및 (2) 의 보고를 포함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실시주체 및 도도부현에 대해서 지도조언을 행한다.

제 9 추진사업

급부금의 급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급부주체등 (급부주체 (경영개시형에 있어서는 도도부현을 포함) 또는 사업실시주체를 말함. 이하 이 제9에서 동일) 은 추진주체로서 이하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사업비의 대상경비는 별표에 따르고, 사업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급부주체등의 회계에 속하는 급부금 및 추진사업비의 예탁에 관계되는 이자수입은 급부금 급부에 필요한 추진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1. 급부금의 급부사업의 실시에 관계되는 사무
2. 급부금의 급부사업의 보고활동
3. 급부금의 급부사업의 급부대상자 지도활동

제10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의 확보

1. 급부주체는, 본사업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급부대상자에 대해서 지역사업의 진흥에 노력할 것을 충분히 주지한다.
1. 국가는, 급부주체등의 협력을 얻어서, 급부주체등이 신규취농자의 확보 및 취농 후의 정착에 성공한 우량사례를 수집ㆍ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관계기관이 이들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신규취농자의 확보 및 정착을 목표로 한 대처를 행하도록 지도한다.
1. 국가는, 본사업이 적절히 실시되었는지 및 본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사업의 실시주체, 도도부현, 시정촌, 본사업에 관계되는 기관 및 급부대상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하고, 또한 현지에 입회조사를 행할 수 있다.
1. 국가는, 허위 및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서, 원래 수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급부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부정행위를 행한 자의 성명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

<주요 양식>

研　修　計　画

平成　　年　　月　　日

殿

住　所：
氏　名：　　印
［申請者］　電話番号：
（生年月日：　　年　　月　　日：　　歳）
ﾒｰﾙｱﾄﾞﾚｽ：

新規就農・経営継承総合支援事業実施要綱（平成24年4月6日付け23経営第3543号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知）別記1第6の1の（1）の規定に基づき研修計画の承認を申請します。

なお、第7の3の規定に基づき本計画の内容を含め、本事業に係る給付対象者の情報は関係機関において共有されることに同意します。

1　農業を始めようと思った理由

2　就農時に係る計画 ＊1

就農希望地		就農予定時期	年　　月
就農形態	□新たに農業経営を開始 □親（三親等以内の親族を含む。以下同じ。）の農業経営とは別に新たな部門を開始 □親の農業経営を継承 〔□全体、□一部〕 □雇用就農 □親元就農 〔□親の経営の全体を継承、□法人の（共同）経営 経営継承（法人の場合は経営者となる）予定時期　　年　　月〕		
経営面積＊2 飼養頭羽数	_____a・頭・羽（合計）	農業所得目標＊2	万円/年

経営内容＊2	作目：　　＿＿＿＿a 作目：　　＿＿＿＿a （その他：　　）

3　将来の就農ビジョン（生産物の販売方法などを記載）

4　計画を達成するための研修 ＊1＊3

① 研修内容等

名　称		所　在　地	
専　攻　・ 営農部門		研修期間	年　月　日 ～　年　月　日

② 給付期間（準備型）

年　月　日 ～　年　月　日

5　その他

常勤の雇用契約の締結	□　締結している □　締結していない
生活費の確保を目的とした国の他の事業による給付（例：生活保護制度、雇用保険制度（失業手当）等）	□　給付されている □　給付されていない
青年新規就農者ネットワーク（一農ネット）への加入	□　加入している □　加入していない

添付書類

別添１：研修実施計画（先進農家等で研修を受ける場合は添付し、教育機関等で研修を受ける場合は、受講する研修のカリキュラム及び入学が認められていることを証する書類を添付。）
別添２：誓約書
別添３：履歴書
別添４：離職票の原本（離職票の提示が可能な場合）
別添５：農業研修に関する確認書（教育機関等で研修を受ける場合は不要。）
別添６：確約書（研修終了後、親元就農する予定の場合）
別添７：別紙様式第２号の別添８の確約書（親族から貸借した農地が主で独立・自営就農する予定の場合）

＊１　２及び４の①の内容について、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し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に基づく就農計画に記載しており、当該計画が都道府県知事から認定を受けている場合は、就農計画を添付することで、２及び４の①の記載を省略できる。
＊２　就農５年後の目標を記入する（雇用就農又は親元就農の場合は記入不要）。
＊３　研修先が複数の場合は記入欄を追加して記入する。

青年就農給付金（準備型）給付申請書

平成　　年　　月　　日

殿

氏　名　　　　　　　　　印

新規就農・経営継承総合支援事業実施要綱（平成24年4月6日付け23経営第3543号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知）別記１第６の１の（３）の規定に基づき青年就農給付金（準備型）の給付を申請します。

給付期間	年　月　日			～	年　月　日			
今回申請する給付金の対象期間	年　月　日			～	年　月　日			
給付申請額					０	０	０	円
常勤の雇用契約の締結	□　締結している　□　締結していない							
生活費の確保を目的とした国の他の事業による給付（例：生活保護制度、雇用保険制度（失業手当）等）	□　給付されている　□　給付されていない							

給付金の振込口座※

金融機関店舗名等	銀行　信用金庫　信用組合　労働金庫 農業協同組合　連合会　農林中金		店・所	出張所	
	金融機関コード				
	預金・貯金の種類	普通預金・当座預金	口座番号		
	郵便局	記号		（当座）番号	
口座名義人	（ふりがな） 氏　名				

添付書類
・身分を証明する書類（運転免許証、パスポート等の写し）※
・離職票の原本（離職票の提示が可能な場合）
※　２回目以降の申請については、前回から変更が無い場合は記入（添付）しなくてもよい。

青年就農給付金（経営開始型）給付申請書

平成　　年　　月　　日

殿

氏　名　　印

新規就農・経営継承総合支援事業実施要綱（平成24年4月6日付け23経営第3543号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知）別記1第6の2の（3）の規定に基づき青年就農給付金（経営開始型）の給付を申請します。

給付期間	年　月　日	～	年　月　日
今回申請する給付金の対象期間	年　月　日	～	年　月　日
前年の総所得※1 農業経営開始後の所得に限り、給付金を除く額※2を記載	（ア）		円
今年の給付金額※3、4 経営開始初年度の場合：150万円 経営開始2年目以降の場合： （350万円－（ア））×3/5で算出した額を記載 ただし、（ア）が100万円未満の場合は150万円	（イ）		円
今回の給付申請額※3 原則として（イ）の半額を記載			円
生活費の確保を目的とした国の他の事業による給付 （例：生活保護制度、雇用保険制度（失業手当）等）	□　給付されている □　給付されていない		

※1　経営開始初年度の場合は0円と記載すること。
※2　地方税法第292条第1項第13号に定める「合計所得金額」から前年の給付金を除く額。
※3　1円未満は切り捨てとする。
※4　夫婦で受給している場合、この額の1.5倍を記載すること。

給付金の振込口座※

金融機関店舗名等	銀行　信用金庫　信用組合　労働金庫 農業協同組合　連合会　農林中金		店・所	出張所
	金融機関コード			
	預金・貯金の種類	普通預金・当座預金	口座番号	
	郵便局　記号		（当座）番号	
口座名義人	（ふりがな） 氏　名			

添付書類
・農地及び主要な農業機械・施設の一覧及び契約書等の写し※
・身分を証明する書類（運転免許証、パスポート等の写し。（夫婦で給付申請する場合はそれぞれの書類））※
・離職票の原本（離職票の提示が可能な場合）
・税務署等の収受印のある確定申告書の写し（前年の所得証明書発行以前に給付申請を行う場合）
※　2回目以降の申請については、前回から変更が無い場合は記入（添付）しなくてもよい

青年等就農計画認定申請書

平成○○年　○月　○日

○○市町村長　殿

申請者住所　○県○市○丁目○－○
氏名＜名称・代表者＞ 農林　太郎　(印)
昭和○○年　○月　○日生(　○○歳)
＜法人設立年月日　　年　　月　　日設立＞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昭和55年法律第65号）第14条の４第１項の規定に基づき、次の青年等就農計画の認定を申請します。

<table>
<tr><td colspan="6">青　年　等　就　農　計　画</td></tr>
<tr><td colspan="2">就 農 地</td><td colspan="2">○○市</td><td>農業経営開始日</td><td>平成○年○月○日</td></tr>
<tr><td colspan="2">就農形態
（該当する形態にレ印）</td><td colspan="4">☑新たに農業経営を開始
□親（三親等以内の親族を含む。以下同じ。）の農業経営とは別に新たな部門を開始
□親の農業経営を継承
（□全体、□一部
継承する経営での従事期間　　年　　か月）</td></tr>
<tr><td colspan="2">目標とする営農類型
（備考の営農類型の中から選択）</td><td colspan="4">露地野菜</td></tr>
<tr><td colspan="2">将来の農業経営の構想</td><td colspan="4">（例）農業技術の向上、機械化、規模拡大等によりタマネギ、カンショ・・・の複合経営で地域の認定農業者の８割程度の所得水準を目指す。
（年間農業所得及び年間労働時間の現状及び目標）
現状　／　目標（平成○年）
年間農業所得　2,000千円　／　4,000千円
年間労働時間　2,000時間　／　1,800時間</td></tr>
<tr><td rowspan="6">農業経営の規模に関</td><td>作目・部門名</td><td colspan="2">現状
作付面積
飼養頭数</td><td>生産量</td><td colspan="2">目標（平成○年）
作付面積
飼養頭数
生産量</td></tr>
<tr><td>タマネギ</td><td>40a</td><td>15,600kg</td><td colspan="2">80a　／　31,200kg</td></tr>
<tr><td>カンショ</td><td>0a</td><td>0kg</td><td colspan="2">20a　／　3,800kg</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　／　・</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　／　・</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　／　・</td></tr>
<tr><td></td><td>経営面積合計</td><td>○○</td><td>○○</td><td colspan="2">○○　／　○○</td></tr>
</table>

する目標	区分	地目	所在地（市町村名）	現状		目標（平成○年）	
	所有地	畑	○市△地区	20a		40a	
	借入地	畑	○市△地区	20a		80a	
	特定作業受託	作目	作業	現状		目標（　年）	
				作業受託面積	生産量	作業受託面積	生産量
		―	―	―	―	―	―
	作業受託	作目	作業	現状		目標（　年）	
		―	―	―		―	
		単純計		―		―	
		換算後		―		―	
	農畜産物の加工・販売その他の関連・附帯事業	事業名	内容	現状		目標（　年）	
		―	―	―		―	
生産方式に関する目標	機械・施設名	型式、性能、規模等及びその台数					
		現状		目標（平成○年）			
	トラクター 管理機 ・ ・ ・	26馬力　1台 1台 ・ ・ ・		26馬力　1台 2台 ・ ・ ・			
経営管理に関する目標	（例）青色申告の実施、PC活用による経理						
農業従事の態様等に関する目標	（例）月に○日程度を休日とする						
目標を達成す	事業内容（施設の設置・機械の購入等）	規模・構造等	実施時期	事業費	資金名等		
	トラクター導入 管理機導入 ・	26馬力 1台 ・	平成○年○月 平成○年○月 ・	3,500千円 600千円 ・	青年等就農資金 青年等就農資金 ・		

るために必要な措置	・ ・	・ ・	・ ・	・ ・	・ ・		

農業経営の構成	氏　名（法人経営にあっては役員の氏名）	年齢	代表者との続柄（法人経営にあっては役職）	現状		見通し	
				担当業務	年間農業従事日数（日）	担当業務	年間農業従事日数（日）
	農林　太郎	39	代表者	全般	250	全般	225
	農林　花子	36	妻	農作業補助、経理	250	農作業補助、経理	225

雇用者						
常時雇（年間）	実人数	現状	0人	見通し	0人
臨時雇（年間）	実人数	現状	0人	見通し	5人
	延べ人数	現状	0人	見通し	75人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第４条第２項第２号に掲げる者及び法人の役員（同号に掲げる者に限る。）が有する知識及び技能に関する事項

	経歴
職務内容	
勤務機関名	
在職期間	年　月～　年　月
上記の住所	
退職年月日	
資 格 等	
農業経営に活用できる知識及び技能の内容	

注：法人の場合は、役員（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第４条第２項第２号に掲げる者に限る。）ごとに作成すること。

（参考）技術・知識の習得状況	研修先等の名称	所在地	専攻・営農部門
	○○県農業大学校	○○市	野菜栽培
研修等期間	平成○○年　○月　～平成○○年　○月		
研修内容等	・野菜栽培技術等の実習 ・教養科目及び農業筆記等の経営管理に関する講義受講　等		
活用した補助金等	・農業次世代人材投資事業（準備型） ・○○県農業研修事業		

注：研修カリキュラム等を添付すること。
　法人の場合は、役員（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第４条第２項第１号及び第２号に掲げる者に限る。）ごとに作成すること。

（参考）他市町村の認定状況	認定市町村名	認定年月日	備考

（備考）

1　法人経営にあっては、申請者の氏名欄に法人名及び代表者氏名を、生年月日欄に法人設立年月日を記載する。

2　夫婦等が共同で一の青年等就農計画の認定を申請する場合には、申請者欄に全員の氏名及び生年月日を連記する。この場合、農業経営から生ずる収益が共同申請者に帰属すること及び農業経営に関する基本的事項について共同申請者の合意により決定することが明確化されている家族経営協定等の取決めの写しを添付するものとする。

3　氏名又は代表者の氏名を自署する場合においては、押印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4　就農時の就農地等

ア　「就農地」欄には、就農地の市町村名を記載する。また、就農予定地の場合は、市町村名の後に（予定）と記載する。

イ　「農業経営開始日」欄には、農業経営を開始した年月日を記入する。この場合、農業経営を開始した時期を証明する書類を添付するものとする。また、農業経営を開始する予定日の場合は、年月日の後に（予定）と記載する。

ウ　「就農形態」欄には、該当する就農形態の□内にレ印を付す。親（三親等以内の親族を含む。以下同じ。）の農業経営を継承する場合は、継承する農業経営での従事期間を記入する。
　なお、就農形態の区分は、以下のとおりとする。

（ア）「新たに農業経営を開始」は、親が農業経営を行っていない者が、新たに農業経営を開始する場合とする。

（イ）「親の農業経営とは別に新たな部門を開始」は、親の農業経営に従事していた者等が、親の農業経営部門とは別の部門で新たに農業経営を開始する場合とする。

（ウ）「親の農業経営を継承」は、親が農業経営を行っており、申請者が新たに農業経営を開始する際に、親の農業経営の全体を継承する場合は「全体」を選択し、親の農業経営の一部を継承する場合は「一部」を選択する。また、親の農業経営を継承する以前に親の農業経営に従事していた期間を記載する。

エ　「目標とする営農類型」欄には、別記の営農類型の中から該当する営農類型を記載する。該当する営農類型がない場合は、その他（○○）として、その他の営農類型名を○○に記載する。

オ　「将来の農業経営の構想」欄には、計画作成時において構想している将来（経営開始後おおむね５年後）の農業経営の概要を記載する。

カ　なお、当欄以下の「現状」欄は、初年度の場合は１年間の見込みを記載し、既に経営を開始している場合は計画作成時点の前年の状況を記載する。「目標」欄は、経営開始後おおむね５年後に達成すべき農業経営の目標について記載する。

５　「農業経営の規模に関する目標」欄には、次の事項を記載する。

ア　「特定作業受託」欄に、作目別に、主な基幹作業（水稲にあっては、耕起・代かき、田植え、収穫・脱穀、麦及び大豆にあっては耕起・整地、播種、収穫、その他の作目にあってはこれらに準ずる農作業をいう。以下同じ。）を受託する農地（(1) 申請者が当該農地に係る収穫物についての販売委託を引き受けることにより販売名義を有し、かつ、(2) 当該販売委託を引き受けた農産物に係る販売収入の処分権を有するものに限る。）の作業受託面積及び生産量を記載する。

　この場合、「経営面積合計」欄には、「作付面積・飼養頭数」欄の面積だけでなく、「特定作業受託」の「作業受託面積」欄の面積を加えて記載する。

イ　この場合、申請者が、当該農地について、主な基幹作業を受託し、かつ、アの (1) 及び (2) の要件を満たすことを証する書面を添付するものとする。

ウ　「作業受託」欄に、「特定作業受託」欄に記載した作業受託以外の作業受託について、作目別、基幹作業別に、作業受託面積を記載するとともに、「換算後」欄に「作業受託面積÷作業数」により換算した面積を記載する。

エ　「農畜産物の加工・販売その他の関連・附帯事業」欄には、農業経営に関連・附帯する事業として、(1) 農畜産物を原料又は材料として使用して行う製造又は加工、(2) 農畜産物の貯蔵、運搬又は販売、(3) 農業生産に必要な資材の製造等について記載する。

６　「生産方式に関する目標」欄には、機械・施設の型式、性能、規模ごとに台数を記載するとともに、リース、レンタル、共同利用等による場合は、その旨を記載する。

７　「経営管理に関する目標」欄には、簿記記帳、経営内役割分担等の経営管理に関する目標を記載する。

８　「農業従事の態様等に関する目標」欄には、休日制の導入、ヘルパー制度活用による労働負担の軽減等について記載する。なお、家族経営協定を締結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旨と当該協定に基づく家族間の役割分担等の内容を記載する。

９　「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欄には、「将来の農業経営の構想」、「農業経営の規模に関する目標」、「生産方式に関する目標」、「経営管理に関する目標」及び「農業従事の態様等に関する目標」に掲げた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施設の設置、機械の購入、その他のリース農場の利用、農用地の購入・賃借等の措置を行うのに必要な資金を記載する。

10　「農業経営の構成」欄には、農業経営に携わる者の担当業務及び年間農業従事日数等について、その現状及び現在想定し得る範囲での見通しを記載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現在は農業経営に携わっているが５年後は離農する見込みの者及び現在は就農していないが５年後は経営に参画する見込みの者についても記載する。

ア　「氏名（法人経営にあっては役員の氏名）」欄に、代表者以外の者にあっては、家族農業経営の場合には農業経営に携わる者の氏名を、法人経営の場合には役員の氏名を記載する。

イ　「代表者との続柄（法人経営にあっては役職）」欄に、代表者にあってはその旨を記載し、家族農業経営の場合には代表者を基準とした続柄を、法人経営の場合には役職を、それぞれ記載する。

ウ　年間農業従事日数は、１日８時間として計算し、毎日１時間ずつ働いた場合には、８日で１日と換算する。

11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第４条第２項第２号に掲げる者及び法人の役員（同号に掲げる者に限る。）が有する知識及び技能に関する事項」を記載する場合には、経歴に掲げた職務内容で得た知識及び技能で農業経営に活用できるものについて記載する。

12　「（参考）技術・知識の習得状況」欄には、次の事項に関して過去に実施した内容を記載する。

ア　農業高校、農業者研修教育施設（道府県農業大学校）、民間研修教育施設、先進農家等における教育・研修を記載する。

イ　先進農家等における研修については、「研修先等の名称」欄に、研修先の農業法人等名を記載する。

ウ　上記以外に実践的な技術・知識を習得している場合は、「研修内容等」の欄にその内容を記載する（他の欄は記載不要）。

別記

（備考の４のエ「目標とする営農類型」は、以下の営農類型から選択すること。）

１　単一経営（農産物販売金額１位の部門の販売金額が、農産物総販売金額の80％以上を占める場合）の営農類型（例：露地野菜）

　水稲、麦類、雑穀、いも類、豆類、工芸農作物、露地野菜、施設野菜、露地果樹、施設果樹、露地花き・花木、施設花き・花木、乳用牛、肉用牛、養豚、養鶏

２　複合経営（農産物販売金額１位の部門が水稲であって、水稲の販売金額が、農産物総販売金額の80％に満たない場合）の営農類型（例（２位の部門が麦類の場合）：水稲＋麦類）

　水稲＋（麦類、雑穀、いも類、豆類、工芸農作物、露地野菜、施設野菜、露地果樹、施設果樹、露地花き・花木、施設花き・花木、乳用牛、肉用牛、養豚、養鶏）

３　１及び２に該当しない場合は、その他（○○）として記載する。（例１：その他（きのこ菌床栽培）、例２（農産物販売金額１位の部門が施設野菜、２位の部門が麦類の場合）：その他（施設野菜＋麦類））

就農状況報告(独立・自営就農)

経営開始○年目・受給開始○年目　　前半・後半（○～○月分）

※下線部は、給付が終了した後は「給付終了後○年目」とする。

平成　　年　　月　　日

殿

氏名　　印

新規就農・経営継承総合支援事業実施要綱（平成24年4月6日付け23経営第3543号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知）別記1第6の2の（6）の規定に基づき就農状況報告を提出します。
※下線部は準備型の場合は「1の（7）」とする。

1．独立・自営就農（予定）時期（どちらかにチェックする。（経営開始型受給者の場合は記載不要。））

	既に就農している	年　月　日就農
	まだ就農していない ※	年　月就農予定

※まだ就農していない場合は、以下の欄は記入不要

2．営農実績報告

作物・部門名	作付面積(a)・飼養頭数等
合　計	

	氏　名	年齢・続柄等	農業従事日数
家族労働力			
雇用労働力	（人・日）		

3．経営規模の報告

経営耕地	区分	面積（a）	
	所有地		
	借入地		
作業受託	作目	作業内容	実績

4．前年の所得 ＊1

	万円

5．農業経営基盤強化準備金（どちらかにチェックする。）

	積み立てている
	積み立てていない

農業者が、経営所得安定対策等の交付金を農業経営改善計画などに従い、「農業経営基盤強化準備金」として積み立てた場合、この積立額について、個人は必要経費に、法人は損金に算入できる制度。

6．地域の相談体制について

相談する相手	左の者に相談する頻度 （左欄にチェックした場合、当てはまる頻度のうちいずれかにチェックする。）			
	週１回 ～それ以上	月１ ～２回程度	２、３ヶ月に １回程度	相談していない
市町村の職員				
普及指導員				
指導農業士				
ＪＡの営農指導員				
研修先の農業者				
近所の農業者				
家族				
その他 （具体的に　　）				

7．報告対象期間における交流会への参加について（どちらかにチェックする。）

	参加した
	参加しなかった

（「参加した」にチェックした場合は以下も記載する。）

参加した回数	回
交流会の内容 （対象者、実施内容など）	

8．計画達成に向けた今後の課題

添付書類

別添　1．作業日誌の写し ＊2
2．決算書及び所得証明書の写し（７月の報告の際のみ添付する。）＊3
3．通帳及び帳簿の写し ＊2
4．農地及び主要な農業機械・施設の一覧及び契約書等の写し ＊2
（変更がない場合、２回目以降の報告の際は既に提出している契約書の写しは省略することが出来る。）※親族からの農地が主で独立・自営就農し、農地の所有権を移転した場合は農地の契約書等の提出が必要。
5．青色申告決算書（農業経営基盤強化準備金を積み立てている場合）

＊１　７月の報告の際のみ記入する。（給付金を除く。）

＊２　準備型研修終了後については、給付期間の1.5倍又は２年間のいずれか長い期間（親族から貸借した農地が主で独立・自営就農する場合は除く。）及び、親元就農した者が当該農業経営を継承する又は当該農業経営を法人化している場合は当該法人の経営者（親族との共同経営者になる場合を含む。）となる場合の１回目の報告の際のみ添付する。

＊３　経営開始型の受給期間のみ添付する。

※　様式の２、３及び別添２の内容について、基盤強化法の基本要綱に基づく農業経営指標による自己チェックを提出している場合は、そのチェック表を添付することで、２、３及び別添２の記載を省略できる。

就　農　報　告

平成　　年　　月　　日

殿

氏　名　　印

以下のとおり就農しましたので新規就農・経営継承総合支援事業実施要綱（平成24年4月6日付け23経営第3543号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知）別記1第6の1の（7）の規定に基づき就農報告を提出します。

研修終了日	年　月　日
独立・自営就農、雇用就農又は親元就農した日	年　月　日
就農形態	□新たに農業経営を開始 □親（三親等以内の親族を含む。以下同じ。）の農業経営とは別に新たな部門を開始 □親の農業経営を継承（□全体、□一部） □雇用就農〔農業法人等の名称・住所・電話番号〕 □親元就農※1〔□親の経営の全体を継承、□法人の（共同）経営経営継承（法人の場合は経営者となる）予定時期 年　月〕
就農地の市町村	
経営規模・主な作物※2	
経営開始型の受給※2	□　有り　□　無し　□　未定
農の雇用事業の活用※3	□　有り　□　無し　□　未定

※下線部は、研修終了後に親元就農し、その後、継承または法人の経営者となることにより独立・自営就農した場合は「親元就農」とする。
※1親元就農時の就農報告の場合のみ記入できる。
※2独立・自営就農の場合のみ記入
※3雇用就農の場合のみ記入
添付書類
・農地及び主要な農業機械・施設の一覧及び契約書等の写し、通帳の写し（独立・自営就農の場合）
・雇用契約書等の写し（雇用就農の場合）
・青色事業専従者給与に関する届出（変更届出）書の写し（親元就農の場合）
・家族経営協定等の写し（親元就農の場合）